

제1 편 - 미국장로교 기본 운영

미국장로교는 현행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하기로 한 개혁 그리스도인들의 조직이다. 미국장로교 헌법은 *신앙 고백서*(제 1 부)와 *규례서*(제 2 부)로 구성되어 있다. *신앙 고백서*에는 지난 교회사를 통해 만들어진 열 두 개의 신앙고백문들이 들어 있다. *규례서*에는 장로교 체제의 기초 편, 운영 체제 편, 예배 지침 편, 교회 권징 편이 들어 있다.

운영 체제 편은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의 네 가지 종류의 공의회 개념이 미국장로교 조직 구조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 특정 교회의 당회
- 노회
- 대회
- 총회

미국장로교는 사역 장로와 교역 장로로 구성된 이들 대표 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G-3.0101. 교회의 당회는 담임목사, 부목사, 당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역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G-3.0201. 노회는 그 해당 지역 내의 모든 교회들(사역 장로들이 대표함)과 교역 장로로 구성된다. G-3.0301. 대회는 특정 지리적 영역 내의 최소 세 개의 노회들로 구성되며, 노회가 선출한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G-3.0401. 총회는 전체 교단의 공의회이며, 각 노회에서 선출된 사역 장로 대의원과 교역 장로 대의원의 동수로 구성된다. G-3.0501.

각 공의회에는 그 공의회에 해당되는 책임과 권한이 있다. 이는 운영 체제 편 of 당회 G-3.0201, 노회 G-3.0301, 대회 G-3.0401, 총회 G-3.0501에 규정되어 있다. 우리 교단은 장로 중심 운영 체제로 계층적 운영 체제, 감독 중심 운영 체제, 회중 중심 운영 체제와 구별된다. 미국장로교의 구조를 설명할 때, 장로 중심 운영 체제의 본질적인 세부 사항을 단순화해서는 안된다.

이 법률 자료집의 상당히 중요한 개념과 미국장로교 삶의 중요한 개념이 G-3.0102에 있다: "본 교단의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진리, 섬김, 규례, 권징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뜻을 선포하고 이에 순종하려는 목적으로만 교회의 관할권을 갖는다." 이 원칙의 결론은 국가의 정부나 법원은 교회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미국 헌법의 수정 제 1 조와 여러 주 헌법의 종교 조항에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미국장로교나 그 공의회는 법적 권위와 속성을 지닌 민간 법적 단체로 간주되어선 안된다. 이 조직들의 근본적인 교회적 속성, 관계, 의무, 책임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규정된다. 일반 민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규례서*는 각 개체 교회들 (G-4.0101)과 상급 공의회 (G-4.0101)가 민법이 허용하는 한 법인을 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회의 공의회를 법인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된다. 이는 교회의 삶에서 필요한 제한적인 민법적 기능(예를 들어 부동산 증서 보유, 계약 체결)을 수행하도록 법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법인들은 해당되는 민법과 미국장로교 헌법 내에서 운영된다. 이 법인들은 일반 사회 법적 조직체이다.

제2 절 - 부동산

본 절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사안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이는 미국장로교 부동산 관련 조항에 대한 논의로 시작한다. 이 내용은 **규례서 제4 장**, 교회와 민법 편에 수록되어 있다.

거의 모든 부동산 관련 사안은 주 법에 적용을 받는다. 부동산 문제 및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주의 부동산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A. 미국장로교와 그 부동산

규례서 제 4 장은 비교적 간략하나, 미국장로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G-4.0201 사명 완수의 도구로서의 자산
- G-4.0202 자산과 관련된 결정
- G-4.0203 교회 자산의 신탁 보유
- G-4.0204 헌법에 어긋나는 자산의 활용
- G-4.0205 해산 또는 소멸된 개체교회의 자산
- G-4.0206 교회 자산의 매각, 저당, 임대
- G-4.0207 분열된 개체교회의 자산

제 4 장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가 행동하고 반드시 따라야할 조건을 명시한다. 하기 명시된 논의 외에 "신탁 조항과 은혜로운 분리"라는 자문 의견이 있다: 교회의 일치성을 위한 신탁 조항의 이행"이 있으며, 공의회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를 검토할 수 있다(부록 A 참조).

1. 미국장로교 부동산 신탁 조항 (G-4.0203)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미국장로교가 소유하거나, 이들을 위해 소유된 모든 자산은, 그 법적 소유권이 법인, 이사(들), 또는 비법인 사단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될지라도, 또는 수입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유된다.

이 조항은 제 4 장의 핵심이며, 다방면의 미국장로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모든 장로교인들이 알고 있듯, 이는 우리 교단이 구조에 있어 독립된 교회의 조합이 아님을 확인해 준다. 우리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 교회의 운영기관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정의되고 확립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한다. 교회 스스로를 위계적이라고 기술하지는 않으나, 이 표현은 대부분의 민사 법원이 장로교 부동산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사 법원은 우리의 구조를 개체교회의 형태와 구별하기 위해 위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민사 법원은 교회 부동산 분쟁 시 우리의 구조를 볼 때 미국장로교 운영의 핵심 원칙에 주목한다. 이는 F-3.0206 에 기록되어 있다: "상위 공의회는 하위 공의회에 대한 감사 및 감독 권한이 있으며, 회부, 이의 제기, 항소에 관한 논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조항과 **규례서**로 인해 일반적인 민사 법원은 장로교회를 교회 부동산에 관해 위계적 관계로 간주한다.

예배 장소 또는 기타 교회 활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서면 양도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문구를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여기에 양도된 건물은 미국 장로교 헌법의 규정에 따라 _____ 노회(또는 그 법적 승계인)에 속한 특정 교회로서 신성한 예배 및 기타 사역의 목적을 위해 양수인이 사용,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양수인은 미국 장로교 헌법의 규정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을 보유한다.

2. 신탁 조항의 부재

양도 문서에 신탁 조항의 부재로 인해 특정 교회 또는 기타 교회 기관의 노회, 기타 운영 조직 또는 교단 전체에 대한 의무가 완화되거나 절충되지 않는다. 증서에 명시적인 신탁이 없는 교회 부동산이 교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증거는 다음을 포함한다:

- 헌법에 명시된 부동산 신탁 조항
- 미국장로교 또는 그 전신 교단 내의 이전 지역 교회 또는 기관에 대한 소유권 계승에 있어서의 이전 양도 증서
- 지역 공동체가 미국장로교 교단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장로교, 또는 그 전신 교단의 명칭, 관습, 또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것
- 미국장로교, 또는 그 전신인 노회 소속 목사가 봉사하는 경우,
-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의 노회 회의, 위원회 및 행사 참여를 포함해 노회 내 활동하는 경우,
- 노회, 또는 다른 미국장로교 또는 전신 운영 조직로부터의 기금 및 개발 지원을 지급받는 경우

이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 법원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신탁 이론에 따라 교단의 소유권 승계 권리를 인정한다. 미국장로교 헌법에 근거해 특정 교회가 부동산 증서를 보유할 수 있으나 그 교회는 교단을 위해 증서를 단순히 신탁 보유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유권은 법인, 또는 특정 수탁자 명의로 할 수 있지만, 헌법은 양도 증서에 신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단을 위해 모든 부동산을 신탁 보유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3. 헌법에 반하여 사용된 부동산, 분열된 교회, 해산된 교회

이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교회 부동산 관련 사안은 어렵고 종종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민사 법정에 제기된다. 이러한 분쟁이 미국장로교 소속 교회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당사자는 노회이다. 성공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노회에서 해당 부동산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G-4.0204는 특정 교회의 부동산이 헌법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때, 그 부동산의 보유, 사용, 적용, 이전, 또는 매각 방법을 노회가 결정해야한다는 핵심 원칙을 확립한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특정 교회가 노회에 의해 해산되면 노회는 재산과 관련하여 모든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G-4.0205. 마지막으로, 특정 교회에서 분열이 발생하면, 노회가 다시 핵심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G-4.0207 이 정한 바에 따르면:

- 노회만이 특정 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G-3.0301 와 G-3.0303).
- 노회는 화해를 시도하거나, 교회를 두 개의 개별 미국장로교 교회로 분할할 수 있다.

-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노회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대상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노회는 이를 미국장로교 내의 진정한 교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해당 교회 내 다수결정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명령은 부동산 신탁 및 헌법의 다른 조항(G-4.0202)과 함께 미국장로교가 부동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체계적인 절차를 수립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로교 부동산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대부분의 민사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부동산 신탁을 인정하고 집행한다. 다른 법원에서는 신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 상위 기관이 하위 운영 기관에 대한 검토 및 통제권을 갖는다는 핵심 정책;
- 노회의 권한을 명시하는 기타 헌법 조항;
- 교회와 다른 운영 조직간의 역사적 상호 관계, 지원, 관습 및 기능.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 수정헌법 제 1 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에 따라 노회에 유리하게 판결한다. 법원은 미국장로교가 헌법과 정치를 통해 자체적으로 결정할 정책과 체계를 존중한다. 법원은 미국장로교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수용한 적도 없는 회중 체제로 미국장로교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는 교회가 자체 선택한 정책과 체계를 존중하는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노회 관계자와 법률 자문은 이러한 판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절 말미에 있는 **E. 해산 또는 소멸된 교회의 부동산**이라는 제목의 하위 절을 참조할 것. 이 부분에서는 교인들의 이사나 사망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교회 해산과 관련된 유용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샘플 양식도 제공된다.

4. 교회 부동산의 매각, 저당 혹은 임대

규례서 제 4 장은 또한 특정 교회의 부동산이 매각, 저당, 담보 또는 임대될 때 특정 권한을 노회에 부여하고 있다.

- 개체교회는 해당 당회로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 하거나 용자를 얻거나 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G-4.0206.
- 개체교회는 해당 당회로 전달된 노회의 서면 허가 없이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해당 개체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해서는 안되며, 모든 기타 부동산들을 5년 이상 임대해서는 안 된다. G-4.0206.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항은 교회가 중요한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노회가 관여하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토지 취득, 건물 확장, 재건축, 매각 및 이전이 포함될 수 있다. 제 4 장의 이러한 조항과 노회에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조항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출 기관은 노회가 특정 교회에 대한 대출을 보증할 것을 요구한다.

G-4.0206 의 교회 부동산의 매각, 담보 또는 임대 조항과 G-4.0208 의 예외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두 이전 교단의 모든 교회는 교회 부동산의 보유, 사용 및 처분에 관한 동일한 헌법 조항을 가지고 1983 년에 미국장로교에 가입하게 되었다.

노회가 교회 부동산의 매각, 담보 대출 또는 임대를 승인해야 하는 요건의 목적은 노회가 부동산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프로젝트 계획에 참여하고 법적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1935 년, 1941 년, 1946 년에 채택되었으며, 많은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시기에 노회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던 교회들을 노회가 지원할 수 있게 해주었다.

5. 예외 조항

섹션 G-4.0208 예외조항의 전신인, 섹션 G-8.0700 은 1983 년 6 월 이후 8 년 동안 미국 장로교 구교단의 교회들이 재결합 이전에는 구속되지 않았던 이 장의 해당 조항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표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제공했다. 이 예외조항이 적절하게 채택되고 노회가 이를 통지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해당 교회 또는 그 법적 승계단체가 존재하는 한, 또는 해당 교회가 G-8.0500(현재 G-4.0206) 항목을 수락하기로 투표할 때까지 이 조항은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면제 교회의 당회는 이 조치에 대한 기록을 증서 및 기타 부동산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은 노회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B. 재산 일반 및 교회 부동산에 대한 정보

1. 교회 부동산 임대 관련 특별 사안

때때로, 지역 교회 및 기타 교회 기관은 교회 부동산을 타 기관에 임대할 기회를 갖게 된다. 임대 결정을 내리기 전, 고려해야 할 법률, 세금, 용도 설정 및 실제적인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 부동산의 임대로 인해 교회의 501(c)(3)(연방세금 면제) 자격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교회의 면제 목적(종교)과 무관한 임대 활동이 비실질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한, 연방 세금 면제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회 부동산의 임대가 잠재적으로 비관련 사업 소득(UBI)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내국세법 섹션 513 은 대부분의 임대 소득을 과세 대상인 UBI 에서 특별히 면제하고 있다. 임대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어떤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주 및 지역 세금 면제 차원에서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우려되는 영역은 자선 및 종교용 부동산에 대한 지역 부동산의 부동산세 면제와 관련된 것이다. 해당 주 및 지역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여 교회의 종교적 부동산 사용에 따라 교회가 누리는 부동산세 면세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많은 주, 카운티 또는 소도시에는 부동산에 대한 면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교적 독점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은 해당 부동산의 면세 사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재확인할 것을 요구한다. 제때 보고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 교회는 이러한 유의 사항에 대해 현지 부동산 세법에 정통한 법률 고문과 상의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적시에 응답하지 않으면 면세 혜택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카운티 평가관 사무소에서 보낸 우편물을 반드시 열어보고 응답해야 한다.

일부 교회는 부동산 임대를 금지하는 사용 용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 지역에 있는 교회는 학교나 아동 보육 시설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구역이 아닐 수 있다. 임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사용 용도 제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 용도 또는 지정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 일부 교회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 조항에 따라 사용 용도 제한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소송을 수반하고 불확실하며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상기 우려 외에 교회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이 있다. 우려는 다음과 같다:

- a. 임대 계약 체결을 위한 노회의 승인 획득. G-4.0206 참조.
- b. 임대/임차단체 (세입자)는 가능한,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 c. 임차인은 교회 및/또는 공동체의 문화적, 시민적, 영적 또는 교육적 목표를 증진해야 한다.
- d. 임차인의 활동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대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 e. 임차인은 자체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과 사용 시간, 원하는 액세스 권한, 특별한 요구 사항 등 임대를 통해 얻고자 하는 일반적인 용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f. 임차인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 i 임대 계약의 일부로 교회에 유리한 면책 및 면책 보류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법률 자문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교회의 요구 사항과 필요 사항이 임차인의 임대차 의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 ii 임대 계약서에 임차인이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정책을 따르고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iii 계약 기간은 대여 금액, 사용자의 행동 및 기타 관계 조건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짧아야 한다(예: 1년). 또한 계약의 취소/해지 조항, 취소/해지 사유 목록(예: 교회 정책 미준수, 임대료 적기 미납), 임대차 종료 의사 통지(예: 30일 전 해지 통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서에는 숙소를 비울 때 사용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숙소 청소, 사용자의 모든 부동산 철거, 원래 상태로 숙소 복원 등)가 명시되어야 한다.
 - iv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및/또는 그 내용에 대한 손상이나 과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계약은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교회는 임대 계약이 있는 경우, 부동산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증금과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임대료 또는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는 공과금 증가, 유지보수 비용, 재산세 부과 가능성 등 기타 새로운 비용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사용자가 임대 숙소를 '있는 그대로' 수락한다는 문구(계약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도 권장된다.
- g. 임차인은 입주 전 교회를 해당 보험의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한 책임 보험사의 최신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을 교회의 보험 대리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년간의 임대 계약의 경우, 매년 새로운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증서에는 교회 공간 사용에 대한 일반 책임 및 부동산 보험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 (예: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인디언 가이드), 임차인의 보험에는 고의적 행위 및 성적 비행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주간 보육시설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증명서에는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물품도 부동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보험 증서 제공을 거부하거나 보험이 부동산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예: 고의적 행위 또는 성적 비행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경우), 당회와 법인 이사회는 해당 임차인이 교회의 부동산이나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임차인인지의 여부와 임차인이 교회에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임차인의 보험이 부동산 및 건물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지 않는 임차인이 있다면 잠재적으로 모든 부동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의 보험이 적절하다는 임차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 보험 대리인에게 임차인의 보험 증서를 보내 사용자의 활동과 임차인을 수용할 때 발생하는 교회의 위험에 대한 보장이 적절한지 문의해야 한다.

- h. 책임 보험사에 서면으로 문의하여 제안된 사용,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지, 제안된 사용, 대여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제외되는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규 활동을 고려하여 자체 보험 약관 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추가 또는 특수 보험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입주 계약에 서명하기 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대리인에게 새 사용자에게 보험이 적용된다는 가계약서, 또는 보증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서면 확인서를 받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행위 또는 활동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리인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i. 모든 법률 문서는 현지 변호사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j. 교회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역 설정 및 부동산세 면제와 관련된 주 및 지역 법률을 검토해야 한다.
- k. 현재 교회 책임 보험사에 서면으로 문의하여 보험 회사가 의도하는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의도하는 임대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나 제외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 조건을 조정하거나 임차인에게 인상분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신규 활동을 고려하여 자체 보험 정책 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추가 또는 특수 보험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부동산 입주 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대리인에게 신규 입주자에 보험이 적용됨을 명시하는 가계약서, 또는 보증서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서면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에 서명해서는 안된다. 보험금 청구 또는 소송이 발생하면 즉시 대리인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l.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할 경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조항의 추가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소송이 발생할 경우, 승소 당사자가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 m.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부동산 및/또는 그 내용물에 대한 손상이나 파손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n. 이 임대로 인해 주 또는 연방 장애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o. 임대계약은 가능한 한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교회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에 맞는 적절한 임대료를 결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대료 또는 임대 조건을 설정할 때는 공과금 증가, 유지보수 비용, 부동산세 부과 가능성 등 기타 새로운 비용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공간과 허용되는 용도, 점유가 허용되는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세입자는 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건물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특별 구역 설정, 안전 및 인허가 요건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에는 구역 설정 준수, 안전 점검, 면허 및 허가 취득에 대한 임차인의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건물 개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개선 사항은 교회의 부동산이 된다는 명확한 진술이 있어야 한다.

- p. 가능성 있는 임차인을 평가할 때 교회는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외부인에게 열쇠와 건물 출입 권한을 부여할 때는 보안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건물 잠금에 대한 책임을 완전하게 이해해야 한다. 또는 교회가 수탁자, 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건물을 열고 닫을 수 있다.
- q.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은 임대 금액 및 기타 조건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짧아야 한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한다.
- r. 모든 임대차 및 임차인 기록은 별도의 파일에 보관하고 잠금 상태를 유지하여 필요할 때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교회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집행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불쾌한 일이지만 이는 임대인이 고려해야 할 반갑지 않은 상황 중 하나이다. 부적절한 사용, 보안 위반, 임대료 미납 또는 기타 분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즉각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모든 당사자가 관련 우려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분쟁 사항 및 해당 사항의 해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교회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교회는 추가 수입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을 확대할 수 있다. 임대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어 교인이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모든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사전에 대처한다면 임대차 계약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의 양도

간단히 말해서 양도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한 당사자(양도인)에서 다른 당사자(양수인)로 이전되는 절차이다. 대부분의 양도는 매매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의 생성과 관련이 있거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는 증서, 저당권, 양도, 신탁, 유언장 등의 기타 문서도 양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부동산 양도법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양 당사자가 양도계약을 작성하고 실행한다. 이 계약에는 양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로 포함하기를 원하는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서는 양 당사자에게 양도 절차를 안내한다. 사전 인쇄된 양식 계약서는 부동산 매수인이나 매도인이 자주 이용한다. **이러한 계약의 조건은 협상 가능함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에는 특정 조건에 대한 협상이 더 쉽기 때문에 구매 또는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현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사안은 계약이 체결된 후 협상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양도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양도인이 양도 증서(일반적으로 증서)를 실제로 전달하고 양수인이 양도 계약에 명시된 대가를 양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매수인은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수 있는 매도인의 능력과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매도인의 소유권을 완전하고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소유권 요약서(초록)는 매수인의 변호인 또는 소유권 검색 및 소유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초록 회사가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다. 현지 법률에 따라 변호사 또는 소유권 회사를 이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권 보증을 고려해서 이용해야 한다. 소유권 보증은 매도인의 소유권 결함으로 인한 손실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한다.

a. 부동산 양도 시 우려 사항

부동산이 지역 교회에 전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더 이상 교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노회는 해당 부동산을 기증자의 상속인에게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과 같은 부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 교회가 향후 건물을 이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원 또는 기타 제한적 사용 조항은 현지 교회에 대한 보상없이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부동산이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증서에 잠재적인 제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교회 부동산에 대한 증서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동산권 환원 조항을 소멸시키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는 경과 시간에 관계없이 이러한 조항을 시행하고 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양도에 관련된 법인의 이름은 해당 법인의 법적 이름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일장로교회는 제일장로교회 주식회사로 법인설립이 되었다. 이 경우, 법인 명칭, 즉 제일장로교회 주식회사가 양도계약에 사용된다. 법인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법인 설립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미국장로교 헌법의 섹션 3-법인 및 이사회, A. 요건, 각주 1 을 참조한다.

b. 매매 계약

토지 매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적절히 이행해야 집행력을 보장할 수 있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의 유효성을 보증하는 양도인(매도인)의 증서를 수락하는 데 동의한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구매 계약서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 ii 양도 부동산의 주소 및 완전한 법적 설명.
- iii 양도인에 의한 소유권 문서의 전달. 이 서류는 매도인의 소유권 결함에 대해 매수인의 이익을 보장하는 소유권 보험회사의 계약이 포함된 초록과 소유권 보험 계약서 또는 소유권 상태를 조사한 후 작성된 변호사의 소유권 의견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 iv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소유권과 "종료"날짜, 즉 증서의 최종 양도 날짜 및 소유권 취득 날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 v 전달할 증서의 유형.
- vi 비용의 배분 -소유권 보험, 측량, 증서 준비, 세금, 증서 기록 및 제출, 부가세, 모기지 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매도인 및 매수자의 책임과 관련된 특정 조항. 이러한 비용을 거래마감 비용이라 한다.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에는 양도인이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 시장성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i 모기지, 유치권, 통행권 등의 저당권이 없는 소유권
- ii 양도인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로 다른 두 명의 매수인에게 증여하여 한 건 이상의 소유권 주장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정당한 소유권 주장으로 입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다. 모든 소유권 증서는 영구적 소유권이어야 한다.

시장성 규칙에 대한 예외는 지역 용도 제한 및 공공의 통행금지권 또는 완화의 경우에 있다. 시장성 있는 소유권을 양도해야 하는 양도인의 의무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미완료 개량과 관련된 특별 부과금, 미납 부과금의 분할 납부, 명시된 연도와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한 일반 세금, 구역 설정 및 공공용지 제한 등 관례적인 예외라 하더라도 양수인의 무부담 양도 의무에 대한 예외는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임대 및 미결제 모기지도 예외로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 역할을 하는 노회 또는 교회는 계약서에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을 예배를 위한 성소 및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제한이 없음을 진술한다."**라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는 거래의 운영 지침을 명시하고 거래 종결 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양도 절차를 위한 향해도 역할을 한다.

(a) 부동산 구매

부동산 구매시에도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구조의 건전성, 현지 건축법 준수 여부, 해충 및 흰개미 침입 여부 등에 대한 보증을 구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문적인 건물 검사관을 통해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하 저장 탱크의 존재, 석면, 곰팡이, 라돈 축적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매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환경 감사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잠재적인 청소에 대한 부담을 적절히 완화하는 조항을 구매 계약서에 넣을 수 있다. 매도인은 환경 문제가 없음을 보증하라는 요청받을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비하여 소유권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계약서에 냉장고, 레인지 및 기타 장비와 같은 집기류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 마감 전 매도인의 보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많은 관할권에서 소유권 문서에 문서용 인지를 부착하며,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증서에 부착된 인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은 서류 인지가 필요한 모기지 신청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한다. 건축이 고려되는 경우, 계약서에는 예정 부지가 계획된 건물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가 허용되어야 한다. 용도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구역 설정 승인을 얻기 위한 시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특정 교회의 법인은 법인 이사회가 필요한 서류, 즉 매매 계약서, 증서, 임대차 계약서, 매매 청구서, 저당권 등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 또한 법인 이사회는 현지 법률 및 법인 정관에 따라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모든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승인된 대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면 문서(계약서, 증서, 매매계약서, 저당권 등)는 권한이 있는 임원이 법인 명의로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실행 시 법인의 행위로서 구속력과 효력을 갖는다.

부동산 구매에는 교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G-1.0503. 또한 노회는 해당 부동산이 저당권 설정이나 조건에 해당되는지를 승인해야 한다. G-4.0206.

(b) 부동산 용도 설정

부동산 용도제한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일부 교회는 해당 부동산을 교회, 학교, 아동 돌봄 시설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하기 전에 부동산 용도 제한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원하는 경우, 변경 또는 구역 용도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c) 옵션 계약

옵션 계약은 양도 수단은 아니지만 향후 부동산 매수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옵션은 특정 기간 동안 고정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계속적인 제안이다. 옵션 매수인이 옵션에 대해 지불한 초기 대가를 제외하고, 매수자이나 매도인 모두 계약 기간 동안 추가로 지불할 필요가 없다.

c. 증서

양도 절차의 두 번째 단계는 양도인으로부터 적절하게 작성되고 실행된 증서를 양수인에게 전달하고 증서의 양도에 대해 합의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양도하려면 양도인 또는 그의 정식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 문서가 필요하다. 증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보호 수준에 따라 다르다.

- i. "일반 보증서"에는 양도인이 어떤 사람의 법적 소유권 주장에 반하여 부동산 지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증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노회와 교회가 취득해야 할 증서이다.
- ii. "특별 보증서"는 양도인이 소유권 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소유권의 결함에 대해 보증하지만, 양도인의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청구에 대해서는 양도인에게 보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제한적이다.
- iii. "무담보 양도 증서"는 양도인이 아무 것도 보증하지 않는 증서이다. 이 증서는 양도인이 건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소유권, 이권 또는 청구권을 양도하지만 소유권의 유효성을 공언하지 않으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제 3 자의 청구에 대해 양수인을 보증하지 않는다.

모든 증서는 다음의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특정 양식을 따른다.

- i. **당사자의 이름** — 양수인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서는 무효이다. 선의의 매수인이나 저당권자가 관련된 경우, 증서를 전달받는 사람은 양수인의 이름을 기입 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한이 있을 수 있다. 양도인의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라도 양도인이 서명하고 전달한 증서는 무효화 되지 않는다.
- ii. **약인** — 법은 유효한 증서에 대한 약인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증서가 적절하게 실행되고 전달되면 양도인은 반드시 토지를 증여해야 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신탁 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고 양수인이 선의의 매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불리한 행위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 명목상 대가(10 달러 정도 가치의 선의의 약인)를 명시하는 것이 관례이다.

어떤 대가를 기재하든 과세 당국이 증서 표면에 요구하는 증서 인지대는 실제 지급된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 iii. **양도증서 용어** — 양도와 관련한 특정 용어가 종종 증서에 사용된다. "양도 및 보증", "양도, 거래 및 매각", "소유권 보증 및 방어"와 같은 문구는 보증 증서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이다. "양도 및 무담보 양도 증서" 및 "모든 이자 권리 포기"라는 문구는 일반적으로 무담보 양도 증서에 사용한다. 양도인이 자신의 재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단어는 일반적으로 충분하다고 간주된다.
- iv. **양도되는 토지에 대한 설명** — 이러한 설명의 주요 요건은 양도할 부동산의 식별을 허용하기에 법적으로 충분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현재 상태의 측량(6 개월 이내)을 요청해야 한다.
- v. **예외 또는 유보** — 본질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대한 설명은 소유권 양도에 대한 설명이며, 소유권 양도에 대한 예외 또는 유보는 이 설명 바로 뒤에 따른다. 유보에는 양도인의 광물권과 같은 권리의 보유, 또는 양도인의 상속인 및 양수인에 대한 법적 양도를 의미한다.
- vi. **양도되는 부동산의 수량** - 이 조항은 양도되는 부동산의 성격과 양수인의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를 정의한다. "블랙에이커(양도인의 부동산을 칭함)를 조건없이 소유자가 소유 및 보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매수자는 소유권을 단순 소유권으로 취득함으로써 매수자의 평생 동안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한과 함께 무제한으로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된다. 구역 설정 요건과 지역권으로 인해 부동산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소유권을 간편하게 취득하면 구매자는 부동산을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교회는 가능한 한 절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 vii. **소유권 약정** —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안전하고 확실한 소유권의 양도와 추후 제 3 자의 불리한 권리 주장 없는 부동산의 양도를 보장하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양도인의 약속이다. 이러한 약정은 규약 위반 시 양수인을 면책한다.
- viii. **이행** - 일반적으로 공증인 앞에서 양도인의 서명과 확인 날인으로 증서 이행을 완료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직인의 의미가 희석되어 "직"이라는 단어 또는 "L.S."라는 머리글자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확인서는 증서를 기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확인서가 없는 경우, 증서는 제 3 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현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 또는 공증의 구체적인 형식이 정해진다.

양도의 마지막 단계는 증서를 전달하는 것이다. 실물 인도는 양도인이 지배권을 포기하고 양수인에게 통제권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유효한 전달이 이루어졌다는 추정 은 양수인의 증서 소유로부터 발생한다. 또한 양도자가 양수인에게 증서를 등기하는 경우, 증서가 양수인에게 유효하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인의 말과 행동은 유효한 전달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이다. 에스크로 계약은 양도인이 명명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명시된 조건이 이행되면 양수인에게 증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에스크로 수취인'에게 증서를 전달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수증자가 명시된 시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증서는 증여자에게 반환된다.

d. 역점유

위에서 설명한 2 단계 양도 절차 외에도, 간혹 악의적 점유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관습법에서는 20 년간 타인의 재산을 공개적으로 계속 점유하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점유 기간을 단축하는 법령이 있다. 소유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20 년 기간 동안 실소유자의 점유 행위는 불리한 소유 기간, 즉 소유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행위로 간주된다. 7 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악의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매수자는 해당 7 년 기간을 악의적 소유 기간에 합산하여 필요한 20 년을 채울 수 있다. 연방 또는 주 정부 토지에 대한 역점유는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연하게 악명 높은 미군 기지 한 구석에서 20 년 동안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땅을 불법 점유로 연방 정부로부터 빼앗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법 점유는 불분명한 소유권과 소유권 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획과 교회는 불법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을 매입해서는 안된다.

e. 등기

증서와 소유권 이전은 즉시 기록되어야 한다. 미등기 서류는 직계 당사자와 양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유효하다. 선의의 유상 구매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선의로 자산을 유상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선의의 구매자로서 신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증서를 적절하게 등기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에 대한 어떠한 불리한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선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잃을 수 있다. 증서, 저당권 및 기타 증서를 제대로 등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양도 증서 등기는 반드시 법률 자문과 상의해야 한다.

모든 양도 증서는 양수인에게 전달되는 즉시 등기해야 한다. 등기하면 위에서 설명한 잠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서류가 등기소에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이다. 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양수인(구매자)의 의무이다. 등기 제도는 주마다 다르다. 등기 법령에 따라 소유자는 등기된 문서에 공개된 부동산 또는 지분의 다른 모든 잠재적 구매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기록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후속 구매자나 저당권자가 통지받지 못한 선의의 구매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주에서는 선의의 구매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구매자가 먼저 등기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미등기 증서를 가진 다른 양수인의 이익을 차단하는 등기 법령이 있다. 이를 선의 우선주의(Notice Statutes)라고 한다. 다른 주에서는 다른 양수인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소에서 증서를 처음 등기한 양수인이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법령은 법원에 증서를 등기하기 위한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므로 선순위 우선주의(Race Statutes)라고 한다. 세 번째 유형의 등기법은 선의 선순위 우선주의(Race-Notice Statute)이다. 이 제도에서는 선의의 구매자가 이전 양수인보다 먼저 등록하면 보호된다. 경주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불리한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선의의 부동산 구매자가 먼저 등기소까지 가는 경쟁에 우위가 결정된다. 그러나 선의 선순위 우선주의에서는 가장 먼저 등기하는 사람이 이전 양수인에게 실제 통지를 한 경우, 통지 없이 선의의 양수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첫 번째 양수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네 번째 유형의 주 법령은 유예 기간 법령(Period of Grace Statute)으로, 이전 양수인에게 후속 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이권을 기록하고 보호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이 법령을 시행하는 주에서는 이전 양수인이 법령에서 허용한 시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선의의 구매자가 보호된다.

f. 선의의 소유권 보장

대부분의 증서에는 소유권에 대한 보증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소유권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구매자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는다. 구매자의 소유권은 소유권 침묵 소송이 제기되어 소유권 침묵이 해제될 때까지 소유권 침묵 상태가 유지되므로 구매자는 소유권의 성격과 시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게 된다.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나는 등기소에서 개별 소유권 검색을 기반으로 한 소유권의 시장성에 대한 구매자 변호사의 서면 의견서이다. 더 일반적인 절차는 소유권 보험 회사에서 소유권 예비 보고서를 구매자의 변호사에게 제공하여 소유권 결함을 확인하는 초록 또는 보험이다. 그런 다음 소유권 보험 요약서 또는 약정서를 사용하여 소유권 보험 회사의 소유권 보험 보증이 소유권에 대한 모든 결함 및 저당권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한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가능한 경우 구매자는 소유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초록 또는 소유권 보험의 비용은 판매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용된 방법도 명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선의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권 보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g. 모기지 및 신탁 증서

모기지는 빚진 돈의 지불을 담보하는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형태를 취한다. 차용자는 '저당권 설정자(mortgagor)'라고 하고, 채권자는 '저당권자(mortgagee)'라고 한다. 모기지는 채권자에게 차용자의 지불 약속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구매자 또는 차용자(저당권 설정자)가 판매자 또는 채권자(저당권자)에게 명시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약속 어음이 첨부된다. 차용자가 어음을 갚지 못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한 후 매각 대금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감으로써 대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선순위 모기지는 차압 수익금에 대해 채권자(저당권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한다. 두 번째 저당권자는 첫 번째 저당권이 만족된 후에만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일부 주에서는 신탁 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신탁 증서는 금액 또는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한 명 이상의 수탁자에게 맡긴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기지과 동일하다. 이는 모기지 대출과는 형식이 다르지만 여전히 담보 상품이다. 모기지 및 신탁 증서는 모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기록되며 공적 문서가 된다.

h. 해제

위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기지 및 신탁 증서는 모두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되며, 등기 시 공적 문서가 된다. 모기지/신탁 증서의 전액을 지불한 경우, 해당 카운티에 공시 및/또는 완납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하여 공공 기록에서 해당 문서를 삭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모기지/신탁 증서를 담보하는 채무가 지급되면 모기지/신탁 증서 보유자는 "지급됨"으로 표시된 원본 문서를 차용자에게 보내 해당 카운티 사무소에 등기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별도의 저당권 해제 증서 또는 모기지 해제 증서도 제출해야 한다. 저당권 해제 문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은 주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적절한 해제 서류는 원본 모기지/신탁 증서가 완납되었음을 확인시켜 주며 지역 카운티 사무소의 등기 담당자에게 공공 기록에서 모기지/신탁 증서를 해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저당권/신탁 증서는 공식적으로 해제될 때까지 공적 기록상 남게 된다. 따라서 모기지/신탁 증서 대금을 완납할 때마다 해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i. 공사 기여자 유치권

대부분의 주에서는 건물의 건설, 수리 또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또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한 자재 및 노동력에 대한 대금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건물 및 개선물에 대한 유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 계약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청업체는 일반 계약업체가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공사 기여자 유치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발주한 작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자 및 하청업체로부터 선취특권 포기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 공사 기여자 유치권이 완성되면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유치권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교회 건물 또는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계약자 및 작업 중인 하청업체로부터 유치권 해제 또는 면제를 받아야 한다. 면제를 받지 않으면 미결 공사 기여자 담보권의 가능성으로 인해 소유권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제 3자(예: 소유권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필요한 모든 권리 포기 및 면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j. 측량

양도된 토지에 대한 설명은 모든 증서에 포함되어 있다. 관례적인 공식 설명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 (a) **기념물 및 코스를 참조하여 설명** - 기념물은 경계 식별을 위해 특별히 배치된 인공 기준점(예: 철봉이나 콘크리트 매설물)이거나 바위나 나무와 같은 자연물일 수 있다. 반면에 코스는 나침반을 기준으로 방향에 따라 표시된 경계선으로, 일정 거리 또는 경계 사이를 달리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계선 결정과 관련하여 기념물과 코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코스 결정에 사용된 개인적인 판단과 달리 기념물의 영속성을 고려하여 기념물이 우선한다.
- (b) **직사각 측량제도 표기법(Rectangular Survey System)** — 앨러게니 산맥 서쪽 미국 대륙의 대부분의 주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측량의 시작점은 경도 및 위도 기준과 평행한 선이다. 위도의 평행선을 따르는 선을 기준선이라고 한다. 기준선에 직각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선이 주 자오선이다. 타운십 라인은 기준선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6마일 간격으로 이어지는 라인이다. 범위선은 주 자오선에 평행하게 6마일 간격으로 그려진다. 각 경우의 6마일 스트립은 연속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다. 이 선들이 교차하여 형성된 6마일 정사각형을 타운십이라고 하며, 이를 다시 1마일 정사각형으로 나눈 것을 섹션이라고 한다. 섹션은 160 에이커 구역과 40 에이커 구역으로 연속적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c) **등기된 필지 측량 참조법(Reference to a recorded plat)** — 이 방법은 양도된 필지를 포함하는 더 큰 필지의 측량을 참조하여 증서에 부동산을 설명하는 방법이다. 이 측량 방법으로 식별된 부동산을 정확하게 지정하려면 증서 언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는 등록된 토지 측량사를 고용하여 건물의 물리적 위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표시를 배치하며 침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측량은 구매자가 부동산의 범위와 위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설명은 증서, 모기지, 부동산 물권보험 또는 요약서에도 표시된다. **증서에 기재된 설명을 포함하여 이러한 기술은 동일해야 한다.** 새로운 측량은 항상 기존 측량과 비교하여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두 개 교단 사용 부동산

서로 다른 교단의 개별 교회 간 교회 건물을 공유하는 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계약의 진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질서 있는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상호 합의한 서면 계약에는 계약의 목적과 예상되는 계약 기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서의 개발은 일정과 건물 사용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협력적인 건물 유지 관리를 제공하며, 협력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4. 교회 재산의 역사적 랜드마크화

교회 건물은 종종 유적지 보존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의 주요 대상이 된다. 보존 노력은 특정 건물이나 마을 지역을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지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랜드마크 지위는 권위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랜드마크 지위는 정부 기관에 랜드마크 부동산 소유주에게 상당한 통제와 재정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낡고 값비싼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대식 유리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교회가 역사적인 성역에 건물을 증축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정부 기관에서 불허하거나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교회에 상당한 재정 및 기타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지정된 역사 지구에 있는 교회 소유지의 노후화된 보조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할 경우, 해당 변경을 승인하는 정부 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지정은 대형 성소의 난방 또는 냉방 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교회에 접근하기 쉽게 만들려는 시도가 구조 변경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사용 제한에 대한 대가로 정부 기관은 향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복구 작업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방 및 주 소득세 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동산 가치 감소 및 개발과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세 공제는 교회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1988년 총회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시다'라는 중요한 정책 성명에서 교회 재산의 랜드마크화에 관한 다음과 같은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교회 구조를 유지하도록 교회에 요구하거나 교회 구조를 보존하기 위해 토지 수용권에 대한 절차를 밟게 할 수 없다. 교회는 미적, 건축적 특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에 협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재산과 그 사용에 관해 종교적 삶과 선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최종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본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랜드마크는 교회 재산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교회가 랜드마크 지위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경우, 교회는 모든 행정 및 사법 차원에서 반대하여 뜻하지 않게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C. 총회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

미국장로교 총회는 두 가지 자금 출처로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회와 운영 기관이 자본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로교회의 선교를 촉진하는 것이다. 미국장로교 용자국(Presbyterian Church (U.S.A.) Investment and Loan Program, Inc.)은 조정된 용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PILP는 기부 기금과 PILP 대출 프로그램(투자 기금)이라는 두 가지 자금원을 통해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1. 기부 기금

이 대출의 재원은 이 목적을 위해 총회에 맡겨진 기부금과 이 프로그램을 위해 축적되어 따로 마련된 선교 기금이다. 이 기금을 통해 다양한 목적의 대출을 교회에 저렴한 이율로 제공할 수 있다. 클레어 루이스 (800) 903-7457 ((800) 903-PILP)로 문의할 것.

2. 미국장로교 용자국

미국장로교 용자국(<https://pilp.pcusa.org/>)은 개인, 교회, 운영 기관 및 기타 미국장로교 관련 단체의 투자로부터 이러한 대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 개인과 교회는 경쟁력 있는 금리를 지불하고 채권을 구매한다. 모든 대출은 저렴한 이율로 이루어진다. 클레어 루이스 (800) 903-7457 ((800) 903-PILP)로 문의할 것 .

D. 해산 또는 소멸된 교회의 부동산

때때로 노회는 교인들의 요청이나 노회의 주도로 교회를 해산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드물지만 가끔 노회에서 교인 전원이 이사를 가거나 사망했거나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남은 재산, 부동산, 금융 자산 및 비품은 미국장로교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 노회의 책임이 된다. 목회위원회와 노회 이사회 또는 기획 위원회는 모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함께 협력해야 한다. 교회 당회 및 신탁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산을 양도 및 처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법적 요건과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가족의 기념품, 가구, 금융 자산의 처분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교회의 해산이 제안되면, 노회 대표와 당회는 모든 부동산 및 개인 부동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모든 은행 계좌, 투자금, 특정 목적을 위해 보유한 모든 기부금 또는 기타 기금에 대한 문서와 함께 부동산과 건물을 각각 별도로 식별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산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훨씬 간단하므로 교회 법인 임원들이 적절한 문서로 실행할 수 있다. 알려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잠재적 현금인 노회로, 또는 합병의 경우 승계하는 미국장로교 교회로 흘러가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이 특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교회 통제권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반환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경우, 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 자문과 상의할 것.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소를 비워야 하는 경우에도 노회의 보험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버려진 건물은 비용이 많이 드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침입자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건물을 점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사용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진다. 공실 부동산에 관한 보험 약관의 특정 조항을 확인하려면 보험 대리점에 문의할 것. 종종 빈 건물 보증을 추가해야 한다.

자산의 가치가 낮거나 구매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자산을 유지 관리하고 보험에 가입할 책임을 지는 것보다 소액의 대가를 받고 자산을 양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묘지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묘지에 가족이 묻혀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 지역 묘지 협회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해산된 교회 부동산에 대한 예제 양식"(참조부록 B), 노회와 교회가 교회의 해산을 고려할 때 지침이 될 수 있다. 예제로서의 양식은 부동산이 모두 전체로 이전하는 것처럼 단순화된다.

실제로, 노회 태스크포스와 교회 대표자들은 종종 많은 수의 개별 항목의 목록을 작성하고 고려한다.

2021년 10월 업데이트

부록 A

자문 의견

신탁 조항과 은혜로운 분리: 교회의 일치를 위한 신탁 조항의 이행

신탁 조항이란?

G-4.0203의 *규례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특정 교회, 노회, 대회, 총회, 미국장로교가 소유하거나, 이들을 위해 소유된 모든 자산은, 그 법적 소유권이 법인, 이사(들), 또는 비법인 사단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될지라도, 또는 수입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유된다."¹

장로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 헌금에서 비롯되며, 개인, 다른 교회, 노회, 대회, 총회의 직접적인 헌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헌금은 한 세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 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신탁으로 보관된다. 실제로 "신탁 조항은 교회가 시대를 초월한 성도들의 교통이며, 앞서 온 사람들과 뒤따를 사람들 모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우리의 이해를 반영한다. 한 교회가 미국장로교를 떠나려고 할 때, 그것은 종종 중요한 역사적 관계를 끊는 것이며, 또한 그 교회의 임원들이 참여하고, 그 교회의 정치에 의해 다스림을 받기로 서약했으며, 많은 교인들이 애정의 유대를 느낄 수 있는 친교를 떠나는 것이다."² 따라서 재산을 신탁한다는 개념은 오랫동안 장로교 신학의 일부였으며 미국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관행이다(*왓슨 대 존즈*, 80 U.S. (13 Wall.) 679 (1872)).³

교회의 일치는 신탁 조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성령도 한 분이시며, 소망도 하나며, "주도 한 분이시 며, 믿음도 하나며, 세례도 하나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 고 만유를 통일하시 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에, 교회는 하나다(에베소서 4:5-6)"(F-1.0302(a)).

우리의 정책은 이와 같은 일치와 하나됨의 신학을 반영하고 있으며, *규례서*는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이며,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제217회 총회(2006)는 "미국장로교의 모든 교인은 교회의 가시적인 하나됨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를 가리는 개별 교단으로의 분열을 피하며, 이 교단의 다른 교인들과 조화롭게 살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당회, 교회, 노회, 대회는 서로 그리고 총회와 언약된 협력관계를 갱신하고 강화해야 한다."⁵고 촉구했다.

또한 G-3.0101에 따르면, "교회는 그 공의회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교회의 하나됨의 표징이다. 미국장로교의 개체교회는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지녔으나, 그 자체로 교회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주되심을 증거하는 임무를 개체교회 안팎에서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는 소명은 모든 신자가 해야 할 몫이다. 교회 공의회의 특별한 책임은 미국장로교의 일부인 그들 증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며 통솔하여, 그와 같은 증언이 전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⁶ 또한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는 아니다. 그러므로 개체교회 들은 서로 간의 깊은 유대를 통해 하나가 되며, 책임과 신뢰의 관계를 통해 연합하고, 전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총체적으로 교회라고 한다."⁷ 따라서 교회는 같은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연합이 아니라,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반영하는 유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지식을 시대를 통해 기념하고 전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⁸ 미국장로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는 헌법 조항은 본 교단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속자와 선조의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포괄하는 불가분한 하나의 몸을 구성한다는 우리의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되고 반영된다(F-1.0302).

사명은 신약 조항과 교회 재산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규례서 G-4.0201은 "미국장로교, 산하 공의회, 조직체, 산하 개체교회의 자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세상에서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라고 명시하고 있다.⁹ 각 지역 교회는 특정한 역사를 가지고 "그들이 놓인 특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참여하는 교회이다."¹⁰ 신자들에게 교회는 세례, 입교, 결혼, 부활을 축하하고 성도들의 친교에 참여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중요한 개인적 경험은 지역 교회 신자들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일부가 된다. 이러한 공유된 경험은 우리가 나고 자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개체교회는 교회의 기본 형태이지만, 그 자체로 교회가 되기에 충분한 형태는 아니다"라는 점을 확인하며, 신약 조항의 목적이 특정 교회의 증거와 선교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 전체의 선교와 증거를 지원하는 것임을 정책적으로 인정한다. 실제로, "교회 공의회의 특별한 책임은 미국장로교의 일부인 그들 증인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며 통솔하여, 그와 같은 증언이 전체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¹¹ 이러한 맥락에서 노회는 교회의 협의체로서 "그 지역 교회의 선교 전략"을 개발할 책임이 있으며,¹² 교회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조직, 접수, 합병, 해산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¹³ 또한 노회는 개교회가 선교를 발전시키고 전체 교회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¹⁴ 따라서 노회가 개별 교회의 해산 또는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당 지역 교회와 전체 교회의 선교를 분별하고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를 해산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노회는 신약 조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교회는 노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산될 수 있다. G-4.0207에 따라, "노회가 헌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만, 개체교회와 미국장로교 사이의 관계가 끝날 수 있다."¹⁵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회는 해당 지역 내 교회의 선교와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교회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조직, 합병, 해임 및 해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¹⁶

회중이 투표를 통해 해산을 요청할 수 있는가? 교회가 미국장로교를 일방적으로 탈퇴할 권리가 있는가?

없다. 미국장로교 교회가 교단이나 소속 노회를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미국장로교 탈퇴는 교회 회의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¹⁷ 교단 탈퇴를 투표할 권한은 교회나 당회에 주어지지 않는다.¹⁸ 노회가 당회, 청문회 또는 기타 자문 형태로 해산에 관해 교회와 상담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문은 해산 요청을 고려할 때 노회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교단은 "당회나 교회가 아닌 노회에 교회 해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본 교단 헌법은 규모에 관계없이 충성스러운 소수파가 본 교단 내 관계에 있는 교회를 계속 존속시키기에 숫적으로 충분한 헌신이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포럼으로서 노회의 공식 회의를 보장한다."²⁰ 또한 노회는 해산을 요구하는 교회와 협상할 때 세속의 소송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의무가 있다.²¹

여기서 양심의 자유는 G-2.0105에 따라 가르치는 장로, 사역 장로, 집사에게 제한되며, 해산을 요구하기 위한 공동의회 소집, 교단으로부터 해산을 요구하기 위한 교회를 몰고가거나 또는 교회의 헌법적 통치를 방해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²² 담임목사와 당회가 교회의 미국장로교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비밀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은혜로운 분리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교회는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²³

교회가 다른 개혁신교단으로 해산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다른 개혁신 단체로의 파송은 미국장로교 헌법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요구되는 사항이다.²⁴ 유권해석을 통해 총회를 개최했다:

노회는 본 교단의 다른 교회 기관과 미국장로교의 교리와 질서를 따르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로 파송할 수 있다. 어떤 교회도 독립적 지위 또는 교단과 관련 없는 교회의 지위로 해산될 수 없다.²⁵

다른 개혁신주의 단체로의 파송 요건은 개혁신주의 신학과 개혁신주의 종파를 이어가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역사적 개혁신주의에 대한 이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또한, "다른 개혁신교단"으로의 파송은 노회 재결의 시 사용된 표현이며, "합의 조항"에 따라 *규례서*에 명시되어 있다.²⁶ 따라서 노회가 다른 개혁신교단으로 편입을 위해 해산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노회는 "다른 개혁신교단 가입 대기 중"으로 해산하여 다른 개혁신교단이 해당 교단 가입을 거부할 경우 해당 교회가 독립된 상태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용하는 개혁신교단이 다른 개혁신 단체임은 누가 결정하는가?

"받아들이는 기관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산하는 노회의 책임이며, 이 책임은 노회 내의 다른 기관(예: 행정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따라서 총회는 특정 교단이나 그 구성 기관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없다."²⁷ 이 문제를 검토할 때, 노회는 다음과 같이 받아들이는 기관의 자격 여부와 같은 질문을 고려해야 한다:

- 1) 노회가 이해하는 개혁신주의 신학의 본질과 교리적으로 일치한다;
- 2) 미국장로교의 정책, 형식과 구조가 일치하는 정치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 3) 교회가 사실상 독립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²⁸

또한, "노회가 이러한 문제를 만족시키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하게 문서화하지 않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장로교 정체의 정신을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²⁹

노회가 교회 해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행정 전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가?

노회가 행정 전권위원회에 교회 해산을 위임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결정은 노회에 매우 중요한 선교적 사안이므로 노회 전체가 함께 이 사안을 알아보기를 원할 것이다.³⁰

노회가 자체 또는 모든 교회를 해산할 수 있는가?

아니다. 총회와 대회만이 협력하여 노회 또는 노회의 일부를 조직, 분할, 연합 또는 합병할 수 있기 때문에 노회는 노회 자체 또는 노회 소속 교회 전체를 해체할 수 없다.³¹

은혜로운 해산 정책이란 무엇인가?

제219^회 총회(2008)의 지시에 따라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는 노회, 대회 및 당회에 결의문을 보내 "노회와 대회가 일관성, 목회적 책임, 책임감, 은혜로운 증거, 개방성 및 투명성을 가지고 '교인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분할, 해임 또는 해산'하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를 개발하여 하급 운영 기관과 지역 교회에 제공하라는 총회의 의지를 나타낸다."라고 명시했다. ³² 따라서, 은혜로운 해산 정책은 특정 교회가 미국장로교회에서 해임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방법을 분별할 때 명확성을 제공하고 그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은혜로운 해산 정책은 신탁 조항(G-4.0203)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최근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GAPJC)사건에서 [탐대 샌프란시스코 노회](#) 사건에서, GAPJC는 *규례서* G-4.0203에 있는 신탁 조항이 은혜로운 해산 정책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해 권위

있게 해석했다.³³ GAPJC는 노회가 *규례서*에 따라 재산권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G-4.0201)과 그 지방(G-3. 0303a)과 그 지역(G-3.0301a) 내의 특정 교회를 해산하기 위해], 노회는 신탁 조항(G-4.0203)에 따른 신탁 의무를 이행하여 재산의 수혜자인 미국장로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은혜로운 해산 정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노회는 해당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와 지역사회의 영적 필요와 교회의 상징, 교서 및 위대한 목적과 같은 많은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³⁴ 또한 노회는 재산 처분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교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가치를 고려하고 미국 장로교회의 재산 사용과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은혜로운 해산 정책에는 정책 내에 나열된 절차 중 이와 같은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은혜로운 해산 정책 또는 은혜로운 해산 정책의 시행에는 총회 기관과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아니다, 노회는 교회의 조직, 합병, 해산 또는 해산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지역 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다.³⁵ 이 재량권에는 교회의 재정 상태와 재산 가치에 대한 노회의 고려가 포함된다.

은혜로운 해산 정책(또는 노회의 조례나 정책)에 노회가 교회를 해산, 해임 또는 합병하는 상황을 명시할 수 있는가?

아니다, 노회는 교회를 해산, 해임 또는 합병할지 여부를 분별할 때 노회의 사명을 결정해야 하므로, 교회를 해산하려면 노회가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개별 사건마다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³⁶ 노회는 교회를 해산할 상황을 미리 분별할 수 없다. "이제 교회 해산은 제 13 조 단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래왔듯이 노회가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개별 사건마다 해산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⁷

은혜로운 해산 정책에서 교회 단체 간에 재산을 사용 및/또는 분배하는 방법과 시기를 명시할 수 있는가?

아니다. 노회는 사안별로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의 사용과 분배를 포함하여 노회의 사명을 결정해야 한다.³⁸

은혜로운 해산 정책은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노회의 은혜로운 해산 정책에 신탁 조항에 따른 신탁 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회는 해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궁극적으로 이 신탁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탐 대 샌프란시스코 노회 사건](#)에서 GAPJC는 해산을 요청하는 교회의 재산 가치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재산 가치에 대한 재정 분석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³⁹ 노회는 해산을 투표하기 전에 이 재정 분석에 대해 통보받아야 한다. 이 정보를 제공하면 노회와 교회가 교회 해산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유형의 은혜로운 해산 정책의 경우 합헌이 되지 않는가?

노회가 사례별로 교회를 해산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신탁 조항의 신탁 의무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혜로운 해산 정책은 위헌이 될 수 있다. 사례별로 이 분석을 배제할 수 있는 정책의 가능한 예는 다음과 같다:

1. 노회가 해임 조건을 승인하기 위해 회중의 1% 표만을 요구하는 정책에는 현재 회원의 영적 필요나 욕구만을 고려하고 이전 회원의 역사적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2. 개인별 및/또는 선교 재정적 의무만을 고려하도록 하는 정책은 재산의 수혜자로서

미국장로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신탁 조항에 따른 신탁 의무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해산 승인 전에 교회가 일정 비율의 자산을 지불하도록 하는 정책. 이는 사례별 분석을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해산을 요청하는 교회의 기록과 관련한 노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노회는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교회의 역사적 기록을 보호할 헌법적 책임이 있다. *규례서* G-3.0107에 따르면, 해산되거나 해산된 교회 기록의 소유권은 노회로 넘어가고, 서기는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록의 보관을 책임진다.⁴⁰ 미국장로교회의 공식 기록 보관소인 장로교 역사 협회에 기록을 기탁하는 것이 권장되는 보존 방법이다. 장로교 역사협회(PHS)는 교단에서 중요한 자료를 보존하는 동시에 기록을 둘러싼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을 명시된 서기 및 행정위원회에 제공한다. 떠나는 교회가 기록에 계속 접근하기를 바라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원본 기록을 마이크로필름화하고 마이크로필름을 디지털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노회, 교회, PHS가 모두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⁴¹ 요약하면, PHS는 노회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1) 원본 자료를 기탁하거나, 2) 자료를 기탁하고 마이크로필름화하거나, 3) 기록을 기탁,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하거나, 4) 원본 기록을 마이크로필름화, 디지털화하여 회중에게 반환한다.⁴²

노회의 교회 해산 결정은 검토 대상인가?

그렇다, 노회의 교회 해산 결정은 검토의 대상이 되며, 노회가 헌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회는 노회의 절차와 결정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여 개입할 수 있다.⁴³ 대회가 노회가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회는 노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⁴⁴ 노회가 이러한 헌법적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으려는 경우, 대회는 노회의 교회 분할, 해산 또는 해산 권한, 참된 교회 식별 권한,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신탁 재산을 보유하는 권한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⁴⁵

신탁 조항은 교회 대출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신탁 조항은 미국 장로교 융자국(Presbyterian Investment and Loan Program, Inc., 이하 PILP)과 총회 선교위원회(GAMC)가 제공하는 미국장로교 교회를 위한 저비용 대출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한 지원과 안전장치를 제공한다. PILP는 미국 장로교회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교회에 저비용 대출을 제공하며, 신탁 조항이 없다면 노회는 대출을 보증하지 않을 것이며, 보증이 없다면 PILP의 교회 지원 능력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⁴⁶ 대부분의 교회 건축 프로젝트는 교회가 현재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많은 교회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PILP, GAMC의 교회 대출 프로그램 또는 상업 대출 기관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대출은 대출을 받는 교회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으로 담보된다. 교회의 재산은 이러한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며, 대출을 받는 교회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잠재적인 상환 재원이 된다. 이러한 대출은 담보로 제공될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는 교회의 관할 노회가 보증한다. 즉, 대출을 받은 교회가 상환하지 못할 경우 노회가 대출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 노회는 G-4.0203에 따라 교회 재산이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러한 담보 대출의 보증을 자신한다. 또한 G-4.0204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미국장로교 개체교회가 소유한 자산 또는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를 위해 소유된 자산을 미국장로교 개체교회로서 헌법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자산은 노회의 규정에 따라 노회가 보유하거나 활용하며 적용하고 이전하며 매각해야 한다.

G-4.0204에 따라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교단을 탈퇴할 경우, 교회의 재산(부동산, 건물, 투자금과 같은 기타 자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은 관할 노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노회는 떠나는 교회의 지역에서 미국장로교 사명을 계속 책임지며, 노회는 그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떠나는 교회가 노회가 보증하는 PILP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노회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보증에 따른 노회의 책임을 충족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회는 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별하여 떠나는 교회에 제공할 수 있지만, 이러한 선택으로 담보 대출 상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보증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PILP 및/또는 GAMC에 담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교단을 탈퇴하거나 노회에 의해 해산되는 경우, 대출 조건에 따라 대출이 가속되고 즉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노회의 보증은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충족되지 않는다. 우리의 연결된 제도와 교회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재산이 미국장로교를 위해 신탁되어 있다는 사실 덕분에 교단은 PILP 및 교회 대출 프로그램과 같은 전국적인 기관을 통해 저금리 모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교회를 지원할 수 있다. 신탁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증과 보호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기존 대출 출처보다 교회에 재정적으로 더 유리한 기본 재산의 모기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경제 상황과 은행 위기의 여파로 중소형 교회가 은행으로부터 자본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교단의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생 교회, 개척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인 경우가 많으며, PILP는 이러한 교회와 다른 미국장로교 교회에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현재 *규례서*의 신탁 조항이 없다면 노회가 대출을 보증할 가능성이 낮고, 보증이 없다면 교회를 지원하는 PILP의 능력이 크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4년 2월 업데이트

¹ G-4.0203

² PJC (2012, 221-03 [탐 vs. 샌프란시스코 노회 사건](#))

³ G-4.0203 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은 교회 재산에 관한 분쟁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의 허용 가능한 역할을 변경한 법원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G-4.0203 이 채택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산 분쟁을 판단하는 법원은 교단의 교리 문서를 통해 지역 교회의 재산이 대형 교회를 위해 신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다(이는 "묵시적 신탁" 분석이라고 불리웠다). 그러나 1979 년 미국 대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교단 교리에 대한 질문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교단의 교리를 해석하지 않고 재산 분쟁을 판단해야 했다(소위 중립적 법 해석 원칙). 장로교인들에게, 민사 법원이 교단 헌법 문서에 재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변경은 신중한 결정이었다. 섹션 G-4.0203 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장로교식 이해에 대한 명시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장로교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민사 법원이 적용하는 허용 가능한 법적 해석의 틀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교단의 정치를 보호하려는 시도였다.

⁴ 요한복음 17 장 20~21 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일치를 간절히 바라시며 다음과 같이 기도하신다: ²⁰ "나의 기도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또한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 저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²¹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갈라디아서 3 장 28 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도 없나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니라"라고 말한다. 에베소서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F-1.0301 은 "교회는 죄가 용서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며 적대감의 벽이 허물어지는 사랑의 공동체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⁵ 총회(2006), 평화, 통일, 순결에 관한 태스크포스 보고서, 06-01, 기록 1, a-b.

⁶ G-3.0101

⁷ G-1.0101

⁸ F-1.02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다." F-1.0403 참조

⁹ G-4.0201

- ¹⁰ G-1.0101
- ¹¹ G-3.0101
- ¹² G-3.0301; G-3.0303(a)
- ¹³ G-3.0301(a)
- ¹⁴ G-3.0301(c)
- ¹⁵ G-4.0207
- ¹⁶ G-3.0301; G-3.0303(a) 참조
- ¹⁷ 총회 (제 218 차, 항목 4-20); 또한 PJC (*선퀵스트 대 하트랜드, 시정 사건 219-03*, 2008) [참조](#).
- ¹⁸ G-1.0503 및 G-3.02 참조
- ¹⁹ *선퀵스트 대 하트랜드*, [시정 사건 219-03](#)
- ²⁰ PCUS 1976, 92, *스트롱 대 중남부 대회* 참조.
- ²¹ *선퀵스트 대 하트랜드*, [시정 사건 219-03](#)
- ²² *선퀵스트 대 하트랜드*, [시정 사건 219-03](#)
- ²³ *선퀵스트 대 하트랜드*, [시정 사건 219-03](#)
- ²⁴ 총회 (2008, 14, 15 항목 07-13). 유권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G-3.0501c 및 G-6.02를 참조할 것.
- ²⁵ 총회 (2008, 14, 15 항목 07-13). 총회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독립적' 또는 '개체교회인' 장로교회는 우리가 교회의 '가족'이라는 개념에 반하는 변칙이며 따라서 가족 그룹 내의 다른 교회에 면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 노회는 ... 교회를 독립적인 지위로 해산할 헌법적 권리가 없다. ... 교인과 목사를 아무런 연고없이 해임할 수 없다는 정책은 역사적인 장로교회의 교회 연결주의 정책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이 정책은 ... 독립에 대한 해산을 금지한다."(PCUS 1973, 119-121 쪽, *앤더슨 대 플로리다 대회*).
- ²⁶ *규례서* 참조부록 B, 제 13 조 (B. 13 쪽). "합의 조항"은 역사적 목적으로 여기에 인용된 것이며 헌법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
- ²⁷ 총회 (2008, 14, 15 항목 07-13).
- ²⁸ 총회 (2008, 14, 15 항목 07-13).
- ²⁹ 총회 (2008, 14, 15 항목 07-13).
- ³⁰ *선퀵스트 대 하트랜드*, [시정 사건 219-03](#); (PCUS 1976, 92, *스트롱 대 중남부 대회*) 참조
- ³¹ G-3.0502(e)
- ³² 총회 (2008, 49, 51, 284, 항목 04-28) 미국 장로교 제 218^회 총회(2008)
1. 이 결의안을 노회, 대회, 당회에 보내 노회와 대회가 일관성, 목회적 책임, 책임성, 은혜로운 증거, 개방성, 투명성을 가지고 "교인들과 협의하여 교회를 분리, 해임 또는 해산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절차를 개발하여 하급 운영기관과 지역 교회에 제공하라는 총회의 의지를 나타낸다(*규례서*, G-11.0103i).
 2. 소송을 통해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그리스도의 대의에 치명적이며, 지역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부분과 에큐메니컬 관계, 그리고 우리 주변 세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으며, [총회는]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교회,] 노회 [,] 대회가 다음 원칙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 일관성: 노회에 위임된 지역 권한은 우리가 공유하는 신앙, 봉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의해 인도되고 형성된다.
 - 목회적 책임: 해산을 요청하는 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G-11.0103i의 요건은 노회의 목회적 책임이 다른 책임에 묻혀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책임: 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은 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G-8.0000)와 교회 내 분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G-8.0600)를 제기하면서 신탁 및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적절하게 지시한다. 그러나 완전한 책임을 지려면 "양떼를 돌보는 것"에 대한 더 중요한 관심도 필요하다.
 - 은혜로운 증거: 성경과 성령은 우리에게 가혹한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로운 증거를 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 개방성과 투명성: 해산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 조기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진실, 질서, 선에 도움이 되며 민사 소송을 해결책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³³ PJC ([2014, 221-03, 탐 대 샌프란시스코 노회 사건](#))

³⁴ F-1.0302; F-1.0303; F-1.0304 참조.

³⁵ 그러나 각 교회를 사례별로 고려할 때, 총회 또는 노회의 단체 중 하나가 교회 및 노회와 함께 재산 또는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창출했을 수 있으므로 노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장로교 용자국(PILP)은 노회의 재산 및/또는 지급 보증을 담보로 하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대출을 연장한다. PILP로부터 담보 또는 무담보 대출을 받은 교회의 해임 또는 해산을 고려하는 노회는 신탁 조항에 따른 노회의 신탁 이익의 일부로서 노회 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과 상의해야 한다.

³⁶ 총회 (회의록, 1991, 요청 91-24, 파트 I, 396 쪽).

³⁷ 총회 (회의록, 1991, 요청 91-24, 파트 I, 396 쪽).

³⁸ 총회 (회의록, 1991, 요청 91-24, 파트 I, 396 쪽).

³⁹ PJC (2014, 221-03, [탐 대 샌프란시스코 노회 사건](#))

⁴⁰ G-3.0107 은 "각 공의회는 진행 과정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의록 및 기타 모든 공식적인 공의회 기록은 해당 공의회 또는 그 법적 승계인의 영구적인 재산이다. 공의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기록은 공의회가 중단되기 전의 하부 공의회 범위 내에서 다음 상위 공의회가 소유하게 된다. 각 공의회 서기는 장로교 역사학회 또는 미국 장로교 신학교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환경에 공의회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것을 해당 기관에 권고해야 한다."

⁴¹ PHS 마이크로필름 프로그램은 미국장로교 법인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아카이브 품질의 필름을 제작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PHS 는 PDF 또는 JPEG 형식의 디지털 에디션 마이크로필름을 유료로 제작한다. 노회는 마이크로필름(및 디지털화) 비용을 지불하거나 떠나는 교회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록이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된 후, 서기는 원본 기록을 PHS 에 보관하거나 유예 해고 동의의 일환으로 떠나는 교회에 반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⁴² 이러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의할 것: 장로교 역사 협회, 425 Lombard Street, Philadelphia, PA 19147. 전화 (215)627-1852. 이메일: refdesk@history.pcusa.org 또는 웹: www.history.pcusa.org

⁴³ G-3.0108(a)&(b); F-3.0206 참조

⁴⁴ G-3.0108(a)(b)&(c)

⁴⁵ G-3.0401(c); G-3.0301(a); G-3.0303(b); G-4.0203 & G-4.0207 참조.

⁴⁶ PILP 대출을 위한 기금은 미국장로교 교인과 교회에 대한 채무 증권인 기한부채권 판매와 중간 공의회 및 미국장로교 기관에 대한 교단 계좌 영수증(DAR) 계좌 판매를 통해 조성된다. 이러한 기한부채권과 DAR 에 대한 이자 및 모든 상환액은 교회에 대한 대출의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충당된다. PILP 는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회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의존한다. PILP 는 GAMC 를 위한 교회 대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교회 대출 프로그램은 GAMC 와 미국 장로교 총회의 주요 법인인 미국 장로교 총회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선교 프로그램으로, 기부금으로 교회에 저비용 대출을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

부록 A

Inc.

(교회 법인명)

법인 정관

-

[참고: 이미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법인 이름 목록은 일반적으로 각 주 정부 총무처 사무실에 있다. 그 법인 목록을 확인하라. 교회 법인의 이름에 도시 이름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권장되기도 한다.]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_____, Inc이다.
(교회 법인 명)

제 2 조

유형

본 법인은 비영리 종교 단체이다.

제 3 조

기간

본 법인의 존속 기간은 영구적이다.

제 4 조

목적

법인 설립 목적은 미국 장로교 헌법(규례서인용)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교회의 원대한 목표(규례서 F-1.0304):

-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의 선포;
- 하나님 자녀들의 안식처, 양육과 영적 교제;
-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함;
- 진리의 수호;
- 사회 정의 구현;
-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나타냄.

미국 장로교 헌법과 위에 명시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본 법인은 여기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제 5 조
미국 장로교 헌법에 대한 지지 및 준수

본 법인은 언제나, 그리고 모든 면에서 미국 장로교 헌법을 지지해야 한다. 법인과 그 자산인 부동산과 동산 모두는 현재의 미국 장로교 헌법 혹은 미국장로교 권위 기관에 의해 수시로 개정, 입법, 상정, 선포되는 미국장로교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인의 업무는 현재의 미국장로교 헌법, 혹은 미국장로교 권위 기관에 의해 수시로 개정, 입법, 상정, 선포되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되도록 진행해야 한다.

제 6 조
미국 장로교에 신탁된 모든 자산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미국장로교가 소유하거나, 이들을 위해 소유된 모든 자산은, 그 법적 소유권이 법인, 이사(들), 또는 비법인 사단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자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될지라도, 또는 수입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유된다.

(*규례서* G-4.0203).

제 7 조
권한과 직무

본 법인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규례서* G-4.0101):

교회를 위해 부동산 또는 동산 자산을 접수, 보유, 용자, 관리 및 이전하되, 부동산의 구매, 매각, 용자와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재단이사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소집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교회의 당회를 통해 전달 된 노회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 수령과 집행; 그러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의 유지와 보호; 교회의 목적을 위해 영구 특별 기금을 관리한다.

위의 모든 사항은 *규례서* G-4.0101 및 *규례서* G.4.0206 (a.)의 적용을 받는다.

추가로 위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고 미국 장로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법인은 아래에 조직된 비영리 종교법인의 모든 일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비영리 종교법인 설립에 관한 주 법령)

이사들의 권한과 직무는 당회의 권한과 직무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집사회의 권한과 직무는

미국장로교 헌법 (*규례서* G-4.0101, G-3.0201)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 또한 본 법인은 월권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제 8 조

구성원:

_____ (교회 이름)의 활동교인만이 법인의 구성원이 되며 이사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규례서 G-4.0102).

제 9 조

이사

법인의 임원은 이사로 지명된다. 이사들은 시무장로로 선출되어 임직받아 _____
 _____ (교회명)의 당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들은 또한 민법상으로도 하자가
 없어야 한다 (규례서 G-4.0102).

[참고: 가장 효율적이고 선호되는 모델은 개교회의 당회가 이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부 주는 이중
 검직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변호사가 주 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교회는
 별도의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교회가 당회의 시무장로 이외의 다른 이사회를
 지명하는 경우, 개교회가 정한 방법을 이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독립된 이사회 구성시 특정 요구
 사항은 규례서 G-4.0102를 참조하라.]

제 10 조

임원

법인의 임원 선출과 임명 방법을 내규에 명시한다.

제 11 조

내규

법인의 내규는 현재의 미국장로교 헌법 또는 미국장로교 권위 기관에 의해 수시로 개정, 입법,
 상정, 선포되는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내규는 법인의 구성원에 의해 채택되며 법인의
 구성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내규는 법인의 구성원에 의해 수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으나 항상 모든 경우에 미국 장로교 헌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제 12 조

초기 이사회

초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수는 _____ [3 명 이상]이어야 하며 후임자가 선출되고
 취임할 때까지 초기 이사로 섬길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제 13 조
법인 설립자

설립자의 이름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이름)

(주소)

제 14 조
최초 등록지와 등록 대리인

법인의 최초 등록지의 주소와 등록 대리인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_____ (당회 서기)

_____ (해당 교회의 주소)

_____ (시, 주, 우편 번호)

제 15 조
개정

법인의 정관은 법인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 수정되거나 추가되거나 새로운 정관이 채택 될 수 있다; 단, 정관은 항상 그리고 모든 경우에 미국 장로교 헌법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규례서 G-4.0101, G-4.0203).

[참고: 정관 개정시 주 법이 별도의 다른 절차를 요구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 16 조
법인 연방세 면제에 대한 제한 사항

법인의 어떤 자산도 그 법인의 구성원, 이사, 임원 또는 그 외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 활용되어서는 안되며, 그들에게 분배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법인이 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와 법인의 목표를 증진하도록 지불하고 분배하도록 권한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인의 활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거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도 안된다. 또 법인은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정치적 행위(성명서의 발표나 배포도 이에 포함됨)에 참여하거나 개입해서도 안된다. 본 정관의 규정과 관계없이, 본 법인은 (a) 국세청 코드 제 501(c)(3)항 또는 향후 연방세 코드 관련 섹션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 연방세 면제 관련 조항이 허용하지 않은, 또는 (b) 국세청 코드 제 170(c)(2)항 또는 향후 연방세 코드 관련 섹션에 의해 공제 대상이 되는 법인 기부금 조항이 허용하지 않은 어떤 행위도 수행해서는 안된다.

제 17 조
해산

개체교회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노회에 의해 그 개체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산된 경우, 또는 교인의 감소, 사역 포기, 기타 사유로 개체교회가 소멸된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부동산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미국장로교 _____ (노회명) 노회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상기 노회는 미국 국세청법 제 501(c)(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노회에 귀속되지 않는 자산의 경우, 이 자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정하는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 사용, 적용되어야 하며,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한 노회의 지시에 의해 그 자산을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규례서 G-4.0204, G-4.0205, G-3.0301).

부록 B

, Inc.

(교회 이름)

내규

-

제 1 조

목표, 목적, 형성, 제한, 권한과 직무, 재산

1항. **목적.** 법인 설립의 목적은 미국장로교 헌법 (규례서 G-4.0101)에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교회의 위대한 목표(규례서 F.10304) 및 본 문서의 법인 정관 편(제 4조)에도 담겨있다.

2항. **설립.** 본 법인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_____ (개체 교회 이름)에 의해 설립되었다(규례서 G-4.0101). _____ (개체교회 이름)은 _____ (대회 이름) 대회의 _____ (노회 이름) 노회의 회원 개체교회이다.

3항. **권위.** 이러한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이사회와 법인은 당회와 개체 교회의 권위 하에 있어야 하며, 현재의 미국 장로교 헌법을 항상 모든 면에서 준수하고 지지해야 한다. 헌법이 미국 장로교의 권위 기관에 의해서 수정, 제정 및 새로 만들어지고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규례서 G-4.0101; 법인 정관 5, 6, 7조).

4항. **권한과 직무의 제한.** 법인과 이사회의 권한과 직무는 당회나 집사회의 권한과 직무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규례서 G-4.0101., G-3.0201; 법인 정관 제 7조).

5항. **권한과 직무** 법인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다음의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규례서 G-4.0101):

- 교회를 위해 부동산 또는 동산 자산을 접수, 보유, 저장, 관리 및 이전하되, 부동산의 구매, 매각, 용자에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이사회는 반드시 적법하게 소집된 공동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개교회의 당회를 통해 전달된 노회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산에 대한 소유권 증서를 수락하고 집행하는 일;
-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지키는 일;
- 교회의 목적을 위해 영구 특별 기금을 관리하는 일.

위의 모든 일들은 규례서 G-4.0101와 규례서 G-4.0206(a.)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미국장로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은 _____ 아래 조직된 비영리 종교 법인의 모든 일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비영리 종교법인 설립에 관한 주 법령)

6항. **신탁소유의 모든 자산.** 개체교회, 노회, 대회, 총회 또는 미국장로교에 의해서 혹은 그들을 위하여 소유된 모든 자산은 그 법적 명의를 법인체에 있든지 재단이사(들)나 비법인체에 있든지 간에, 또한 그 자산이 개체교회나 상위 공의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든지 혹은 소득 창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자산은 미국장로교의 사용과 유익을 위해 신탁 보관된다.(*규례서* G-4.0203; 법인 정관 VI).

7항. **특정 자산 관련 요건.** 부동산의 매각 및 용자를 할 때, 이사회는 적법하게 구성된 회의에서 교회 회중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규례서* G-4.0101). 이사회는 그 교회의 당회로 전달된 노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용자를 얻거나 또는 담보를 설정할 수 없으며,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조건이 걸려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규례서* G-4.0206). 개체교회는 그 교회의 당회를 통하여 전달된 노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의 부동산을 임대하지 못하며, 기타 교회의 다른 부동산도 5년 이상 임대하지 못한다.(*규례서* G-8.0502).

8항. **자산의 양도.** 위의 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개체교회와 해당 법인의 부동산과 동산 자산은 미국 장로교의 사용과 이익을 위해 신탁된다. 이러한 목적 하에, 모든 양도증서 또는 양도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해야만 한다.

이 증서에 양도된 건물은 미국 장로교 헌법에 따라 _____ 노회(또는 그 법적 승계인)에 속한 개체교회로서 신성한 예배 및 기타 사역의 목적을 위해 양수인이 사용, 보관 및 유지해야 한다.

제 2 조 구성원

1 항. **회원 자격.** 개체교회에 활동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법인의 구성원이 될 자격과 이사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규례서* G-4.0102; 법인 정관 제 8 조).

2항. **정회원.** *규례서* (G-3.0204)의 규정에 따라, 당회는 활동교인 명부를 작성해 유지해야 하며 수시로 활동교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3 조 이사회

자격; 선출; 해임. 법인 임원은 이사로 지명된다. 최초 이사회의 명단은 법인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이후, 이사회의 구성은 개체교회의 당회 구성원들, 즉 시무 장로들과 동일해야 한다. 개체교회가 선출하여 시무장로로 위임받은 이들은 법인의 이사가 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사가 되는데 있어 민법상 하자가 없어야 한다.

[참고 : 주 법에 따른 최소 연령이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령이 있으면 이곳에 기록하라.] 당회에서의 시무사역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법인 이사직도 종료된다. (*규례서* G- 2.0405; 법인 정관 9조).

[참고: 가장 효율적이며 선호되는 모델은 개체교회의 당회가 법인의 이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이중 겸직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변호사를 통해 주 법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일부 교회는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만일 개체교회가 당회의 시무장로가 아닌 이를 이사로 지명한다면, 개체교회가 정한 방법을 이 정관에 기록해야 한다.]

제 4 조
이사회 회의

- 1항. **연례 회의.** 이사회의 연례 회의는 해당 개체교회의 연례 공동의회 이후에 열리는 첫 당회와 연계하여 열리거나 그 당회 직후에 열려야 한다.
- 2항. **절차.** 회의는 미국 장로교의 회의 요건 및 헌법 조항을 따라야 한다. 이 회의 진행 요건과 조항 이외에 추가로 내규는 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한다.
- 3항. **회의 공지.** 임시 회의의 경우, 회의 시간과 장소, 목적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늦어도 회의 10일 전까지 모든 이사에게 적법하게 송부, 우송, 전달되어야 한다. 정기 회의나 휴회한 회의에 대해서는 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모든 이사들이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회의의 시간, 장소, 목적에 대해 공지받을 권리를 회의 시작 전이나 후에 포기한 경우, 회의는 공지 없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 4항. **회의 정족수.** 안건 처리를 위한 정족수는 이사들의 과반수여야 하며 정족수가 참석한 여타 회의에서의 이사회의 조치는 이사회의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법인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서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조치는 이사회 회의에서 승인받은 법인의 조치와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에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참석자들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정족수가 채워질 때까지 회의를 휴회할 수 있다.
- 5항. **임시 회의.** 이사회의 임시 회의는 개체교회의 공동의회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열릴 수 있다. 임시 회의는 당회의 요청이나 이사장 혹은 부이사장의 요청, 당시 재직 중인 이사들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 6항. **권한과 권위.** 이사회는 법인의 업무를 수행 할 권한과 권위를 가지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임원이나 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 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고용된 직원들의 직무를 규정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없이 법인의 임명된 임원이나 대리인을 해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임원의 부재시 당분간 그 임원의 권한과 직무를 다른 임원이나 이사에게 이임할 수 있다
- 7항. **집행위원회.** 이사회의 임원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회의 사이에 법인의 안전을 처리함에 있어 이사회의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을 행사한다. 이사회가 법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을 포함한 별도의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제 5 조
구성원들의 회의

- 1항. **연례 회의.** 법인 구성원들은 연례적으로 회의를 가져야 한다.
- 2항. **장소와 시간.** 회의는 교회의 공동의회와 같은 장소와 시간 또는 그 직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민법에 허용되어 있는 한, 교회 업무와 법인 업무 둘 다 같은 공동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규례서 G-1.0503). 개체교회의 정기 공동의회나 임시 공동의회가 법인의 회의가 되어야 하며, 법인에 해당하는 안전을 다룰 수 있다.

[참고: 이 항은 법인의 회의와 공동의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선호한다.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회의 병행을 금지할 수도 있다. 변호사가 주 법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주가 회의 병행을 금지한다면, 이 항과는 다른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

3항. **회의 공지.** 법인 구성원이 모이는 모든 회의 공지는 개체교회 회의 공지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참조 *규례서* G--1.05 및 G-1.0502).

4항. **회의 진행 요건.** 이사회 회의는 개체교회 회의 진행 요건과 미국장로교 헌법 조항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참조 *규례서* G-1.0503). 이러한 요구 사항 및 조항 외에도 추가로 내규는 법인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제 6 조 임원들

1 항. **임원.** 이사회는 매년 이사를 선출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인의 회장을 선출해야 하며, 때로 한 명 이상의 부회장, 부서기, 부회계를 선출 할 수 있다. 당회 서기는 법인의 서기로 섬겨야 한다. 당회에 의해 선출된 회계는 법인의 회계로 섬겨야 한다. (참조 *규례서* G- 3.0205). 회장과 서기를 제외하고 한 사람이 두가지 임원직을 겸할 수 있다. 이사회는 또한 법인의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임원 및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법인 정관 제 10 조).

[참고: 이는 법인 임원 선출시 권장되는 구성 및 절차이다. 당신의 교회는 다른 구성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개체교회의 회계에 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례서* G-3.0205를 참조하고 당회 서기의 직무에 대해서는 *규례서* G-3.0104를 참조하라.]

2항.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일 (1)년 또는 각 후임자가 선정 될 때까지이다.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 임원은 이사회 회의에서든지 재직 중인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 투표로 직무에서 해임 될 수 있다. 이사회는 선출직에 대해 여타 이유로 발생한 공석을 채울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갖는다.

제 3 절. **권한과 직무** 법인의 임원은 일반적으로 이사들의 통제하에 각자의 임원직에 관련된 법인의 자산 및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지며 수시로 이사회가 부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원들이 취한 조치들은 교회의 당회나 집사회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모든 조치는 미국 장로교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본 항, 본 내규 및 법인 정관에 따라, 임원은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직무를 가진다:

A. 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법인과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2) 각 위원회의 활동을 이사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이사를 임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시, 승인 또는 요구에 따른 임명을 한다; (3) 법인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종류와 특성에 맞는 문서를 작성한다; (4) 준거법, 본 내규 및 법인 정관의 지침과 요건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5) 일반적으로 회장직에 속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6) 이사회가 수시로 부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B. 부회장(들)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회장의 직무 수행을 지원한다; (2) 회장의 부재 또는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 일반적으로 부회장직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4) 이사회가 수시로 부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C. 서기(당회 서기)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미국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한다 (참조 *규례서* G-3.0104); (2) 이사회에 모든 투표를 기록한다; (3) 법인 직인의 관리자가 되어 법인을 대표하여 모든 문서를 직인으로 봉인한다; (4) 일반적으로 서기직에 속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5) 이사회가 수시로 부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D. 회계 (당회에 의해 선출 됨)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미국 장로교 헌법에 명시된 직무를 법인을 위해 수행한다 (참조 *규례서* G-3.0205); (2) 다른 사람의 신탁 관리에 명시적으로 할당 된 자금을 제외한 모든 자금과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을 진다; (3)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 및 기타 재정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을 진다. (4) 모든 금전, 어음, 수표를 교회나 법인의 명의로, 또는 교회나 법인의 대변으로 기입하여 이사회가 지정한 은행이나 예탁 기관에 예치한다; (5) 일반적으로 회계직에 속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6) 이사회가 수시로 부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E. 부서기는 이사회에 따라 부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F. 부회계는 이사회에 따라 부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

[참고: 이는 법인 임원의 권한과 직무에 대한 권장 구성과 목록이다. 당신의 교회는 다른 구성과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또는 열거된 이 권한과 직무를 선택하지 않고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구성과 절차를 만들 수 있다. 개체교회의 회계에 대한 요건 (*규례서* G-3.0205)과 당회 서기의 요건(*규례서* G-3.0104)을 항상 염두에 두라.]

4항. **수표, 채권, 어음, 기타.** 이사회는 수시로 환어음, 채권, 어음, 수표, 수락서, 의무 사항 및 기타 협상 서류 또는 기타 지불 수단의 서명 또는 배서하는 방식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법인을 대표하여 상기의 것들을 작성하고 사인하고 승인할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임원(들), 대리인(들)을 지정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 연도; 직인; 사무실

1 항. **회계 연도.** 법인의 회계 연도는 _____ 여야 한다. [12 개월 기간을 선택하라. 많은 교회 법인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달력상의 연도를 선택한다. 어떤 교회들은 7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선택한다. 회계에 가장 적합한 12개월 기간을 선택해야 한다.]

2항. **직인.**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 직인을 제공해야 한다.

3항. **사무실.** 법인의 주 사무실과 우편 주소는 _____ (개체교회 주소)이다.

제 8 조 개정

법인의 정관은 법인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 투표에 의해 수정 또는 추가되거나 새로운 정관을 채택할 수 있다; 단, 정관은 항상 모든 면에서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 (*규례서*G-4.0101, G-4.0102, G-4.0203; 정관 제 4, 5, 6, 11 조).

[참고: 정관 개정 시 주 법이 다른 개정 절차를 요구하는지 변호사가 판단해야 한다]

제 9 조 이사 및 임원의 면책권

법인의 이어나 임원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재판, 소송 또는 절차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으로부터 면책을 받아야 한다(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해당인이 이사 또는 임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 그러한 재판, 소송 또는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으로 최종 판결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앞에 기술한 면책권은 이어나 임원이 법률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는 다른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 10 조 해산

만일 개체교회가 소속된 노회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산되거나, 교인의 감소, 사역 포기, 기타 사유로 인해 소멸된 경우,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부동산과 동산 모두)은 미국장로교 헌법에 따라 미국장로교 _____ (노회명) 노회의 자산으로 귀속된다. 상기 노회는 미국 국세청법 제 501(c)(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법인의 자산이 노회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 자산은 노회가 지시, 제한, 지정하는 용도, 목적, 신탁을 위해 보유, 사용, 적용되어야 하며, 미국장로교 헌법에 부합하게 노회가 지시한 경우 그 자산을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규례서 G-4.0205, G-3.0301; 정관 제 17 조).

제 4 편 - 저작권 및 상표

I. 저작권

A. 저작권은 무엇인가?

저작권은 연방법에 따른 재산권으로서, 인지하거나 복제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자의 원본 작품을 보호한다. 저작물에는 문학 저작물, 가사를 포함한 음악 저작물, 음악을 포함한 극 저작물, 무언극 및 안무 저작물, 그림, 그래픽 및 조각 저작물,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 사운드 녹음, 건축 저작물 등이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 가사, 음악 및 비디오도 포함된다.

연방법은 아이디어, 절차, 과정, 시스템, 작동 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은 보호하지 않는다.

B. 저작권 소유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의 소유자는 피고용인나 독립 계약자가 '고용되어 만든 저작물(a work made for hire)'이 아닌 한, 고정된 형태로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이다. 피고용인이 만든 저작물은 고용인의 저작권의 소유자가 된다. 독립 계약자가 고용되어 만든 저작물인 경우,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를 고용한 사람 또는 회사가 저작권 소유자이다.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할 배타적 권리가 있다.

- 사본이나 음반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2차적 저작물은 하나 이상의 기존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을 말하며, 예를 들어 기존 도서의 업데이트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 저작물의 사본 또는 음반을 판매 또는 기타 소유권 이전, 임대 또는 대여를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 문학, 음악, 연극, 안무, 무언극,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경우;
- 문학, 음악, 연극, 안무, 무언극,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 작품의 이미지 포함)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경우; 그리고
- 사운드 레코딩의 경우,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는 경우.

C. 종교 예배에 있어서 저작권 면제

미국 저작권법(17 U.S. Code § 110(3))에 포함된 종교 예배에 있어서의 면제는 "예배당 또는 기타 종교 집회에서의 예배 과정에서 극이 아닌 문학 또는 음악 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의 극 음악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제해 준다. 예를 들면 이 면제 덕분에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도 회중이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거나 목사가 설교 중에 시를 낭송할 수 있다.

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 찬송가의 음악 페이지를 복사하거나 악보를 복사하거나 교회 예배를 오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로 녹화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종교 예배에 대한 면제는 음악 복사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포함된 교회 예배의 일부를 오디오 또는 비디오로 녹화하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면제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 포함된 예배의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인터넷을 통해 전송("스트리밍"이라고도 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교회는 예배 중에 저작물의 공연을 녹화하고 전송하기 위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D. 음악 복제

1976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는 음악 작품을 복제하거나 재생산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교회가 악보나 찬송가를 구입하는 경우, 단지 이를 구입했다고 해서 찬송가의 악보나 노래를 복사하거나 슬라이드로 만드는 것이 허가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음악 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적용된다. 유일한 예외는 (1) 자유이용 저작물 음악(더 이상 저작권이 없는 음악)은 복사할 수 있으며, (2) 교회가 이미 구입한 사본을 임박한 공연에 사용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서는 음악 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단, 적절한 시기에 교회는 기존에 구입한 사본을 구입한 다른 사본으로 대체해야 한다. *교회를 위한 저작권법 필수 가이드를 참조하라.* 이 훌륭한 자료는 Christianity Today (800-222-1840) 또는 인터넷에서 \$49.95에 구입할 수 있다. 자유이용 저작물 음악은 저작권 보호가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으로 보호받은 적이 없는 음악이다. 일반적으로 1923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서 출판된 음악은 자유이용 저작물에 속한다. 이는 악보와 가사 모두에 적용된다.

저작권 표시 ©가 없다고 해서 저작물이 자유이용 저작물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로교 찬송가*에서는 각 찬송가의 첫 페이지 하단을 보면 저작권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다.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소유권 정보가 없으면 해당 찬송가는 자유이용 저작물에 속하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페이지 하단에 저작권 소유권이 표시되어 있으면 해당 저작물은 자유이용 저작물이 아니므로, 복사 또는 녹화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 *장로교 찬송가에 수록된 다양한 찬송가의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로교 출판국의 저작권 및 사용권 관리자인 로빈 하웰(rhowell@presbypub.com)에게 문의하라.*

또한 저작권 소유자 또는 공인 배포자의 승인 없이 인터넷에서 음악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은 무단 복제물이 되므로 저작권 위반에 해당한다. 컴퓨터들이 있는 곳에 이러한 내용을 써서 공지하고, 직원 지침서의 인터넷 정책 섹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E. 종교 예배에서의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 2차적 저작물 작성(변경), 사본 배포, 공개 공연 및 공개 전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종교 예배에서의 면제에 따라, 예배 중에 회중과 합창단이 저작권이 있는 찬송가를 공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공연의 녹화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나 라이선스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라이브 공연을 녹화하거나 전송(인터넷 "스트리밍" 포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교회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녹음하려는 경우, 리처드 R. 해머의 *교회를 위한 저작권법 필수 가이드*에 명시된 여러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 사용을 피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이 연주될 때 녹음 장치를 끄거나; 교회 합창단이 이전에 불렀던 사전 녹음된 자유이용 저작물 음악 작품을 "스플라이스 인"하거나;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취득하거나; "포괄적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포함된다.(강제실시 :특허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에 대한 제약을 말함. 주로 정부가 강제실시권 발동함. -역주)

강제 실시권 절차는 번거로우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포괄적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문의하라.

-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of Portland, Oregon; (503) 257-2230; (800) 234-2446; 웹 사이트 : <https://us.ccli.com/>.
- 테네시 주 브렌트 우드에 소재한 EMI Christian Music Publishing (이전 Sparrow Corporation); (615) 371-4300.
- 기독교 저작권 솔루션; (855) 576-5837; 웹 사이트 : <https://christiancopyrightsolutions.com> .
- Christian Video Licensing International ; 웹 사이트 : <https://us.cvli.com>.
- 그리고 다른 정보처도 있을 것이다.

위의 업체들은 포괄적 라이선스, 수수료 및 레퍼토리의 노래 목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포괄적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목적을 위의 업체에 명확하게 전달하라. (예 :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녹화하고 테이프를 복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스트리밍하는 등). 만들고자 하는 음악의 모든 사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라이선스 회사에 전달하여 라이선스가 의도된 모든 용도에 적용되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라이선스 비용이 교회에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녹음하지 않거나, 녹음할 서비스에 저작권이 없는 음악만 사용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녹음기를 멈추거나 음소거하고, 저작권이 없는 음악을 잠시 끼워 넣을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저작권이 없는(자유이용 저작물인) 음악을 녹음하거나 복사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경우에 따라 교회는 예배 중에 찬송가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방송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교회가 찬송가를 구입할 때 프로젝터용 슬라이드를 만들 권리는 교회에 주어지지 **않는다**. 저작권 소유자가 이러한 유형의 사본을 만들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교회가 이러한 종류의 사본을 만들려면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거나 그러한 사용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심각하다. 이는 상당한 민사 피해, 금지 명령 및/또는 형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의적인 침해는 최대 \$ 100,000의 법정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침해자는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회사도 있다. 이러한 회사에는 무단 사용을 발견하고 라이선스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직원이 있으므로 허가나 라이선스 없이 무단 사용을 진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다.

F. 동영상 상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작권 소유자는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DVD 및 비디오 테이프의 공개 공연 또는 상영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사진 녹화된 DVD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개인용, 가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가정 내에서 시청하기 위해 비디오를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상점 또는 온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공개 상영(예: 주일 예배, 청소년 그룹, 소규모 교회 그룹 모임 또는 수련회에서 비디오 시청)을 위한 라이선스가 부여되지 않는다. 특정 종교 동영상 배포자는 공공장소에서의 상영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동영상에 '가정 내 시청용'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공공장소에서의 상영은 허가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회 및 기타 사역 단체는 동영상을 사용하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거나, '공공장소 상영권'이 있는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자유이용 저작물을 상영함으로써 미국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다.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교실 사용에서의 면제(17 U.S.C. §110(1))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lib.umn.edu/copyright/limitations#classroomuse> 을 참조하기 바란다.

G. 사진 또는 그래픽 전시

시각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든 없든, 이 작품은 보호받을 수 있다. Facebook, Twitter, Flickr와 같은 '공개' 소셜 사이트의 사진도 해당 예술 작품을 만든 사람의 소유이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사용하려면 교회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선택해야 한다. 회가 웹사이트나 뉴스레터에 사용하기 위해 스톡 사진을 구매하는 경우, 라이선스 조건에 맞는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는 사진과 충분히 구별되는, 교회 직원이 직접 촬영한 원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개인 사진 촬영에 관하여.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장소 (공원, 거리, 콘서트, 박람회, 공개 교회 모임 또는 공개 모임)에서 개인 사진을 찍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 반면에, 사적인 장소 (개인실, 병원, 잠재적으로 사적인 사업장 내부)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초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평판을 손상시키는 사진을 게시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유될 사진에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 서면으로 허락을 요청하거나 사진 사용 동의를 작성하여 사람들이 사진에 출연하는 것을 허락할 때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다.

H. 글 작품 사용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글로 된 작품(시, 서적 등)을 인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송이 걸리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회는 교회 신문, 뉴스레터, 주보 등에 이러한 자료를 사용하기 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I. "공정 사용(Fair Use)"이란 무엇인가?

"연구 또는 개인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 저작물의 작은 일부를 복사할 수 있다. 교육 기관, 기록 보관소, 도서관 및 박물관에도 특정 예외가 적용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회중 예배 활동은 저작권 자료의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J. 기타 저작권에 대한 자료

저작권법에 대한 교회 가이드 외에도 온라인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Church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http://www.cmpamusic.org/html/main.isx>) (일반적인 저작권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 저작권청 (<http://www.copyright.gov/>)

아우크스부르크 포트리스 저작권 및 허가(<http://www.augsburgfortress.org/copyrights/>)(미국 북음주의 루터교회의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저작권법 안내)

The Motion Picture Licensing Corporation (<http://www.mplc.com/>)(동영상 사용에 관한 정보. 특히 FAQ 섹션에 있는 질문과 답변을 참조하십시오.)

K. 인터넷 및 기타 전자 매체 저작권 문제

인터넷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즉시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에는 인쇄물이나 방송에서의 의사 소통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1. 웹 페이지

웹 페이지 소유자는 자신의 웹 페이지에 게시된 저작권이 있는 정보에 저작권 고지를 표시해야 한다. 만일 웹 페이지 소유자가 사전 허가 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올려 놓는다면, 제3자가 게시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웹 페이지 소유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제3자가 웹 페이지에 정보를 업로드하도록 허용하는 웹 페이지 소유자는 웹 페이지에 제3자가 업로드한 콘텐츠 또는 정보에 대해 소유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3자는 저작권이 있는 정보를 웹 사이트에 업로드해서는 안 된다는 고지문을 웹 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러한 고지문은 웹 페이지 소유자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 있다.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작권 소유자의 라이선스 또는 허가 없이 복사할 수 없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복사"가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 한 대의 컴퓨터에만 설치할 수 있다. 구매자에게 여러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이선스를 주의 깊게 읽어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라이선스가 허용하지 않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두 가지 이유로 대여해서는 안 된다: (1) 대여는 저작권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배포 형태이며, (2) 라이선스 없는 대여자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복사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정한다고 해서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개정은 2차 저작물의 생성으로 이어지며,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수정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저작권 소유자만이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다른 매체에서 CD-ROM으로 전송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한 CD-ROM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3. 인터넷에서 업로드 및 다운로드

교회와 기타 조직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퍼블리셔가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SA")이라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기관의 유일한 목적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찾아 삭제하고 해적들을 체포하는 것이다. 미국 법률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BSA는 전 세계에 35개의 핫라인을 운영하며 때로는 연방수사국 및 미국 법무부와 협력하여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BSA는 무단 사용자로부터 금전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합의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삭제, 대체 사본 구매, 소프트웨어 정책 개발에 대한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 BSA 조사의 대부분은 불만을 품은 직원의 전화와 컴퓨터 컨설턴트의 제보로 시작된다. BSA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그들의 주장을 말할 기회를 주되, 컴퓨터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한 후 대응해야 한다.

교회와 중간 공의회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감사를 실시하여 모든 컴퓨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 유효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지정된 직원만 고용주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사진 포함)를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하는 것은 무단 복제에 해당한다. 이메일을 통해 제 3 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림과 게임에는 저작권이 없으며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각 사이트의 이용 약관 및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라.

L. 도메인 이름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는 인터넷 주소로 사용할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고 등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First Presbyterian of Anytown.org" 처럼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InterNIC(<http://www.internic.net>)와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http://www.icann.org>)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도메인 이름의 "무단 점유자"라고도 하는 업자들이 최소 100달러만 지불하면, 교회 또는 노회의 이름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등록한 후에는, 이들이 교회나 노회에 도메인 이름을 팔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기업은 도메인 이름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 기업은 상표 및 상호 침해에 근거하여 이러한 무단 점유자의 등록에 이의제기를 하기도 한다.

무단 점유자가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등록 상표(registered trademark)인 경우 등록기관의 분쟁 해결 절차 또는 법원 소송을 통해 도메인 이름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승인된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자의 목록은 이 웹 사이트 (<http://www.icann.org/en/dndr/udrp/approved-providers.htm>)를 참조하라. 도메인 이름 침해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메인 이름을 선택하고 가장 먼저 등록하는 것이 좋다. 도메인 선점 관련 투기 방지법(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은 고유 상표 또는 유명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는 악의적인 등록 및 영리 행위에 대한 소송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른 구제책에는 금지 명령 및 손해가 포함된다. 이 분야의 법률은 도메인 이름 등록 기관 및 분쟁 정책처럼 계속 발전하고 있다. InterNIC(<http://www.internic.net>)와 인터넷 주소 관리기구(<http://www.icann.org>)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다.

II. 상표

A. 상표는 무엇인가?

상표는 대중에게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고유한 단어와 기호 혹은 이들의 조합을 뜻한다. 이러한 기호는 고유한 단어(또는 문구), 디자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주 및/또는 연방 차원에서 등록되거나 관습법에 따라 미등록 상태로 사용될 수 있다. 연방에 등록된 유명한 상표의 예로는 청량음료에 대한 "Coca-Cola®"가 있다.

상표를 개발할 때에, 선택한 상표가 더 자의적이고 기발할수록 좋다. 구분되는 상표, 예를 들어 복사기의 경우 "Xerox®"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설명적인 것보다 더 낫다.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는 것이 상표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상표를 선택한 후에는 변호사와 함께 상표 검색을 설계하고, 변호사 또는 상표 검색 회사에 의뢰하여 상표 검색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여러분과 협력하여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와 등록할 경우 주 정부 차원에서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인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해당 표지를 상표(trademark) 또는 서비스표(service mark)로 일관되게 사용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코카콜라" 청량음료 또는 "코카콜라" 브랜드 청량음료와 같이, 일반적인 용어 또는 "브랜드"라는 단어와 함께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아스피린"이라는 용어의 경우처럼, 일반적인 용어가 됨으로써 상표를 잃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예방 조치이다. 상표를 사용할 때는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공지를 포함해야 한다. 연방 등록 상표에는 다음 고지 사항 중 하나가 표시되어야 한다.

- 원으로 둘러싸인 문자 R : ®
- Reg. US Pat. & Tm. Off.
- Registered in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연방 등록을 유지하려면 등록 후 5년째 되는 해에 사용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표가 취소된다. 또한, 또한 이의 제기 불능 진술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 진술서를 제출하면, 해당 상표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이는 해당 등록이 등록자의 소유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며, 특정 경우에 해당 상표가 공격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등록은 등록 후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등록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표를 침해와 가치 저하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상표의 무단 사용을 막지 않으면, 상표를 방치하는 것이 되며, 상표를 사용할 독점적 권리가 상실 될 수 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상표를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다. 타인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항상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표 소유자로부터 상표의 무단 사용에 대한 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대응하기 전에 변호사에게 문의하라.

B. 미국장로교 이름의 적용 및 사용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라는 단어는 개별 교회, 중간 공의회,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체 또는 미국장로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의 관리를 위해 만든 기타 조직체를 제외하고는, 상호 또는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업, 회사 또는 조직의 이름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자산"이라는 용어에는 토지 및 토지에 부수되는 권리 외에도 많은 요소 또는 아이디어가 포함된다. 부정경쟁법(The law of unfair competition)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명칭 사용권은 도용 및 오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귀중한 재산권이라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명칭의 독점적 사용권은 해당 명칭의 이전 사용 이력, 등록 및 통지에 관한 법적 조항의 준수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에 의해 성립될 수 있다.

권한이 없는 개인이나 단체가 "미국장로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정 경쟁으로 알려진 법의 영역에 속한다. 기만하거나 혼동을 주려는 방식으로 교회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인 구제책은 일반적으로 위반 당사자(또는 당사자들)의 이름 무단 사용을 계속 금지하는 금지 명령 및/또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소하는 사람은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해 제 3자가 혼동을 일으키거나 기만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때때로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다른 교회가 같은 지역사회에 설립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교인이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뿐 아니라, 유언과 유증과 관련해서도 이를 받을 교회가 어디인지 모호하게 만들어 혼동을 야기한다. "장로교"라는 용어는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여러 교단이 사용한다. 각 교단은 혼동을 피하고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 몇 가지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라는 용어는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와 구별할 수 있다. 지역 교회 간판, 레터헤드 등에 교단명을 구분하여 표시하면 잠재적인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미국장로교"라는 용어가 교회의 공식 조직이 아닌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잘못 사용되는 경우를 알게 되면 법무팀의 마이크 커크(Mike Kirk)에게 (502) 569-5390번으로 문의하라. 법무팀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목사나 노회 임원이 미국장로교 명칭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호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단계가 된다. 만일 이러한 단계가 별로 성과가 없다면, 다음 단계는 명칭을 잘못 사용하는 이(상표 침해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요청되는 구제 조치는 권한이 없는 조직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적인 금지 명령이 될 것이다. "미국장로교" 명칭의 오용을 금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는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이 맡아서 한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교단을 알고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미국장로교"라는 용어에 대한 교단의 독점적 권리가 손상될 수 있다.

C. 미국장로교 로고



미국장로교의 로고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 상표이다. 또한 이 로고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등록되어 있다. 미국장로교 로고는 상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본 구성 요소는 십자가, 성경, 십자가의 윗부분에 내려 오는 비둘기, 십자가의 아랫 부분 양쪽에 있는 불꽃이다. 교단의 이름인 미국장로교가 이 상징들을 둘러 싸고 있다.

이 로고는 제197회 총회 (1985)에서 승인되었다. 각 교회와 공의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와 공의회는 다른 사람에게 로고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른 모든 조직, 단체 및 회원은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 소속)로부터 로고 사용에 대한 사전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아래 연락처 정보 참조)

물론, 교회나 공의회는 그 로고가 공의회 핵심 기능에 사용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 교회 문구 및 출판물에 인쇄
- 교회 표지판
- 교회 운동팀용 셔츠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품목을 제작하는 공급업체가 자체 목적으로 로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애크미 프린팅이 로고를 사용하여 제일 장로교를 위한 티셔츠 50 장을 생산한다면, 그 사용은 1985 년 총회 조치에 의해 승인된 것이다. 이 업체가 다른 셔츠에 로고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법무팀 (행정 서비스 그룹 소속)의 사전 허가 없다면, 저작권 위반이다.

미국장로교 로고 사용 승인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하는데, 이 지침은 총회 사무국에 의해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

1. 문구, 간판, 배너 등에 사용하기 위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볼의 디자인과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해서는 안 된다. 색상은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이 로고는 "미국장로교"라는 단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3. 기호에서 색상 사용은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 십자가, 성구 및 비둘기 부분에는 감청색 또는 금색을, 심볼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라는 단어에는 금색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
 - 전례 색상은 전체 로고를 한 가지 색깔로 칠하는데, 시기별 색상은 다음과 같다: 대림절과 사순절에는 보라색, 성 금요일과 성령 강림절에는 빨간색, 성령 강림절 이후 일요일에는 녹색이다.
 - 기타 색상 및 색상 조합은 OG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로고는 어떤 유형의 동작과 함께 묘사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비디오나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로고가 회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서는 안된다.
5. 로고를 사용할 때마다 법정 고지(동그라미 안의 "R", ®)를 표시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정 고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표 등록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 원으로 둘러싸인 문자 R : ®
 - Reg. US Pat. & Tm. Off.
 - Registered in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따라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나 교회 간판에 법정 고지를 표시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치가 아닌 반면, 보석의 뒷면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곳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적절한 사용, 방치, 가치 저하로 인해 상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려면, 로고는 항상 온전히 원래의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상표 등록 고지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고지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로고가 표시된 출판물의 표지 안쪽에 저작권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과 같은 어구로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로고는 미국장로교의 독점 재산이며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되어 있다. 이 로고는 미국장로교(주소: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 A Corporation)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

또한 무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법무팀(Mike Kirk 502-569-5390)에 연락하거나 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로고 사용 샘플을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에 전달하여 알려야 한다.

교회나 협의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로고를 사용하려면 미국장로교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 또는 소매 환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각 디자인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완성된 제품을 기준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된 제품의 샘플을 법무 서비스(행정 서비스 그룹)에 보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나 로고 사용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락하라:

법무팀
 행정 서비스 그룹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안드레이 야노비치(Andrej Ajanovic)
 502-569-5043

D. 미국장로교 로고 사용 허가 요청



1. 상업적 사용

미국장로교 로고는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의 등록 상표이다. 이 로고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먼저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정확성

상표의 모든 사용은 디자인, 비율 및 스타일에서 로고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허가 요청 양식(부록 E 참조)을 작성하여 법무 서비스(행정 서비스 그룹)로 보내야 한다. 이 요청서와 함께 제품 샘플도 보내야 한다. 보낼 곳:

미국장로교, A-코어퍼레이션
 행정 서비스 그룹
 법무팀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담당자: Andrej Ajanovic
 502-569-5043

3. 미국장로교 로고 사용 허가 신청을 위한 지침

다음은 허가 요청을 완료하기 위한 지침이다: 명시된 바와 같이, 작성된 요청서는 미국장로교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에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주소는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Y 40202, 담당자: Andrej Ajanovic이다. 갱신 요청인 경우 작성한 요청서 원본 사본을 보내주거나, 사본이 없는 경우 다른 요청서를 작성하고, 질문 #7에 처음 허가를 받은 시기를 알려주어야 한다.

4. 질문에 대한 설명 :

- a. 귀하의 이름, 회사 이름 (있는 경우) 및 주소를 표기하라.
- b. 로고 사용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석 핀, 옷 등)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쓰라. 또한 제품의 마케팅 또는 판매 방법을 설명하라. (예: 지역 장로교회에 판매, 컨퍼런스용으로 제작 등)
- c. 제품 샘플이 있으면 동봉하고 #3에 동봉했음을 표시하라. 샘플이 없는 경우, 로고의 무결성과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법무팀(행정 서비스 그룹)에서 디자인 증명을 받아야 한다.

 실제 제품이 없는 경우 제품의 외관을 설명하라. 예를 들어, 보석 핀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료와 치수를 제공하라. (샘플이 없으면 스케치를 동봉). 의복의 경우, 특정 의복 품목을 설명하고 디자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라. (샘플이 없으면 스케치를 동봉).
- d.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를 기술하라.
- e. 개별 품목 당 판매 가격을 기술하라.
- f. 이 제품의 생산을 요청한 미국장로교 공의회 또는 기관의 이름을 쓰라. 예를 들어, 지역 교회, 노회, 기관 등. 이 요청서를 여러분에게 준 개인의 이름을 적으라. 그러한 승인이 직접적이지 않다면, 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설명하라.
- g. 갱신의 경우, 요청서 원본과 갱신을 요청한다는 메모를 함께 보낼 수 있다. 원래 요청서가 없는 경우 이 양식을 다시 작성하고 원래 라이선스가 부여된 날짜를 포함하기 바란다. 최초 요청 당시와 이름이 변경된 경우 알려야 한다.

라이선스의 일부로 샘플 제품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생산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실제 제품을 당사에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라이선스가 부여되는 경우, 귀하가 생산하는 제품이 요청에 명시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가 생산하는 실제 제품이 요청서에 제공한 샘플 또는 설명과 크게 다를 경우, 귀하는 새로운 요청서 또는 샘플을 당사에 제공해야 한다. 질문이 있으시면, 안드레이 아야노비치(Andrej Ajanovic)에게 502-569-5043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라.

5. 미국장로교 로고 사용에 대한 지침

미국장로교 로고 사용 승인은 다음 지침을 준수해야하는데, 이 지침은 총회 사무국에 의해 수시로 수정될 수 있다 :

- a. 문구, 간판, 배너 등에 사용하기 위해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볼의 디자인과 비율을 어떤 방식으로든 변경해서는 안 된다. 색상은 아래에 명시된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 b. 이 로고는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라는 단어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c. 기호에서 색상 사용은 다음과 같이 허용된다:
 - 십자가는 감청색이나 금색, 성경과 비둘기는 금색으로, 상징을 둘러싼 "미국장로교"라는 문구는 금색을 사용한다.
 - 전례 색상은 전체 상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 가지 색상을 사용한다: 대림절과 사순절 에 보라색, 성 금요일과 성령 강림절에 빨간색, 성령 감림절 후 주일에는 녹색.
 - 기타 색상 및 색상 조합은 OG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d. 로고는 어떤 유형의 동작과 함께 묘사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비디오나 인터넷 웹 페이지에서 로고가 회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서는 안된다.
- e. 로고를 사용할 때마다 법정 고지(동그라미 안의 "R", ®)를 표시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정 고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다음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표 등록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

원으로 둘러싸인 문자 R : ®

Reg. US Pat. & Tm. Off.

Registered in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따라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이나 교회 간판에 법정 고지를 표시하는 것은 효율적인 조치가 아닌 반면, 보석의 뒷면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다른 곳에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부적절한 사용, 방치, 가치 저하로 인해 상표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려면, 로고는 항상 온전히 원래의 형태로 사용되어야 한다.

부록 E

미국장로교 로고 사용 허가(License) 요청서 상업적 사용

1 신청자 및 회사/조직의 이름

주소: _____

2. 로고는 어떻게 사용되며 제품 또는 서비스를 누구에게 판매될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3. 제작 또는 개발할 제품에 대한 설명

4. 얼마나 많은 수의 제품을 제작할 계획입니까?

5. 예상 판매 가격은 얼마입니까?

6. 미국장로교의 운영기구 또는 관련 단체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로고가 사용됩니까?

그렇다면, 운영 기관 또는 관련 단체와 해당 기관장/단체장의 이름

8. 갱신 요청인 경우, 처음 허가를 받은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서명 _____

제목 _____

날짜 _____

제 5 절 - 계약

이제 '5 절 계약'은 계약이란 무엇인지, 계약이 필요한 이유, 계약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존 계약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일반적인 계약 관련 문제를 다룬다. 계약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장비 구매 (컴퓨터, 오르간, 가구)
- 서비스 (페인팅, 지붕수리, 건축, 리모델링)
- 호텔이나 컨퍼런스 센터 이용

I. 계약의 정의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약속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와 위반 관련 약속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체적인 법률상의 의무로서, 법은 어떤 식으로든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계약에는 권한 있는 당사자, 주제, 법적 대가(대가성), 상호 동의, 상호 이행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계약서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유효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주제, 법적 대가, 상호 동의, 상호 이행 의무가 있는 구두 계약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종류의 계약도 있다. 만일 어떤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관할 지역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항상 최선의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서면 계약이 선호되는 이유는 계약 조건이 단순히 당사자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II. 계약의 기능

당사자 간의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각 당사자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며 향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으면, 과도한 자금이 지출되고 향후 업무 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III. 계약 유형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은 언어로 전달된 약속인 명시적 계약(예: A가 B에게 25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대가로 B의 차고에 페인트칠을 하겠다고 약속)이거나 당사자의 행위가 구속에 동의했음을 나타내는 묵시적 계약(예: A가 B의 주유소에서 자신의 차에 기름을 넣는 것. 이것은 가스 구매 및 판매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다)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교회가 접할 수 있는 계약 유형의 예이다.

1. **구매 주문서**는 사무용품, 인쇄 및 컴퓨터 장비와 같은 품목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에게 유리한) 약관이 양식에 미리 인쇄되어 있다. 기억하라: 원한다면 이 조건들을 협상할 수 있다.
2. **사례금 약정서**는 개인이 제공하는 제한된 기간의 서비스로서, 정해진 품질 기준이 없고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생성을 포함하지 않는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예로는 일회성 연설, 강의, 교육 참여, 뮤지컬 또는 기타 공연이 있다. (부록 A에 사례 관련 편지 예제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3. **독립 계약자 계약서**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된다.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개인이 수행하는 서비스가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적절하게 분류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관습법 규칙을 충족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IRS)에 따르면, "비즈니스 소유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실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급여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개인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다양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 근로자를 분류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테스트는 없다. IRS, 노동부(DOL) 및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분석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IRS의 목적에 따라 독립 계약자인지 직원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통제 정도와 독립성의 정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통제 정도와 독립성 정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는 세 가지 범주는 행동 통제, 재정 통제 및 당사자 간의 관계 유형이다. "독립 계약자(자영업자)인가 직원인가?"(<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라는 제목의 IRS 간행물에서 이 주제와 직원/독립 계약자 구분에 대한 훌륭한 지침을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노동부의 팩트 시트 "팩트 시트 13: 공정 근로 기준법(FLSA)에 따른 고용 관계"(<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13-flsa-employment-relationship>)에서도 이 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주에서는 약간 다르며 때로는 더 엄격한 직원/독립 계약자 분류 규칙 (예 : 캘리포니아의 "ABC"테스트)과 근로자 보상 규칙이 있다.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특수하고 복합적인 프로젝트
- 특정 기간이거나 단기간의 프로젝트
- 직원이 장기 휴가를 냈을 때 대신 필요한 일을 처리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

이러한 독립 계약자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몇 가지 예는 비디오 제작, 원고 작성, 컨설팅 서비스가 있다.

독립 계약자를 정규 직원으로 취급하지 말고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 계약자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참조 부록 B에 첨부된 독립 계약자 계약서 양식 샘플).

4. **전문 계약서**는 개인이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한다. 다른 형태의 계약서(예: 구매 주문서, 독립 계약자 계약서)가 당면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은 독립 계약자 계약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유형과 유사하다. (부록 C로 첨부된 회사 계약서 양식 샘플 참조).
5. **호텔 및 회의 계약서**는 회의 및 컨퍼런스를 위한 숙박시설 제공에 사용된다. 이러한 계약은 전문 계약서의 한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양식이 있다. 그러나 이 양식을 검토하고 이벤트와 공의회의 재정적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정 사항을 협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취소, 배상, 위약금 조항은 물론, 외부 장소의 객실 초과에 관한 조항, 미국 장애인법에 따른 호텔 또는 회의 센터의 책임에 관한 조항, 고액의 사전 보증금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별도의 교통편, 케이터링, 시청각 또는 주차 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정치 및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의 "하나님의 행위(불가항력)" 조항을 검토하고, 테러 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선포한 비상 사태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IV.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특정 항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당사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
2.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3. 계약이 갱신 가능한지 여부
4. 제공될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명확한 설명
5. 할부 지불 일정을 포함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 비용에 대한 명확한 표시
6. 저작권 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진술
7. 비용 환급 여부와 환급할 경우 그 수준에 대한 명확한 진술,
8. 당사자의 납세자 식별 번호 (법인의 경우 고용주 식별 번호)
9. 해지에 관한 명확한 진술
10. 제공된 보증에 관한 명확한 진술; 그리고
11. 잠재적 분쟁 해결 방법(예: 중재, 조정)에 대한 명확한 진술.

V. 기존 계약 수정

기존 계약이 있고 일부 약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에 부가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부가 조항은 수정하려는 기존 계약서를 명확하게 식별하고(일반적으로 제목과 날짜로), 수정되는 특정 조항을 명시하고, 수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정되지 않은 모든 항목이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고 명시하고,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부록 D 독립 계약자 계약서 부가조항 샘플과 부록 E 회사의 서비스 요청 부가조항 참조)

VI. 분쟁 문제

때로는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 관계가 악화되고 분쟁이 발생한다. 이 시점에서 잘 작성된 상세한 계약서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각 당사자의 의무가 무엇인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 해지할 수 있는가? 상대방에게 부분적으로 완성된 제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분쟁을 중재할 의무가 있는가? 소송에 의존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정 관할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소송은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VII. 중요한 세금 정보

과세연도 2020년부터 IRS는 지급자(여기서는 교회 또는 중앙위원회)가 한 해 동안 6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은 모든 비고용 근로자에게 양식 1099-NEC를 발행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 계약서나 사례금 약정서 경우에 발생한다. 지급자는 지급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양식 1099-NEC 사본을 독립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급자는 이 양식의 사본을 1월 31일까지 IRS에 보내야 한다. 양식 1099 및 관련 지침은 IRS 웹 사이트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99-nec>)에서 찾을 수 있다. 참고 : 1099-NEC는 법인이나 직원에 대한 지급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돈을 받는 개인이 양식 W-9(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또는 양식 W-8 BEN(원천징수 대상 외국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필요한

1099-NEC를 발행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리처드 해머의 *교회 및 성직자 세금 가이드*에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다. IRS 양식과 지침은 800-919-9835번으로 전화하거나 IRS의 양식, 지침 및 간행물 페이지(<https://www.irs.gov/forms-instruc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회 또는 중간 공의회 레터헤드) 사례금 편지 샘플 양식

(현재 날짜)

(수령인주소)

관련 사항: 사례금

안녕하십니까 __ (수령인 이름) _____,

귀하가 _____ 장로교회 (교회 이름) (이하 "교회 법인") 의
 " _____ "(참가하는 행사명)에 _____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설명, 즉, 강사, 교사 등)로 참여해주신 것에 대해서 _____ 달러
 (\$ _____)의 사례금(수령자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청구한 총 금액)을 드릴 수 있도록,
 _____, 21 (수신자가 서비스를 수행 할 날짜) 아래에 나와있는 증명서를
 작성해주십시오. 귀하의 편의를 위해 우편료가 미리 지불된 봉투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선택
 사항).

(해당되는 경우) 또한 동의한 대로 교회 법인은 이 행사와 관련된 귀하의 비용을 최대 _____
 달러(\$ _____)(수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총액)까지 상환합니다. 모든
 상환 가능한 비용은 10달러(\$1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수증과 함께 문서화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_____
 _____ (수령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무실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법인 임원의 서명 및 직책

첨부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_____ (수신자 이름)은, 사례금 약정서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했으며 완전히 이해하고 전적으로 만족하며 이 교회 법인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서명

 날짜:

독립 계약자를위한 계약 샘플

(교회 법인 이름)

주소

이 양식은 개인이 수행할 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 법인 또는 기타 사업자 단체의 서비스 계약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서가 완전히 작성되고 모든 당사자가 승인할 때까지 어떠한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날짜 이전에 수행된 모든 작업은 지불이 승인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1. 계약자 이름 및 소셜 시큐리티 번호 : _____

2. 주소 및 전화 번호 : _____

3. 무역, 사업 또는 직업 : _____

4. 기타 주요 고객 (직원으로서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 : _____

5. 계약자는 교회 법인의 직원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가(즉, 혈연 또는 혼인 관계, 사업 동료, 파트너 또는 고용 관계에 의한 관계)? _____ 그렇다면 누구와 어떤 관계인가? _____
6. 이로써 교회 법인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약관의 사본을 첨부한다. 이 사본에는 양 당사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참조용으로 본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_____
7. 교회 법인이 계약자의 근무 시간을 설정하거나, 근무 장소를 결정하거나, 서비스의 일상적인 세부 사항을 통제할 것인가? _____
8. 계약자는 _____, 21 _____ 에 작업을 시작하고
_____, 21 _____ 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9.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다. _____
10. 교회 법인은 계약자의 작업공간, 자재, 장비를 제공할 것인가? _____
만일 그렇다면 어떤 것일지 명시하라. _____

11. 교회 법인이 비용을 상환할 것인가? _____ 만일 그렇다면, 각 비용의 유형과 최대 상환 금액을 기재하라. _____

12. 교회 법인은 모든 작업을 만족스럽게 완료한 대가로 계약자에게 _____ \$ _____ 금액의 확정되고 고정된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지불된 총 보수는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여기서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금액은 다음과 지불한다 (하나만 표시):

_____ (A) 일시불로 지불 _____ 또는

_____ (B) 다음 일정에 따라 분할 지불: _____

서명

계약자 (또한 2 페이지에도 사인한다) 날짜

교회 법인 임원 날짜

제목

독립 계약자를 위한 계약 샘플 약관과 조건

계약자와 교회 법인은 계약자가 다음 약관에 따라 1페이지에 설명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해지.**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십 (1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자료, 계약자가 종료 전에 만들어낸 연구 결과, 기타 결과물을 포함하여, 완료된 작업과 진행된 현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교회 법인의 자산이 되며 계약자는 즉시 교회 법인에 전달해야 한다. 본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자에게 이전에 선지급된 모든 금액은 교회 법인에 환불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생산된 모든 서면 자료에 대한 모든 사본 및 모든 권리를 교회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취소 통지가 있는 즉시 계약자는 추가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교회 법인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 B. **계약자가 할애한 시간.**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특정 시간량은 매일 그리고 매주 다를 수 있다.
- C. **지불.** 작업 비용은 1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 D. **독립 계약자.** 교회 법인과 계약자 모두는 독립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독립 계약자이며, 교회 법인의 대리인, 직원, 파트너 또는 합작 투자자 또는 공동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계약자는 본인이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교회 법인에 어떤 방식이나 범위에서든 교회 법인을 대표하거나 교회에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교회를 구속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한다. 계약자는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법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본인 최선의 판단과 방식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교회 법인이 서비스 수행 방식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 또는 계약자 대리인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계약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이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만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교회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 계약자는 설명된 책임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1페이지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는 필요한 작업 공간, 장비, 자재 및 지원을 계약자 자체 비용으로 마련한다. 본 계약에 따라 소득 또는 사회 보장세 원천 징수에 대한 공제는 없으며, 계약자는 모든 해당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회 법인은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직원을 위해 근로자 보상 보험 또는 주 실업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계약자는 교회 법인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
- E. **기밀 정보.** 계약자는 교회 법인의 개인, 재정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활동 중에 계약자가 받은 모든 정보를 계약자가 기밀로 취급하고 다른 개인, 회사 또는 조직에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F. **면책.**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업무 및 서비스,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제공 및/또는 고용된 모든 직원(교회 법인 직원 제외)이 계약자의 근로자 보상 보험 및 일반 책임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자 또는 계약자가 고용한 사람이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조치, 소송, 소송 원인 또는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교회 법인을 면책하고 교회 법인에 손해를 입히지 않으며 교회 법인을 보호한다는 데 동의한다.

- G. **승인 및 변경.** 교회 법인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서 검토 및 승인 또는 비승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 H. **소유권(Title/Ownership)**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계약자가 교회 법인을 위해 준비하고 제작한 모든 항목의 소유권(title)은 전적으로 교회 법인의 재산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자료는 연방법에 따라 고용되어 만들어진 저작물이며, 출판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교회 법인에서 보유하며 저작권은 교회 법인에서 소유한다. 위에 적은 내용 전반에 덧붙여 교회 법인은 계약자가 준비한 모든 것들과 그로부터 비롯되고 파생된 모든 프로그램, 제품 및 파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한다. 해당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교회 법인을 위해 제작된 오디오/비디오 녹화물에 자신의 음성 및/또는 이미지가 투사되는 것을 이해하고 승인한다.
- I. **온전한 합의.** 본 계약은 본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의 온전한 이해와 합의를 나타내며 이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모든 이전 협상, 진술 및 서면을 대체한다.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글로 명시하지 않는 한, 계약의 어떠한 조항의 수정, 변경, 포기 또는 변경도 본 계약 당사자에게 유효하거나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본 계약은 아래에 명시된 모든 당사자가 서명할 때 완전히 이해되고 만족스러우며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교회 법인의 해당 임원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교회 법인에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 J. **준거법 및 재판장소.**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_____(교회법인이 위치한 주)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_____(교회법인이 위치한 도시 및 주)의 법원 절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이 약관을 읽고 동의함 :

계약자 날짜

교회 법인 임원 날짜

제목

독립 계약자를 위한 계약 샘플
업체 서비스 요청서

(교회 법인 이름)

주소

이 양식은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개인이 서비스를 계약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본 계약서가 완전히 작성되고 모든 당사자가 승인할 때까지 어떠한 작업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날짜 이전에 수행된 모든 작업은 지불이 승인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1. 회사명 _____ ("회사")
2. EIN 번호 _____
3. 주소 및 전화 번호: _____
4. 무역, 사업 또는 직업: _____
5. 기타 주요 고객: _____

6. 이로써 교회 법인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다음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 이 사본에는 양 당사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참조용으로 본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_____

7. 계약자는 _____, 21 _____ 에 작업을 시작하고
_____ , 21 _____ 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8.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수행할 것이다. _____

9. 교회 법인은 계약자의 작업공간, 자재, 장비를 제공할 것인가? _____

10 교회 법인이 비용을 상환할 것인가? _____ 만일 그렇다면, 각 비용의 유형과 최대 상환 금액을 기재하라. _____

11. 교회 법인은은 만족스럽게 완료된 모든 작업에 대해 \$ _____ 의 확정 된 비용을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지불된 총 수수료는이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비용은 제외된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나만 표시):

_____ (A) 일시불로 지불 _____ 또는

_____ (B) 다음 일정에 따라 분할 지불: _____

서명 (정자체 이름):

교회 법인

날짜

회사 (또한 2 부 서명)

날짜

이용 약관 -2/2 부

계약자와 교회 법인은 계약자가 다음 약관에 따라 1페이지에 설명된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데 동의한다.

- A. **해지.**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가 십 (10) 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종료되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자료, 계약자가 종료 전에 만들어낸 연구 결과, 기타 결과물을 포함하여, 완료된 작업과 진행된 현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교회 법인의 자산이 되며 계약자는 즉시 교회 법인에 전달해야 한다. 본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자에게 이전에 선지급된 모든 금액은 교회 법인에 환불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생산된 모든 서면 자료에 대한 모든 사본 및 모든 권리를 교회 법인에 양도해야 한다. 취소 통지가 있는 즉시 계약자는 추가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되며 교회 법인도 추가 비용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
- B. **회사가 작업하는 데 들인 시간**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와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특정 시간은 날에 따라, 그리고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C. **지불.** 작업 비용은 1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비용은 고정되어 있고 확정되었다.
- D. **독립 계약자.** 교회 법인과 계약자 모두는 독립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독립 계약자이며, 교회 법인의 대리인, 직원, 파트너 또는 합작 투자자 또는 공동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본 업체는 스스로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교회 법인에 어떤 방식이나 범위에서든 교회 법인을 대표하거나 교회에 어떤 의무를 지우거나 교회를 구속할 권한이 없음을 인정한다. 본 업체는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회 법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본인 최선의 판단과 방식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 교회 법인이 서비스 수행 방식을 통제하지 않으므로 업체 또는 업체의 직원 또는 업체 대리인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본 업체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이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만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교회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다. 어베는 설명된 책임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결정한다. 파트 1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체는 필요한 작업 공간, 장비, 자재 및 지원을 계약자 자체 비용으로 마련한다. 본 계약에 따라 소득 또는 사회 보장세 원천 징수에 대한 공제는 없으며, 계약자는 모든 해당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교회 법인은 업체 또는 업체의 직원을 위해 근로자 보상 보험 또는 주 실업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업체는 교회 법인 직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받을 자격이 없다.
- E. **기밀 정보.** 업체는 교회 법인의 개인, 재정 또는 기타 업무와 관련하여 본 계약에 따른 활동 중에 계약자가 받은 모든 정보를 계약자가 기밀로 취급하고 다른 개인, 회사 또는 조직에 공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 F. **배상 책임.** 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업무 및 서비스,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제공 및/또는 고용된 모든 직원(교회 법인 직원 제외)이 업체의 근로자 보상 보험 및 일반 책임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and general liability insurance)의 적용을 받으며, 업체 또는 업체가 고용한 사람이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근거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조치, 소송, 소송 원인 또는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교회 법인을 면책하고 교회 법인에 손해를 입히지 않으며 교회 법인을 보호한다는 데 동의한다.
- G. **승인 및 변경.** 교회 법인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서 검토 및 승인 또는 비승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 H. **소유권/소유권.** 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업체가 교회 법인을 위해 준비하고 제작한 모든 항목의 소유권(title)은 전적으로 교회 법인의 재산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자료는 연방법에 따라 고용되어 만들어진 저작물이며, 출판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교회 법인에서 보유하며 저작권은 교회 법인에서 소유한다. 위에 적은 내용

독립 계약자를 위한 계약서 샘플

부록

이 첫 번째 부록은 (날짜 기입) (월 기입), 20__ 에 이 독립 계약자 계약서에 덧붙여 졌다. 이 독립 계약자 계약서는 (날짜 기입), 20__ 에 (교회 법인의 이름을 기입) (교회 주소 삽입) (이하 "교회 법인"이라 표기)와 (개인의 이름을 기입) (개인의 주소 기입) (이하 "계약자"라고 함) 사이에 맺어졌다.

1. 교회 법인과 계약자 모두 (수정된 계약서 문단의 문단 번호번호 혹은 문자 기입)이 이 문서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부분 기입)로 수정되었음에 동의한다.

• 변경의 예 :

- 계약자는 교회 법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_____
- 계약자는 (새로운 날짜 기입)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 교회 법인은 계약자에게 추가 작업에 대해 추가금(추가 지불액 기입)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에 의해서 총 지불금액은 (계약서에 따라 지불될 새로운 총 금액을 기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기타 교회 법인과 계약자 모두 (수정된 계약서 문단의 문단 번호번호 그리고/혹은 문자 기입)이 이 문서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부분 기입)로 수정되었음에 동의한다.

3. 기타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기 명시된 날짜부터 본 제1부록을 적법하게 실행하였다.

 계약자 이름 기입
 ("계약자")

 교회 법인 이름 기입
 ("교회 법인")

 날짜:

 날짜

업체 서비스 요청-부록

부록

이 첫 번째 부록은 (날짜 기입)(월 기입), 20__ 에 이 업체계약서에 덧붙여 졌다. 이 업체 계약서는 (날짜 기입), 20__ 에 (교회 법인의 이름을 기입)(교회 주소 삽입)(이하 "교회 법인"이라 표기)와(업체의 이름을 기입)(업체의 주소 기입)(이하 "업체"라고 함) 사이에 맺어졌다.

1. 교회 법인과 업체모두 (수정된 계약서 문단의 문단 번호번호 혹은 문자 기입)이 이 문서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부분 기입)로 수정되었음에 동의한다.

• 변경의 예 :

- 업체는 교회 법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업체는 (새로운 날짜 기입)까지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 교회 법인은 업체에게 추가 작업에 대해 추가금(추가 지불액 기입)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서에 의해서 총 지불금액은 (계약서에 따라 지불될 새로운 총 금액을 기입)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기타 교회 법인과 계약자 모두(수정된 계약서 문단의 문단 번호번호 그리고/혹은 문자 기입)이 이 문서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부분 기입)로 수정되었음에 동의한다.

3. 기타

계약의 다른 모든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상기 명시된 날짜부터 본 제1부록을 적법하게 실행하였다.

 계약자 이름 삽입
 ("계약자")

 교회 법인 이름 입력
 ("교회 법인")

 날짜

 날짜

제 6 절 - 직원 고용

I. 서론

고용법은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중요해졌다. 고용 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법들이 늘어나고 기존의 법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 평등 기회위원회에 제기된 차별 혐의와 고용 관련 소송은 여전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주는 고용, 보상, 혜택, 감독, 징계 및 해고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회도 고용 분야에서 이러한 복잡한 일들로부터 완전히 예외는 아니다. 일부 법과 규정은 종교 단체 또는 종교 단체에 대한 특정 유형의 소송을 면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법들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주들의 근로자 보상법은 교회를 면제하지 않으며, 일부 주들은 장애 및 차별법에 있어서 교회를 면제하지 않는다.

불만을 품은 종교 조직의 전,현직 직원들 뿐 아니라 성직자들도 법원에 고용주, 교회, 교단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소송을 점점 더 많이 제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법원은 성직자들이 제기한 차별 및 기타 고용 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생각한다. 법원은 성직자와 교회 간의 분쟁을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이는 이러한 소송을 교회나 교단의 정치 및 교회 관할권에 얽매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대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해 왔다. 미국 수정헌법 제 1 조와 많은 주 헌법이 보호하는 것 중 하나는 법원이 교회의 내부 정치와 목회자 선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많은 교회, 공의회 및 기타 교회 기관은 직원과의 고용 관계를 설명하고 특정 유형의 일반적인 인사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인사 정책 개발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장로교 *규례서*는 고용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 조항은 물론 의무적이다. 미국장로교 인사부와 A-코어퍼레이션도 (800) 728-7228 내선 5237 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회와 공의회는 성적 비행, 성적 학대 및 성희롱을 포함한 고용 및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정책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성적 비행, 학대 및 성희롱을 다루기 위해, 제 207 회 총회 (1993)는 미국장로교 성적 비행을 다루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했는데, 이는 2010 년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총회는 각 공의회가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규례서*에 포함시켰다. 정책 및 절차는 유용한 지침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교회의 국가 기관에 대해서만 의무사항이다. 관련 자료는 총회 사무국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안전한 사역 만들기' 웹 페이지에도 있다. <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legal-resources/creating-safe-ministries/>.

결론으로, 고용법은 주마다 다르므로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해 해당 주의 지역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료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보통 주 노동부 웹 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찾을 수 있다.

II. 관련 법률

A. 연방법의 적용 범위

다양한 연방법들이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입법 권한은 일반적으로 미국 헌법의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 조항에 근거한다. 이 상거래 조항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에 관련된 조직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수의 직원을 보유한 대부분의 조직은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많은 연방법은 연방법이 적용되는 특정 수의 직원 수를 설정한다. 물론, 당신의 교회나 공의회가 지역, 주 또는 연방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차별적인 고용 행위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당신의 교회나 공의회가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하라.

다음은 필요한 수의 직원을 보유한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방 및 일부 주 법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다.

1. **1964 년 민법 (Title VII) 개정안:** 직원이 15 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성희롱은 성차별의 한 형태라는 점에 유의하라. 성별에 따른 차별에는 임신에 대한 차별도 포함된다. 이 법은 고용 평등 기회위원회 (EEOC)와 노동부에 의해 시행된다. 종교 단체의 경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채용 직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한정된 예외가 있다. 이 문제의 주요 판례에서 대법원은 종교 단체에 직원의 종교적 자격을 요구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 주 또는 연방 차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다른 보호 대상 범주(예: 인종, 연령)에 대한 차별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지원자의 종교적 신념이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인종이나 나이를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할 수 없다. 대부분의 주와 시에는 직원이 15 명 미만인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유사한 민법 조항들이 존재한다. 또한 일부 주와 시에서는 성적 지향 및 퇴역 군인과 같은 다른 보호 범주를 법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 <http://www.eeoc.gov/facts/qanda.html>.
2. **임신 차별금지법:** 이 법은 Title VII 를 개정했으며 임신한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일할 수 있다면,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녀가 의학적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되면, 그녀는 임신과 관련이 없는 의학적 이유로 일할 수 없게 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혜택 및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1967 년 고용에서의 연령 차별금지법(ADEA):** 직원이 20 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연령차별금지법(ADEA)은 일반적으로 40 세 이상의 직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이는 고용주가 40 세 이상인 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고용 조건을 차별하거나 연령에 따른 해고를 금지한다. 이 법은 고용평등 기회 위원회(EEOC)에 의해 시행된다. 대부분의 주와 일부 시에는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유사한 법들이 있으며, 이러한 법은 직원이 20 명 미만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참조 <http://www.eeoc.gov/laws/types/age.cfm>.
4. **1990 년 고령 근로자 혜택 보호법:** 직원 혜택과 관련하여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 차별금지 고용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고용평등 기회 위원회(EEOC)에 의해 시행된다. 참조 <https://www.eeoc.gov/laws/types/age.cfm>.
5. **2008 년 유전 정보 차별 금지법:** 직원이 15 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유전 정보에 근거한 고용주의 차별을 금지한다. 유전 정보는 광범위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검사와 직원의 병력 정보도 포함한다. 이 법의 위반에 대한 구제책은 Title VII 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다. 이 법은 고용평등 기회위원회(EEOC)에 의해 시행된다. 참조 <https://www.eeoc.gov/laws/types/genetic.cfm>.
6. **1970 년 산업 안전 보건법 (OSHA):**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제 시스템으로,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현재 기준은 비 종교 업무에 종사하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이다. 종교 업무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직원은 산업 안전 보건법(OSH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은 산업 안전 보건청에 의해 시행된다. 이 법은 상거래에 종사하는 단체에 적용된다 (참조, 공정한 노동 기준법에 대한 논의). 참조 <http://www.osha.gov/>.

7. **1986 년 이민 개혁 및 통제법:** 미국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불법 이민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고용된 불법 이민자 한 명당 최대 \$10,000 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구속된다. 모든 고용주(한 사람이라도)는 이 법의 서류 검증 조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차별금지 조항은 4 명 이상의 직원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고용주가 불법 이민자로 간주했지만 아님이 증명된 사람의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 법은 직원이 4 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고용주는 I-9 양식을 작성하여 새로운 직원을 고용한 후 3 일 이내에 고용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I-9 양식에 명시된 대로 영주권 카드, 여권, 운전 면허증, 사회 보장 카드, 출생 증명서 또는 시민권 서류와 같은 고용 가능 증빙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I-9 양식은 고용일로 부터 3 년 또는 고용 종료 후 1 년 동안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1980 년대에 종교계에서 이 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회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은 미국 이민국 (USCIS)에 의해 시행된다. '제 7 편: 이민' 부분의 추가 정보를 참조하라.
8. **1988 년 근로자 조정 및 재교육 통지법(WARN):** 공장 폐쇄 법안에 대한 이 통지는 대규모 해고 및 공장 폐쇄에 대한 60 일 서면 통지를 요구한다; 이 법은 직원이 100 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WARN 은 미국 지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을 통해 시행된다. 뉴욕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직원이 100 명 미만인 고용주에게도 적용되는 자체 WARN 법이 있다. 참조 <https://www.dol.gov/agencies/eta/layoffs/warn>.
9. **1990 년 미국 장애인법(ADA), 2009 년에 개정:** 직원이 15 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장애가 있는 직원에 대한 처우와 건물의 건축 요건을 함께 다룬다. 법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주에게 "과도한 어려움"과 비용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 (예: 자신 돌보기, 수작업,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 교육 및 작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장애가 있는 유자격 직원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 직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였음에도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ADA 는 해당 직원을 고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유자격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를 제공받거나 받지 않고 본질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법은 고용 평등 기회위원회 (EEOC)에 의해 시행된다. ADA 에는 교회가 직원을 채용 할 때에 종교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회가 장애인의 공공 편의시설 이용과 관련된 건물 접근성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도 있지만, 이것이 교회가 장애인 직원을 위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줄여주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2009 년에 이 법을 개정하여 원래의 취지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라. 많은 주와 시에는 직원 수가 적은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유사법이 있다. 2009 년 시행된 개정안에 대한 정보는 <https://www.eeoc.gov/disability-discrimination> 를 참조하라.
10. **1938 년 공정 근로 기준법 (1963 년 동일 임금법에 의해 개정 됨):** 이 법은 최저 임금(2009 년 7 월 24 일부터 적용된 \$ 7.25), 주당 40 시간 이상 일하는 비면제(비관리직) 직원에 대한 시간 외 수당 및 1/2 수당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8 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지만 그보다 어린 직원은 위험한 작업 및 근무 시간과 관련된 제한을 받는다는 아동 노동에 대한 규정과 최저 임금을 규정하고 있다. 1 년에 7 개월 이하로 운영되는 종교 캠프에는 한정된 예외가 적용된다.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interstate commerce)"와 관련없는 교회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많은 활동들이 이 회색지대에 속한다. 당신 지역의 고용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라. 노동부는 교회를 포함하여 이 법이 적용되는 직원이 있는 모든 기관을 점검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학교의 운영은 이 법에 의해 교회에 적용된다. 또한, 직원에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함으로써 법의 요구 사항을 회피할 수 없다. 목회자는 전문직 직원이며 시간 외 수당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노동부의 임금 및 근무 시간 부서에 의해 시행된다. 2019년 9월에 새로운 시간 외 근무 규정이 제정되었다.

<https://www.dol.gov/agencies/whd/overtime/2019/index>. 추가 정보 및 교육은 미국 노동부 웹 사이트(<http://www.dol.gov>)에서 상의하라. 많은 주들이 임금 및 근무 시간법을 가지고 있으며 최저 임금 법은 \$7.25 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참조 <https://www.dol.gov/general/topic/wages>

11. **1963년 동일 임금법:** 공정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동일 근로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동일 임금법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법은 모든 고용주에게 해당된다. 참조 <https://www.eeoc.gov/laws/statutes/epa.cfm>.
12. **1993년 가족 및 의료 휴가 법령 (2009년 개정):** 이 법은 휴가를 신청하는 년도에 20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50명 이상 고용한 민간 부문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직원은 12달 동안 12주의 무급 고용 보호 휴가(혜택은 계속 받음)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신생아 돌봄, 입양 또는 위탁 보호, 또는 심각한 건강 상태를 가진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또는 직원 자신의 심각한 건강 상태가 그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 아들, 딸 또는 부모가 현역 군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 소집으로 인해 긴급 자격을 부여받을 경우도 해당된다. 또한 군인의 배우자, 아들, 딸, 부모 또는 친척인 직원은 심각한 부상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군인을 돌보기 위해 최대 26주의 고용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추려면 직원은 직전 최소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했어야 하며, 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지로부터 75마일 이내에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에 대한 특별한 예외는 없지만, 직원이 50명 미만인 경우 연방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일부 주는 직원이 50명 미만인 고용주를 관할하는 자체적인 가족 및 의료 휴가법이 있다). 고용주의 의무는 법에 따른 휴가가 필요하다는 직원의 통지 또는 직원이 법이 보장하는 목적을 위해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발생한다. 고용주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적격 통지서를 제공해야 하며, 그 후 직원의 담당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수령해야 한다. "심각한 건강 상태"란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입원 치료 및 지속적인 치료에 적용된다. 이 법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 기준국, 임금 및 근무 시간 부서에서 집행한다. <https://www.dol.gov/agencies/whd/fmla>. 이 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법 준수를 위해 고용 전문 변호사와 협력하는 것이 좋다. 2009년 개정안에 대한 정보는 <http://www.dol.gov/whd/fmla/finalrule/factsheet.pdf> 을 참조하라.
13. **1996년 개인 책임 및 취업 기회 조정법:** 일반적으로 연방 복지 개혁이라고 하며, 모든 고용주가 해당 주 정부 기관에 신입 직원을 보고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되는 주 정부 기관은 주마다 다르다. 이 법의 한 가지 목적은 이주 및 전직을 통해 자녀 양육비 지불 의무를 회피하는 부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소규모 고용주나 종교 단체에 대한 예외는 없다. 지정된 주 정부 기관은 자녀 양육비 집행 기관 또는 주 노동 부서일 수 있다.
14. **실업:** 미국장로교가 연방 단체 세금 면제 규정에 따라 교회와 공의회는 연방 실업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개별 주 (예: 뉴욕)는 특정 비영리 단체가 연방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실업세를 부과할 수 있다. 기관들은 주 실업세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15. **근로자의 보상:** 이것은 연방법이 아닌 주 법의 문제이다. 교회에 대한 면제는 없으며 보상 범위는 특정 주 법에 따라 다르다. 주 법상 어떤 직원이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또한 보험 적용 범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교회 직원들의 산재 보상 보장에 대해 보험사 직원과 상의하라.

16. **1993 년 전국 아동 보호법:** 이 법은 주 정부가 특정 보육 제공 업체가 보육 근로자 (직원과 자원 봉사자 모두)에 대한 의무적 신원 조회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요구하지는 않음). 주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원, 학교, 주립 학교와 같은 특정 기관을 보육 제공자로 지정할 권리가 있다. 교회와 노회는 보육 제공자 지정에 관한 해당 주의 요구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전국 아동 보호법은 1999 년에 '아동 자원 봉사자 법'에 의해 개정되어 주 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아동 보호 기관으로 지정된 보육 제공자가 전국적으로 범죄자 지문 신원 조회를 주 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교회가 해당 주에서 적격기관으로 지정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변호사에게 문의하라. 모든 심사 과정에는 이점과 약점이 있다. 교회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심사 과정을 선택하라.

참고:2016 년 총회는 아동/청소년/성인 취약 계층 보호 정책 및 절차를 승인했다. 또한 *규례서*는 교회의 모든 공의회가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총회의 정책은 미국 전체 단위 기관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공의회 모델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정책은 '안전한 사역만들기 (Creating Safe Ministries)' 웹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조 <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legal-resources/creating-safe-ministries/>

17. **직원 거짓말 탐지기 보호법:** 이 법은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에 종사하는 교회에 적용될 수 있으며, 직원이나 구직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신의 교회가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에 해당되는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변호사와 상의하라.

18. **파산 차별 금지법: 파산법 제 525 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 고용주가 파산 채무자이거나 파산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는 법의 복잡한 영역이며 고용주는 과거 또는 현재 파산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고용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경우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19. **1994 년 군복무자 고용 및 재취업 권리법:** 1994 년 의회는 군복무자 고용 및 재취업 권리법(USERRA)을 제정했다. 이 연방법은 군복무에 소집된 직원에게 다양한 권리를 보장한다. 이 법은 훈련 또는 군복무를 위해 퇴사한 피고용인이 복귀시 반드시 재취업이 되어야 하며, 부재 중 또는 복귀시 특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직원의 군 복무 기간이 5 년을 초과하지 않고 불명예 제대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교회나 소규모 고용주에 대한 예외는 없다. 고용주는 법에 명시된 제한된 상황에서는 재고용 의무가 없다. 이 법은 미국 노동부 장관에 의해 시행되며 추가 조치를 위해 미국 법무장관에게 회부될 수 있다. 참조 <https://www.dol.gov/vets/programs/userra/>

총회 사무국과 협력하여, 연금국은 USERRA 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만들었다: (https://www.pensions.org/file/what-we-offer/benefits-guidance/forms-documents/Documents/userra_qa.pdf/).

B. 공지해야 하는 사항들

다음은 적용 대상 고용주가 직원에게 공지를 게시해야 하는 연방법의 목록이다. 첫째, 당신의 교회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고용주인지 확인하라. 교회나 공의회가 최소 직원 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간 상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중 상당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수정 헌법 제 1 조의 종교 자유 조항은 경우에 따라 목회자 및 핵심

종교기관 직원들을 일부 법으로 부터 면제받게 한다. 해당 고용주가 아닌 경우 다음 공지들은 게시할 필요가 없다.

- 공정 노동 기준법(최저 임금 및 시간 외 근무) (<https://www.dol.gov/general/topics/posters>)
- 고용 평등 기회(<https://www1.eeoc.gov/employers/poster.cfm>)
- 산업 안전 보건법(OSHA) (<https://www.osha.gov/Publications/poster.html>)
- 직원 거짓말 탐지기 보호법 (<https://www.dol.gov/whd/regs/compliance/posters/eppac.pdf>)
-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 (<https://www.dol.gov/whd/regs/compliance/posters/fmla.htm>)

고용 평등 기회를 제외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한 공지 포스터는 미국 노동부 지역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다. 고용 평등 기회를 다루는 포스터는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의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라. **참고:** 많은 주에 연방법이 요구하는 공지 사항이 있다. 공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라.

C. HIPAA: 건강 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관한 법률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

건강 보험의 이동과 책임에 관한 법률(HIPPA)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적용 기관'이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개인 건강 정보 보호). '적용 기관'은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지역 교회와 공의회는 HIPAA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대한 "적용 기관"이 **아니다**.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의료 정보 센터 등은 '적용 기관'이다. 예를 들어, 지역 교회나 공의회가 병원을 직접 운영한다면, 그것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이며,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비적용 대상 기관인 지역 교회가 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개에는 두 가지 범주가 있다. 하나는 교인의 건강 정보 공개이고 또 하나는 직원의 건강 정보 공개이다.

1. **교인의 건강 정보 보호.** 다시 언급하지만, 교회는 교인과 관련하여 '적용 기관'이 아니다. 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라 병원은 성직자가 열람할 수 있는 디렉토리에 이름, 일반 상태, 병실 번호 및 종교적 소속을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환자의 이름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목회자가 병원 목록에 있는 정보에 접근한 후 그 정보를 회중에 공개하는 것은 HIPAA의 개인 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인이 이러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 이후의 모든 공개는 교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 공개에 대해 교인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교회의 관행에 대한 공지를 교회 회보에 수시로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회원이 자신의 정보 공개에 반대하는 경우 교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회 후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교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우리는 형제 교인들에게 알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위로와 치유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중 기도문에 여러분의 이름과 질병에 대해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목회자에게 간단한 메모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것인가 이다. 이 문제는 당회와 논의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우리 교인인 존 스미스씨가 심각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어떤 질병 또는

상태로 입원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인 존 스미스씨가 입원했고, 그분은 교인들의 기도를 요청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나누어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하기보다는 재치와 세심함이 필요할 것이다.

2. **교회 직원의 건강 정보.** 교회는 고용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원의 건강 정보 공개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병가 후 복귀와 관련된 경우이다. 직원의 건강 정보를 요청하는 교회 고용주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직원이 서명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승인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보기에 HIPAA 를 준수해야 한다. 교회 고용주가 직원의 건강 정보를 받은 경우, 이 정보는 오로지 수집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의 인사 파일과는 별도로 안전한 기밀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도 목록은 불법인가?"를 참조하라. 교회법과 세금 보고서, Vol. XVIII, No. 2, 2003 년 3/4 월. 교회법과 세금 보고서는 Christian Ministries Resources 의 간행물이다. (800)222-1840 으로 전화하여 구독할 수 있다.

III. 고용관련 문제

A. 면접

1. 평신도

평신도를 면접하기 위한 질문들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지침은 각 질문이 지원자가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직무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지원자의 인종, 결혼 여부, 연령, 성별(임신 포함), 출신 국가, 시민권, 유전 정보 또는 장애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종교 단체는 종교에 따라 차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나 노회는 자격에 장로교인을 요구하거나 장로교인 지원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

a. 금지된 질문의 예

- 몇 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나요? (나이를 알 수 있음)
- 이력서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겠어요? (인종, 국적, 성별 또는 나이를 알 수 있음)
- 결혼하셨나요? (결혼 여부에 대한 불법적인 요구)
- 체포된 적이 있나요? (일부 인종-민족 그룹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비율로 체포되며 이 질문은 인종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인가요? (국적 차별)
- 당신은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장애인 차별)
-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장애인 차별)
-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연령 차별)
- 임신 계획이 있나요? (성차별)
- 임신 중인가요? (임신차별)
- 약물이나 알코올 문제가 있나요? (장애인 차별)

b. 허용된 질문의 예 (직업 관련)

- 해고 당하시거나 비 자발적으로 퇴직하신 적이 있나요?
- 이력서에 표시된 기간들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 채용이 되면, 귀하가 18 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나요?
- 당신은 편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일에 필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나요?
- 출장을 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차별 금지 조치 목적으로 지원자 추적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 의사 결정권자가 볼 수 없도록 분리가능한 하단의 절취선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입사 지원서에 이 정보를 요구하지 말라.

2. 목회자

민법 분야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 1 조의 보호는 청빙위원회와 목회위원회가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질 때 훨씬 많은 유연성을 부여한다. *규례서*는 청빙위원회가 인종, 민족, 성별, 결혼 여부, 연령 또는 장애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고려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F-1.0403). 모든 면접 질문은 미국장로교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청빙위원회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 목회위원회, 노회 사무실 또는 OGA 헌법 자문팀에 문의해야 한다.

물론 *규례서* 목사의 고용과 청빙에 관련된 많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예시로 *규례서* G-2.08 을 참조하라.

B. 신원 조회(Background Checks)

고용주는 채용이나 해고 때문에 고소당할 수 있다. 채용 예정자의 신원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직원이 나중에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경우 부주의한 채용 또는 태만한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지원자의 채용과 업무 시작 전에 신원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지원자가 신원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특히 아동과 함께 일할 직원의 신원 조회는 중요하다. (예: 아동 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지원자는 금해야 함), 상담원, 자금 관리(예: 횡령한 지원자는 배제될 수 있음) 또는 교회 차량 운영(예: 음주운전과 잦은 교통위반은 실격 사유가 될 수 있음)도 마찬가지이다. 지원자의 신원 조회에는 개인과 참고인에게 연락하는 것과 범죄 기록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신원 조회는 연방 공정 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른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신원 조회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몇 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다. (a) 직업 관련 조사만 한다. (b) 예비 직원으로 부터 서면 승인을 받는다. (c) 불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비 직원에게 부정적인 정보를 공개한다; (d) 예비 직원에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e) 참고인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위의 섹션 C (1) (a)의 예 참조); (f)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원 조회를 위한 일관된 절차를 마련한다. 고용주는 평판 조회(reference check)를 위해 간단한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예시 문구:

"본인은 이 동의서를 소지한 [교회 고용주 이름]의 조사자가 학교, 거주지 관리인, 전직 및 현직 고용주, 종교 단체, 사법 기관 및 본인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정보에는 학교, 거주지, 업적, 성과, 출석, 개인 기록, 징계, 범죄 유죄 판결 기록 및 피고로서 나를 포함한 모든 사법 또는 교회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본인은 이에 따라 귀하가 그러한 정보를 소지자에게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지시하고 승인한다. 본인은 이에 따라 [교회

고용주 이름] 및 기록 관리인을 포함한 개인 또는 그룹이 이 승인을 준수하거나 준수하려는 시도로 인해 언제든지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손해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이 서명된 양식의 사본은 실제 서명된 양식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일 평판 조회를 통해 얻은 정보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고용주는 이후에 직원 또는 예비 직원에게 명예 훼손 또는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역 교회와 노회는 변호사와 함께 평판 조회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신원 조회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섹션의 앞 부분에 명시된 1993 년 전국 아동 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라.

C. 목회자에 대한 신원 조회

규례서 G-2.0504 a 에 따르면 위임 목회 관계는 목사, 공동 목사, 부목사이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임기 제한을 두지 않고 위임받거나, 노회가 개체교회와 협의한 후 청빙 조건에 명시한 제한된 임기로 위임받을 수 있다.

규례서에 따라 회중은 노회 목회위원회와 협력하는 청빙위원회를 선출한다(G-2.0802). 청빙위원회가 후보자를 확정하면, 청빙 대상자들의 장점, 적합성, 가능성에 관해 노회의 자문을 받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G-2.0803). 청빙위원회는 인종, 민족, 성별, 결혼 여부, 나이, 장애에 상관없이 후보자를 고려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F-1.0403).

교회의 청빙위원회 및/또는 노회의 사역위원회는 목사의 신원조회를 할 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인 조사자는 목회위원회 및/또는 노회 총무와 상의하라.** 평판 조회 및 신원 조회를 통해 성적 비행을 포함한 이전의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리차드 해머의 *목사, 교회 및 법(Pastor, Church and Law)*은 목사를 청빙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a) 이전 비행의 성격과 심각성; (b) 이전 비행의 빈도; (c) 비행이 발생한 기간; (d) 목회자가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 (e) 모든 상담의 역량 및 효과; (f) 목사가 현재 같은 유형의 비행을 반복할 가능성; (g) 모든 증거에 근거하여, 교회나 교단이 그 목사의 청빙이 부당하다고 배심원이 결론을 내릴 경우 법적 책임의 가능성."

후보자가 성적 비행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교회 공의회는 그러한 후보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해 매우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성적 비행의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보자를 고용하면 그 후보자가 고용 후 성적 비행을 저지를 경우 교회는 중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두 가지 이유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변호사와 상의하라.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 비행의 이력이 있는 사람을 청빙함으로써 직원, 교인, 어린이 및 방문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성적 비행 이력이 있는 목사가 청빙 후 비행을 저지른 경우, 보험사는 소송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의 판결이 나와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과거의 성적 비행 이력이 있는 비 목회직 직원을 고용할 때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

IV. 직무 설명과 성과 관리

직무 설명은 직책의 필수 기능과 비 필수 기능을 정의한다. 직무 설명은 면접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면접자는 직무의 필수 기능 수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지원자가 '아니오' 라고 답한 경우, 이는 채용 제안 종결의 근거가 된다. 지원자가 '예' 라고 답했지만 이후에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경우, 이는 고용 중단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직무 설명은 직원 및 상사에게 직무 정보, 성과 평가를 위한 정보, 미국 장애인 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의 정보 (직원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필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및 직원 징계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 평신도 목회자, 음악 감독을 포함한 사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경우, 고용주인 교회는 자세하고 정확한 직무 설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무 설명은 예배 지도력, 예배 계획, 목회적 지원 및 교인 상담, 결혼 예식 및 장례식 진행, 기타 사역 기능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목회직 직원이 교회 고용주에 대해 소송을 하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할 수 있다: (1) 교회 예외 원칙이나 교회 자치 원칙. 고용주인 교회와 피고용인 사이의 분쟁에 법원이 개입할 경우, 법원이 교회 교리를 해석하고 종교적 질문을 결정해야 할 수도 있기에 법원의 개입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목회적 예외 조항. 종교 단체가 정부와 법원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목사를 선임할 권리를 제공한다.

업무 평가 적어도 매년 실시해야 한다. 감독자는 일 년 동안의 직원의 성과를 관리하고, 좋은 성과와 받아들일 수 없는 성과에 대한 직원과의 대화를 문서화 한다. 모든 문서에는 일반화 또는 가정이 아닌 사실만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 직원이 반복해서 매주 5 일 중 3 일을 지각하고 교회가 그 직원에게 반복적인 지각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한 경우, 지각 및 직원에 대한 경고를 개인 파일에 문서로 남겨야 한다. 교회가 해당 직원의 고용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파일에 있는 문서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언제 발생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다. 해고된 직원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세한 기록은 교회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방어가 될 것이다. 직원이 징계 서면 및 평가서(evauation)에 서명하도록 하면 직원이 추가적인 징계 또는 해고에 대해 갑작스럽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과 관리가 지속적인 절차인 경우 연간 인사 고과(review)의 의견 때문에 피고용인이 당황스러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업무 평가는 진실한 평가여야 한다. 업무 성과의 문제점들을 문서화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은 직원과 교회 고용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실한 평가는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을 개선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막기 위한 노력의 부족을 알리는 도구로서 중요하다.

직원들이 자신들의 성과 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가서는 검토 관리자와 직원이 서명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표시해야 하지만, 이것이 직원이 반드시 그 검토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원이 검토가 이루어 졌음을 표시하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관리자는 평가 양식에 그 사실을 기록할 수 있다.

V. 보수

연방 면세 기관으로서, 모든 장로교 운영 기관은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불합리한 보수란,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기관이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불하는 것 이상의 보수를 말한다.

정규 직원은 최소한 연방 최저 임금인 시간당 \$7.25 을 받아야 한다. 주 또는 지역이 종종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요구하는 최저 임금법을 가지고 있다. 정규 직원이 주당 40 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간 외 근무 수당과 정규 급여의 절반을 받아야 한다.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는 독립 계약자 카테고리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회와 공의회는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개별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신의 교회나 공의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일하고 있다면 그들은 피고용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노회 임원 또는 서기는 직원이다. 그들은 공의회를 위해 정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컴퓨터 컨설턴트나 웹 사이트 웹 마스터는, 특히 교회나 공의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고객이 있는 경우 독립 계약자가 될 수 있다. 다음의 자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노동부 Fact Sheet 13: 공정 근로 기준법(FLSA)에 따른 고용 관계: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13-flsa-employment-relationship>

분류 오류: <https://www.dol.gov/agencies/whd/flsa/misclassification>

VI. 해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고용 관계가 언제든지 이유 없이 고용주나 피고용인에 의해 해지될 수 있다는 의미의 임의 고용 원칙을 인정한다. 고용이 임의 고용이고 교회 또는 협의회에 직원 안내서가 있는 경우, 안내서에 이러한 임의 고용 관계를 명시하고 안내서가 고용 계약이 아니며 향후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면책 조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만일 피고용인과 고용 계약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임의" 관계를 삭제하고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피고용인의 권리는 고용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일부 주에서는 구두 및 암묵적 고용 계약을 인정한다. 이러한 주에서는 고용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아도 된다. 주 법이나 연방법을 위반하여 해고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통 직원은 연령, 성별, 인종 또는 기타 불법적인 사유로 해고될 수 없다.

직원이 "임의로" 해고될 수 있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고 문서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예: 절도, 폭력, 성과 부진), 고용주는 해고 사유를 직원에게 알리는 것이 현명하다. 해고 사유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역시 현명하다.

또한 주 법 또는 연방법에 따라 직원의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는 부당 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인종 차별에 대한 고용 평등 기회위원회(EEOC)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 해당 직원은 불만 제기로 인해 법적으로 해고될 수 없다.

목사의 사임은 서면 청빙 조건 및 규례서의 관련 조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헌법의 보호로 인해 대부분의 민사 법원은 목사가 교회 또는 노회에 제기한 소송을 심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일반적인 민법상 고용이 아니다. 미국장로교 정책과 운영 기구에 의해 정의된 교회적 관계다. 교회는 그들이 청빙한 목회자와 문제가 있을 때 노회 지도자들과 소통해야 한다.

VII. 인사관련 정책

A. 장점 및 단점

특정 주요 문제에 있어서 인사 정책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다.

- 1. 통합 서면 정보:** 정책과 안내서 또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직원들에게 고용 조건을 알리는 통합적인 방법이다. 이는 직원들에게 보상 및 복리 후생 정책을 알려준다. 이는 고용의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직원에 대한 기대와 그들의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서면 정책은 직장에서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혼란과 잘못된 정보를 피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고용주의 편협함과 그러한 문제를 보고하는 방법, 고용주가 인정하는 휴일 등이 있다.
- 2. 일관성:** 정책은 특정 상황을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예: 휴일, 근무 일정, 업무 비용 환급) 모든 직원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할 수 있다.
- 3.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진술:** 정책은 직원과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 환경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행위에 관여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 알려준다. 정책이 있음으로 인해 직원이 이러한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기 어렵게 한다 (예: 근무

시간 또는 교회 업무로 출장하는 동안 알코올 사용에 대한 정책; 성적 학대 및 성희롱). 미국 대법원 사례 (이러한 사례에 대한 논의는 G. 괴롭힘 방지 정책 참조)는 성희롱 정책과 불만 처리 절차의 존재와 전달을 매우 중요하게 한다. 그러한 정책 및 불만 처리 절차가 없다면, 고용주가 알지 못하는 성희롱에 대해 고용주가 대신 책임을 질 수 있다.

4.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정책은 교회가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직원이 고용주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음악 업계의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하여 고용주가 직원에게 고용주의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불법 파일 공유에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알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직원의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인사 정책에는 하나의 큰 단점이 있다.

조직이 정책을 채택한 후 이를 따르지 않거나 특정 직원에 대해서만 정책을 준수하는 경우, 차별에 대한 소송으로 인해 조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일부 주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사 정책을 적용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그렇지 않다. 안내서에 명확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안내서는 고용 계약이나 지속적인 고용 합의 또는 특정 보상이나 혜택에 대한 계약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안내서와 정책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이행 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감독자와 경영진에 대한 교육이다. 감독자와 임원이 조직의 인사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정책을 조직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사 정책을 고려할 때 변호사와 상의하라. 또한 여러분 지역의 다른 교회 및 운영 조직에 인사 정책이 있는지 확인하라. 이러한 정책들은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다.

B. 일반 인사 정책

각 교회와 운영 조직은 인사 정책의 채택 여부, 각 정책의 적용을 받는 대상 (평신도/성직자; 정규/시간제 직원); 정책에 포함시켜야 할 정책 유형 등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가능하면, 인사 정책과 안내서를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법이 수정되고, 새로운 법이 통과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매년 정책이나 안내서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직원 관련 문제들을 발견한다. 고용주는 안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새로운 법, 안내서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인사부와 인사위원회에서 안내서에 포함될 수 있는 논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한 파일을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인사 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채용 정책** (모집; 구인 공고; 이민; 추천; 친척 고용; 승진; "자유 의사" 고용 진술서 등)
- **급여 관리** (지급 기간, 시간 외 근무, 타임 카드 절차, 임금 배정, 성과 검토 등)
- **운영** (근무 일정 등)
- **혜택** (건강 보험; 장애; 생명 보험; 연금; 사별 휴가; 산재 보상; 사회 보장; 실업 보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휴가; 휴일; 출산 및 육아 휴직; 병가; 배심원 근무; 개인 용무; HIV/AIDS에 대한 정책; 출석계; 휴직; 가족 및 의료 휴가; 평생 교육 등)
- **업무 관련 비용 환급 정책**

- 연례 성과 검토 및 시정 조치 (평가; 업무 규칙; 징계 조치)
- 은퇴
- 해고 및 사직
- 고용법 준수 문제 (인종 및 성별 문제; 성적 학대 및 괴롭힘; 폭력; 윤리 강령; 이해 상충; 기밀 유지 등)
- 불만 처리 절차
- 직책과 근속 기간만 알려주는 **평신도 직원에 대한 중립적인 평판 조회 정책(직원의 서면 동의를 통해 전체 공개 가능)**
- 고용주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개인적 사용 (컴퓨터, 휴대폰, 소셜 네트워킹, 인터넷, 이메일)

C. 성희롱과 기타 괴롭힘 방지 정책

성희롱은 민권법 Title VII 에 따른 성차별의 한 형태이며, 연방법과 주 법에 따라 불법이다. 고용 평등 기회위원회 (EEOC)는 성희롱을 불쾌한 성적 접근, 성적 호의에 대한 요구 및 기타 성적인 언어 또는 육체적 행위로 정의한다. 만약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불리한 고용 조치를 초래하거나 그 행위에 대한 복종이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대상의 고용 조건이 되는 것, 또는 그 행위가 대상의 업무 수행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이다. 성희롱은 전통적으로 남성 상사와 여성 부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성 상사와 남성 부하 사이, 같은 성별의 상사와 부하 사이, 성별이 다른 직장 동료 사이 또는 성별이 같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성희롱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quid pro quo* 와 적대적인 환경이다. *quid pro quo*(당신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하면, 나도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의 경우 만약 직원이 실질적인 조치 (해고, 강등, 급여 손실)를 당한다면, 고용주가 괴롭힘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그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시적인 직무 행위는 없지만 직원이 원치 않는 심각한 만연한 성적 행위를 당했음을 입증하는 적대적 환경 사건에서, 고용주가 성희롱을 예방하거나 즉시 시정하기 위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원고가 이러한 예방 또는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적극적 항변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고용주는 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벨링턴 산업 대 엘러스* 와 *패러저 대 보카 레이튼 시*)를 통해서 볼 때, 피해자가 성적 비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고용주가 대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 강력한 성희롱 방지 정책을 마련한다;
- 가급적으로 직원 안내서(**employee handbook**)에 이 정책을 포함시키고 연례 교육에서 논의함으로써 모든 직원이 정책을 인지하게 한다; 그리고
- 모든 직원이 고용주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고용주의 불만 처리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직원 안내서의 세부 정책에 명시하며, 신고 경로를 여러 곳(예: 부서장, 인사위원회)으로 마련하여 성희롱 희생자가 가해자에게 신고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 감독자 또는 조직 내 누가 하든지, 성희롱 보고는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한 보고는 합리적이고 냉철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회는 괴롭힘에 대한 주 법을 확인해야 한다. 뉴욕과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정책 및 연간 교육이 필요한 직원에 대한 자세한 법적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

1999년, 고용 평등 기회위원회(EEOC)는 직장 상사의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한 고용주의 대리 책임에 대한 시행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성희롱이 성적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 출신 국적에 따라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이 문제와 성희롱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의 시행 지침을 참조하라:<http://www.eeoc.gov/policy/docs/harassment.html>).

또한 일부 주 및 연방 법원은 엘래스와 패러거 판결에 개인의 인종, 나이, 출신 국가, 근무여부 및 장애에 근거한 괴롭힘을 포함시켜 범위를 넓혔다.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에 대해 유사한 정책과 예방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VIII. 인사 기록부

교회와 공의회는 바람직한 인사 기록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기록에 보관해야 할 것과 보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협력해야 한다. 고용과 관련된 모든 기록은 별도로 잠긴 의료 기록 파일과 함께 인사 파일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A. 인사 기록 접근 및 기밀 유지

특정 인사 기록에 대한 접근 제공 또는 기밀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주 법과 연방법이 있다. 공의회와 교회는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의료 정보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다. 합법적인 업무상 이유가 있을 때에만 수집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의료 정보는 해당 주 법과 연방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우에만 공개되어야 한다. 고용주는 의료 정보 공개 전에 직원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의료 정보 공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미국 장애인 법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 정보는 직원의 인사 파일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별도의 잠금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만 접근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다음은 미국장로교와 A-코어퍼레이션(장로교 선교국 및 총회 사무국 포함)에서 사용하는 정책이다. 이는 샘플로 제공된다.

1. 인사 기록

고용주는 고용주의 자산으로서 각 직원의 인사 파일을 관리한다. 인사 파일에는 직원의 입사 지원서, 이력서, 교육 기록, 성과 검토 및 급여 인상 및 기타 고용 기록들과 같은 정보가 포함된다. 의료 또는 건강 정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직원은 인사과에 연락하여 자신의 인사 파일을 검토할 수 있다. 직원은 인사과 직원의 배석하에 인사 파일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파일에서 문서를 제거할 수는 없다. 전직 직원은 인사 파일에 접근할 수 없다. 인사 파일의 정보는 기밀 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사람만 직원 인사 파일에 접근할 수 있다. 구인 광고의 직위를 가진 감독자는 구인 광고 직위의 후보 직원의 인사 파일을 검토할 수 있다.

B. 기록 보관

연방법에 의해 보관해야 하는 인사 기록의 유형은 다음과 같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기록 | 보관 기간 |
|------------------------------|---|
| 급여 기록 | 3 년 |
| 고용, 해고 및 승진에 사용되었던 인사 기록 | 조치 후 1 년 |
|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법적인 조치 또는 차별 불만과 | 관련된 기록 |
| 일정표 | 2 년 |
| FMLA 관련 기록 | 3 년 |
| 이민 관련 기록 | 고용일로 부터 3 년 또는 해고 후 1 년 중 가장 늦은 날짜 |
| OSHA 관련 기록 | 고용 기간 중 5 년의 부상 기록 및 요약 + 30 년 건강 검진 기록 |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용 기간 동안 직원의 **모든** 기록 + 고용주의 주에서 직원이 차별 또는 기타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시효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다. 고용주는 이 정보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해야 한다.

고용주는 인사과 사무실에 세 종류의 파일을 관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1) 인사 파일; (2) 기밀 파일 (채용 및 면접 기록, 추천인 확인, EEO/긍정적인 조치 데이터, 신용 확인 및 법적 조치 또는 불만 사항에 관한 정보); 그리고 (3) 의료 정보다.

C. 인사 기록의 소환장

고용주는 소환장을 받으면 더 이상 단순한 문서 제출만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특히 타 주의 법원에서 소환장을 발부한 경우 더욱 그렇다. 소환장을 받으면 고용주는 고용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환장에 대응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관련 법률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피고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용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피고용인은 자신의 변호사에게 소환장을 없애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동시에, 고용주는 소환장을 발부한 변호사에게 피고용인의 이의 제기에 대해 알려야 한다. 어떤 경우이든, 고용주는 소환장을 발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소환장 문서가 필요한 사안을 파악하고, 소환장에 포함된 요구사항을 반영한 답변서를 피고용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IX. 직원의 개인 정보

미국 수정 헌법 제 4 조는 각 주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비정부 기관의 직원 개인 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 일부 주는 특정 인사 기록의 비밀 보장을 다루는 법이 있다. 기록의 비밀 보장은 **VIII. 인사 기록**의 세부 항목에서 다루었다.

직원들은 사무실, 책상 및 기타 업무 관련 공간에서 직장에 가지고 오는 그들의 옷, 가방과 지갑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도 다양하고 고용인의 수색 권한도 다양한데, 이는 주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원이나 직원의 업무 공간을 수색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라.

A. HIV/AIDS 관련 개인 정보 문제

미국 장애인법과 주의 의료기밀 보호법은 직원의 의료 정보, 특히 AIDS 에 걸렸거나 HIV 양성인 직원의 비밀을 보호한다. HIV 는 우연한 접촉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을 위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고용주가 전염에 대해 하는 우려보다 더 크다.

X. 미국장로교의 혜택 플랜

혜택 플랜과 보조금 프로그램을 관리함으로써, 미국장로교 연금국은 미국 전역과 해외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와 미국장로교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섬긴다.

A. 공동체 특성

혜택 플랜에는 "플랜의 공동체 특성"으로 일컫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주로 플랜의 자금 운용, 연금 혜택 및 가족 의료 보험과 관련이 있다. 혜택 플랜은 미국장로교 교회 및 산하 고용 기관의 회비와 플랜 자산에 대한 소득 및 자본 상승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가 보험(self-insured) 교회 플랜이다. 지역 교회 또는 고용 기관이 납부하는 회비는 직원의 유효 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며,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는 비용 중 해당 고용 기관의 몫을 나타낸다.

B. 혜택 플랜

혜택 플랜은 미국장로교 사역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 연금, 사망, 장애 및 의료 혜택, 그리고 선택적 혜택은 참여하는 교회 사역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포괄적인 보호 및 재정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혜택 플랜은 두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전통적 프로그램과 체휴 혜택 프로그램이다. 규례서는 모든 교회가 연금과 의료 보험을 함께 포함하여 연금국의 혜택 플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 회비는 각 직원의 급여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C. 보조금 프로그램

연금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은 혜택 플랜, 개인 자산 및 기타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회 사역자를 돕는다. 또한 오늘의 세계 속에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는 보조금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보조금 프로그램은 혜택 플랜을 보완하는 다양한 재량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 보조금은 회비가 아닌 선물, 유산, 기부금 수입, 성탄의 기쁨 특별 헌금의 절반으로 지원된다.

D.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혜택 플랜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Pensions.org 의 연금 플랜 문서, 기타 출판물 및 양식을 참조하라.

미국장로교 연금국
2000 Market St.
Philadelphia, PA 19103-3298
전화: 800-773-7752 (800-PRESPLAN)

E. 연금국 간행물

이 훌륭한 자료들은 연금국 (800) 773-7752 (800 -PRESPLAN) 으로 전화하거나 연금국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pensions.org/portal/server.pt>

- 혜택 플랜의 개요
- 미국장로교 혜택 플랜
- 혜택 플랜의 공동체 특성
- 플랜 상품 설명서
- 간략한 의료 플랜 설명

- 은퇴 연금, 사망 및 장애
- 메디케어 보조 프로그램
- 간략한 은퇴 저축 플랜 설명
- 혜택 관리 안내서 (교회 및 고용기관 용)
- 혜택 행정 안내서 (노회, 대회 및 총회 기관 용)
- 유효 급여 이해
- 혜택 플랜 및 이혼
- 장기 요양 보험 구매자 가이드
- 목회자 및 교회를 위한 세금 안내
- 교회의 연방보고 요건
- 은퇴를 계획 중인 회원을 위한 안내
- 평신도 직원을 위한 혜택
-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사회 보장 기초
- 주요 의료 혜택 지속 프로그램
- 생명의 청지기 직분: 사전 준비 지침
- 필수 생활 혜택

F. 유동성 지출 계좌(Flexible Spending Accounts)와 기타 혜택

현재 연방 세법은 제 125 조 유동성 지출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계좌는 직원이 세전 급여의 일부를 따로 설정해 그룹 보험 플랜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치과 및 안과 비용과 특정 아동 간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32 조 국세법 또한 직원들에게 통근 및 주차와 관련된 특정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XI. 관련 자료들

고용주가 고용 문제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많은 웹 사이트가 있다:

- 미국 노동부 (<http://www.dol.gov/>)
- 미국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 (<http://www.eeoc.gov/>)
- 미국 이민국 (<http://www.uscis.gov>)
- 미국 산업 안전 보건국 (<http://www.osha.gov/>)

제 7 절 - 이민

I. 개요

다음의 정보는 미국장로교 중간공의회, 교회, 기관에 이민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미국 이민의 여러 방식에 대한 완벽한 정보 자료도 아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총회사무국 산하 이민 문제 지원 사무소에 연락하라: 테레사 와그너 Teresa.Waggner@pcusa.org

(웹사이트: <http://oga.pcusa.org/section/departments/immigration>)

미국장로교의 중간공의회, 교회 및 사무국은 교회의 사역에 미국 외에 사는 이들을 참여시키곤 한다. 미국장로교에서 일하거나, 강사, 참관인 또는 참가자로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미국 이민국 (USCIS)의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의 정보를 검토하는 것 외에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교회, 중간 공의회, 기관과 해당 비거주자(nonresident)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비 이민자(Non-Immigrants)

비이민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승인된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날 예정인 사람이다. 국무부는 비거주자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이민 비자를 발급한다. 학생, 관광객, 일부 운동 선수, 교환 방문하는 사람, 임시 근로자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이 비이민 비자로 매일 미국에 입국한다. 각 비자에는 개인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체 제한과 규칙이 있다 비이민자는 체류 조건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비이민자가 체류 조건을 위반하면 현재 비이민 신분을 잃을 수 있으며 국무부가 향후에 해당인의 신청서를 더 자세히 검사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만일 나중에 해당 비 이민자가 이민자로 상태를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이러한 체류 위반은 이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비 이민 비자 유형 및 설명의 전체 목록은 국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frequently-asked-questions/what-is-us-visa.html>.

교회에서는 일부 비 이민 비자를 더 자주 이용한다. 다음은 이러한 유형의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이다. 비자 신청 절차는 필요한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일부 비자의 경우 비거주자가 대사관에 가서 직접 신청한다. 교회와 같은 미국 법인이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다른 종류의 비자도 있다.

1. 종교 종사자 (R 비자)

종교 종사자 비자는 중간 공의회와 교회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종교 종사자에게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요청하는 비이민 비자이다. 종교 종사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 전에 2년 동안 미국에 선의의 비영리 종교 단체가 있는 종교 교단의 회원이어 한다. 2) 적어도 일주일에 이십 (20) 시간 동안 종교인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와야 한다; 3) 목회자 또는 종교적 직업으로만 일해야 한다; 4) 미국에 와서 신청 기관을 위한 종교적인 일 외에는 해서는 안된다; 5) 미국 내에서 다른 자격으로 일할 수 없다. 종교 종사자 비자 신분은 총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종교인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 (미혼 및 21세 미만)는 R-2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지만, 그 신분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 종교 종사자 비자 및 종교 종사자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테레사 와그너에게 Teresa.Waggner@pcusa.org로 이메일 하여 문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other-visa-categories/temporary-religious-worker.html>.

2. 교회 사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비이민 비자

H-1B 비자는 전문가를 미국으로 데려와 최대 6년까지 일할 수 있다. 중간공의회나 교회는 종교 직업을 가지지 않은 비거주자(nonresident) 피고용인이나, 종교 종사자 비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종교 종사자를 고용할 때 H-1B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종교인 비자를 취득하는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으며, 정부에서 매년 발급하는 H-1B 비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반적으로 연간 H-1B 기간 초에 그 제한치에 도달한다. 그러나 교육 기관(예: 신학교 및 대학)과 같은 일부 고용주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H-1B 프로그램에 따라 H-1B 근로자의 배우자와 부양 자녀는 H-4 신분으로 미국에 올 수 있지만 일할 수는 없다. H-1B 임시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employment/temporary-worker-visas.html>.

F-1 학생 비자 프로그램은 학생 교환 방문 프로그램(SEVP) 공인 대학, 대학교 또는 신학교에서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학생 비자를 받으려면, 지원자는 SEVP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업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학업 과정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나야 한다. H-1B 임시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employment/temporary-worker-visas.html>.

일반적으로 학생은 학교 밖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회중 관련 환경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승인된 인터십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자세한 것에 대해서 학생들은 소속 학교의 지정된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B-1 사업 방문자 비자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이 컨퍼런스나 워크숍 참석과 같은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것을 허용한다. B-1 방문자 프로그램은 방문자가 미국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부터 급여나 수입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제한적인 경우 비즈니스 방문자는 일부 강연 계약에 대해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

B-1 비즈니스 방문자 비자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다음을 참고하라.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tourism-visit/visitor.html>.

III. 이민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을 영주권자 혹은 green card holder라고 한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민자들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다음은 미국 거주자가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이다.

A. 다양성 비자 복권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은 역사적으로 미국 이민율이 낮은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매년 55,000 개의 비자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법적으로는 미국에 들어오는 데 문제가 없지만, 다른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미국 이민 비자에 지원할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미국 거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무부는 매년 10월경에 신청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같은 해 11월 경에 프로그램을 마감한다. 신청자 풀에서 무작위로 이름을 추첨하여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비자 복권 사기 행각이 흔하므로,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국무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알 수 없는 기관의 전화나 이메일에는 절대 응답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 다양성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국무부 웹 사이트를 참조하라.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entry/diversity-visa-submit-entry.html> .

3. 가족 기반 이민

가족 기반 범주로 미국으로 이민하려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 자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 (LPR)와 자격 조건에 맞는 가족 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가족이 적절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내 LPR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2) 부양 자녀, 3) 미혼의 아들과 딸. 미국 시민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더 넓다: 1) 배우자, 2) 부양 자녀, 3) 미혼 자녀, 4) 결혼한 아들과 딸, 5) 신청하는 시민이 21 세 이상인 경우, 6) 형제 자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양 자녀, 부모는 직계 가족으로 간주되며 비자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LPR 및 시민권자 모두에 있어서, 다른 모든 가족 구성원의 경우는 비자 접수 및 발급 가능 여부(visa availability)에 영향을 받으며, 미국 입국을 위해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무부는 매월 비자 공보(visa bulletin)를 발행하여 일반인 및 이민 희망자에게 비자 접수 및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린다. 가족 기반 이민국의 현재 비자 계시판과 발급 적체 상황을 보려면 국무부 웹 사이트를 방문하라.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 .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국무부 웹 사이트를 참고하라.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family-immigration.html> .

4. 고용 기반 이민

1. 종교 종사자를 위한 특별 이민자 지위

이민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종교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 이민 신분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1) 신청 전 2년 동안 미국에 선의의 비영리 종교 단체가 있는 종교 교단의 회원이었으며, 2) 해당 종교 교단의 목사 또는 종교적 직업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미국에 왔으며, 3) 미국에 있는 선의의 비영리 종교 단체에서 일하기 위해 왔으며, 4) 청원 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종교 종사자로 일하고 있었어야 한다.

풀타임 종교 직업을 제공한 중간 공의회나 회중이 종교 종사자가 이러한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을 받으면 종교인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종교인의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도 이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민 문제 사무소의 테레사 와그너에게

Teresa.Waggner@pcusa.org로 이메일을 하여 문의할 수 있다. 국무부 웹 사이트에서 정보를 볼 수도 있다 :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types/types_1324.html

2. 기타 근로자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도록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직원의 자격 증명과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여러 범주가 있다. 고용주는 해당 직책에 대한 채용 공고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그 직책을 충원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한다. 가족 기반 이민과 마찬가지로, 고용 기반 이민 신청에 해당하는 피고용인은 비자 대기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html>에서 최신판 미국 국무부 비자 공보를 참고하라.

5. 인도주의 기반 이민

미국 정부는 인도 주의적 이유로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허용한다. 난민, 망명자, 가정 폭력의 희생자, 인신 매매 및 기타 범죄의 희생자, 그리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통역자들은 모두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이어질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들 각각의 범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인도주의 이민국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USCIS 웹 사이트를 살펴보라.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194b901bf9873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194b901bf9873210VgnVCRD100000082ca60aRCRD>

IV. 책임있는 고용주로서의 교회

예비 직원의 이민 신분 보호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나 미국을 영구적인 거주지로 삼을 계획을 가질 가능성이 있거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의 경우, 허가되지 않은 취업은 이러한 계획을 방해하여 이민 절차를 더 오래, 더 비싸게 또는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고용주는 채용 절차 초기에 서류를 요청함으로써 예비 직원의 향후 이민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일치하는 교회 구성원의 풍부한 다양성 속에 반영된다"고 믿는 교회이다.¹ 채용 후보자를 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고자 하는 열망이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람들이 파송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후보자들을 모두 공평하게 대하고, 고용 차별이라는 위반을 행하지도 않도록 하면서, 어떻게 이민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신청 단계에서 일찍 물어보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미국장로교 센터에서 고용할 때 사용하는 지원 형식의 예가 여기 있다.

| | | |
|--|-----|----|
|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I understand that I will be required to furnish proof of my identity and authority to work in the U.S. as required by law. Do you have the legal right to work in the United States? | YES | NO |
|--|-----|----|

1. I-9 필수요건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국적이나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피고용인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연방 I-9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교회가 고용주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 중간 공의회와 교회는 모든 직원을 위해 I-9 양식과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I-9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I-9 양식 및 지침은 USCIS 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scis.gov/i-9-central/about-form-i-9/about-form-i-9>

2. 서류에 있어서의 차별

¹ 규례서, F-1.0403 : 미국장로교 헌법, 제 2 부

이 법은 근로 허가의 증거로 허용되는 문서를 명시하고 있다. I-9 양식의 5 페이지에는 허용되는 문서 및/또는 문서의 조합이 열거되어 있다. 직원은 나열된 것들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제출할 수 있다. 특정 서류를 요구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서류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서류 차별을 저지른 것이며 법무부 또는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EOC)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웹 페이지를 참고하라 : <https://www.justice.gov/crt/immigrant-and-employee-rights-section> 또는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EOC) 웹 페이지를 보라 : <https://www.eeoc.gov/laws/types/nationalorigin.cfm>

3. 세금

고용주는 각 피고용인의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급여에서 특정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 하며, 피고용인은 연말에 적절한 세금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IRS\)](#) 웹페이지를 살펴보고,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제9편 - 위험 관리 및 보험

이 편에서는 교회와 중간 공의회가 확보해야 하는 보험의 유형, 보험을 제공하는 주요 회사, 권장되는 최소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편의 마지막에는 유용한 체크리스트가 있다.

I. 보험

규례서는 모든 교회, 대회, 노회가 시설, 프로그램 및 임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재산 및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G-3.0112 보험

각 공의회는 재산 보험과 책임 보험을 구입해 그 시설, 프로그램, 직원, 선출직 임원, 지명직 임원을 보호하도록 한다.

고려해야 할 리스크들이 많고 보험 종류도 많지만, 보험을 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보험사 담당자나 기타 자원들을 활용하여, 이사회, 당회, 중간 공의회는 필요한 곳에 적절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 수 있다.

보험 계약이 해당 기구에 적절한지, 필요한 보장을 온전히 제공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매년 검토해야 한다.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보장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교회들은 종종 보험 가액 미만인 경우에 놓이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보장 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면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설정된 인플레이션 요인에 따라 자동으로 증가하는 보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해(배상책임) 보장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데이 케어 센터, 학교 또는 기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교회의 보험사 담당자와 함께 잠재적인 책임 보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장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이벤트 또는 새 프로그램 시작 최소 30 일 전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보험 회사가 새로운 위험을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견적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가계약이나 배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업데이트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 보장이 높은 우선 순위와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기금 모금 행사, 새 부동산 취득, 임대 부동산, 상담 서비스, 수탁 책임에 대한 특별한 관심 뿐 아니라 교회가 마주한 다양한 리스크들에 대한 인식
- 건물 비용 증가 및 새 부동산 구입
- 데이 케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특화된 보험 보장의 필요성
- 변동하는 연간 보험료 비용
- 많은 교회의 사역 확대

보험 관행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 교회의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검토
- 소방 공무원과 함께 매년 건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부상, 화재 또는 기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한다. 지역 소방서에 문의해 보자.

일반적으로 소방서는 자발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주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를 알려준다.

- 모든 가구와 장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고 품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마다 업데이트한다. 가구, 장비, 교회 공간들을 사진을 찍어서 목록으로 만들면 아주 훌륭한 기록이 된다. 몇몇 교회에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모든 목록 보고서는 교회 건물 밖의 은행 대여 금고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최소 3년마다 모든 자산의 가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물 감정평가를 실시한다.
- 보험을 구매하거나 갱신할 때 최소 두 개의 견적을 받는다. 보험이 만료되기 최소 90일 전에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견적을 요청하라.
- 예산 수립을 생각하면서 실제 연간 보험료를 결정한다.

A. 보험의 종류

1. 재산 보험/손해 보험

재산 보험/손해 보험은 건물 및 개인 재산의 손실 또는 손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산 보험/손해 보험 계약서는 새로 취득한 재산, 운송 중인 재산,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귀중한 서류, 사업 수입의 손실, 추가 비용, 컴퓨터 장비 및 보일러 및 기계류를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것은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일부 리스트이다. 여러분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청하여 보험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완전한 목록을 확인하라.

재산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 증서에 대한 재산 보험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교회들은 종종 보험금액에 보험 가액 미만인 경우에 놓이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반면, 보장 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보장 한도가 낮아서 생기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보험 적용 범위를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산 보험/손해보험 한도를 인플레이션 요소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정되게 할 수 있다. 이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2. 일반 책임 보험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보험(일반 책임 보험)은 자산이나 활동의 소유권으로부터 발생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손실로부터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일반 책임 약관은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미끄러짐 및 낙상 및 기타 신체 상해, 타인의 재산 피해, 제조물 책임, 완료된 작업, 명예 훼손 및 비방, 거짓 체포, 직원 해택 책임, 계약상 책임 및 기타 유형의 청구가 이 약관에 의해 보장 받아야 한다. 직원, 이사, 신탁 관리자, 임원 및 자원 봉사자에게 이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일반 책임 약관은 적용 범위를 미국, 영토 및 캐나다로 제한한다. 이 지역을 벗어나는 여행의 경우,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라.

일반 책임 보험은 일반적으로 청구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이다. 이는 청구가 보고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시기에 관계없이, 사고 당시 유효한 보험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선호된다. 그러나 이사 및 임원 보험 및 직원 복리후생 책임과 같은 일부 보험은 전통적으로 청구 발생 기준으로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 보장에 따라

보험금 청구는 해당 보험 기간 또는 보험에 명시된 연장 보고 기간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테일(tail)"이라고하는 연장 보고 기간은 해당 보험 기간 이후 1년이다. 보험금 청구 및 보상이 제공되는 경우, 현재 보험 기간 외에 이전 기간에 대한 '소급 날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 담당자와 함께 보상 종류와 함께 청구 내용을 검토하라.

데이 케어 센터, 학교 또는 기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교회 자산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교회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산의 용도 변경은 책임져야 할 새로운 위험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행사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에 보험 담당자에게 연락하라. 이렇게 하면 보험 회사가 새로운 위험을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견적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가계약이나 배서(계약 변경)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성적 비행에 대한 책임

대부분의 일반 책임 보험 계약서는 성적 학대 또는 성추행과 목회자의 직업적 책임을 제외하고 있다. 성추행과 목회자의 직업적 책임에 대한 보험 적용은 별도의 보험을 들거나 배서(계약 변경)를 하여 구입 가능하다. 이러한 보험 적용 범위 가능 여부는 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이러한 보험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청구를 피하기 위해 보험사 담당자와 함께 일반 책임 정책의 예외 및 제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4. 목회자의 직업적 책임 보험

목회자의 직업적 책임 보험은 목회적 상담 서비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책임을 보장하는 것이다. 목회 전문 직원과 기타 전문 직원 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명피보험자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양식 하에서 적용되는 보험에는 많은 정의가 있다. 보험 담당자와 함께 정의와 계약의 예외 사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라.

5. 근로자 산재 보험

산재보험의 목적은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자에게 더 큰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산재 보험은 업무 중 부상을 입은 직원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보장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주법에 의해 정해진다. 대부분의 경우, 상해 보상금은 보상 적용 대상인 피고용인이 고용주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상해 배상 수단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법은 고용 관련 상해가 입증되면 직원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고정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지불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부주의 또는 과실 판단에 근거하지 않는다. 일부 주에서는 단순히 산재보험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 주정부 감독 하에 보험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률에 따라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보상 시스템을 수락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몇몇 주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보험 보장금과 일치하는 산재 보상 기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산업 재해 보상법 조항 따르기를 거부하는 고용주는 상해를 입은 직원의 상해 소송에 대한 관습적인 방어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여러 주의 산재 보상법을 비교하는 것은 본 법률 자료집의 목적이 아니다. 각 주마다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주요 특징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할 뿐이다. 산재 보상 범위를 고려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보장되는 사람 및 고용 유형
- 보장되는 부상 및 질병
- 제공되는 혜택
- 민법, 행정적 요건 및 선택 사항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고용주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유자격에 대한 제한을 포함.
- 혜택 확보 방법

모든 주의 산재 보상법에 따라 고용주는 산재 보상금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해당 사법 관할권은 주정부 기금, 민간 보험 회사 또는 적격 자체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 보상 보험은 산재 보상 및 고용주 책임 정책으로 구성된다. 이 유형의 보험은 두 가지 유형의 기본 보장을 제공한다. 하나는 실제 산재 보상 혜택을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직원 또는 부양가족이 고용주의 과실 및 안전하지 못한 근무 조건과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보험을 제공하여 책임 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보험 보장의 결합은 고용주를 업무상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직원과 고용주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고용주가 기본 보장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들을 필요로 한다면, 보험으로 보장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보험 담당자에게 추가 보험 보장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추가 보장을 확인하라.

6. 포괄 배상 책임 보험(Umbrella Liability)

기본 일반 책임, 자동차 책임 및 근로자 보상 보험의 고용주 책임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초과해서 제공하는 포괄(초과) 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라. 기본 한도가 소진되거나 단일 손실로 인해 한도가 초과되면, 포괄 책임 보험이 활성화된다. 포괄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금 청구 건수에 관계없이 1년의 보험 기간 동안 보험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총 보상 한도액을 지급한다. 포괄 배상 책임 보험은 1백만 달러 단위의 보장 배수로 구매한다. 모든 교회, 특히 차량을 소유하거나, 데이 케어나 학교가 있는 교회는 포괄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7. 목사의 개인적 책임에 관한 보험

많은 목사들이 지역 교회가 마련하고 보험을 들어 놓은 사택에서 산다. 교회를 추가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주택 소유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목회자와 그 가족을 개인 책임과 개인 재산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 계약/보험 증권을 작성해야 한다. 사택과 개인 자산이 교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목회자와 그 가족을 위한 세입자형 주택 소유자 보험은 여전히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족 행사/활동은 이 활동이 목사의 책임의 일부라고 간주되지 않는 한, 교회가 든 보험 계약에서는 보장이 안된다. 집을 소유하거나 빌린 목사는 필요한 보험 보장에 대해서 보험 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8. 피고용인 또는 자원 봉사자의 범죄 보험

피고용인범죄 보험은 피고용인 절도에 대한 보험 보장을 해준다. 피고용인의 범죄 보장은 피보험자인 피고용인의 단독 또는 타인과 공모한 절도나 위조에 의해서 발생한 금전적 손실, 증권 손실, 기타 자산 손실에 대해 제공된다. 자원봉사자가 직원 부정행위 보험에 적용되는지 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된다.

규례서는 직원의 부정행위 청구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교회의 재정 절차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G-3.0205 재정

G-3.0113에 기술된 책무 외에, 당회는 예산안을 준비하고 채택해 현금의 사용처를 결정해야 한다. 당회는 현금을 기독교적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현금과 사용내역을 설명해야 한다. 당회는 현금 사용 결정에 관한 정보를 개체교회에게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당회는 당회가 정한 임기로 회계 담당자를 선출해야 한다.

당회는 회계 담당자의 업무를 직접 감독하거나 집사회 또는 재정부가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회계 담당자는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또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회는 교회의 표준 재정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a. a. 적법하게 임명된 최소 2인 또는 공인 신용보증인 1인이 모든 현금을 계수하고 기록해야 한다.
- b. b. 모든 재정 기록을 기록한 재정 장부와 기록물은 보관해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임명받은 제직이 감사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c. c.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 번 이상, 모든 재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당회 또는 재정 감독 조직체에 제출해야 한다

범죄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a. 적어도 2명이 현금을 걷는 일을 맡는다. 걷은 돈을 집계하고 입금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b. 계수는 서로 관련이 없는 최소 3명의 사람이 안전한 장소에서 수행해야 한다.
- c. 모금, 계산, 입금을 담당하는 사람은 매주 교대로 교체해야 한다.
- d. 한 사람이 자금 거래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지 않도록, 자금을 대한 책임과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 입금을 하거나 청구서를 지불하는 개인이 은행 명세서를 맞추어 조정하는 일을 맡아서는 안된다.
- e. 수표책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 f. 은행 명세서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g. 수표에 서명하도록 승인된 사람은 계좌를 맞추어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과 동일인이면 안된다.
- h. 교회 재정 기록 보고는 적어도 분기별로 해야 한다. 회중은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제9편의 용어는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전문 회계 집단에서 이해되는 특정 감사 절차 또는 관행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본 제9편 뒷부분의 "손실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회계 절차에 대한 제안"을 참조하라.

9. 피고용인 절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안

- a. 손실은 교회의 보험 회사와 변호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보험사와 변호사가 정한 절차를 따른다. 보험사가 아마 손실의 종류에 따른 특정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 b. 지역 당국에 손실을 신고, 고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한다.
- c. 조사결과에 대해서 비공개 회의에서 당회에 알린다.
- d. 조사가 종결되면, 조사 결과에 대해서 회중에 알린다. 이 또한 비공개여야 한다. 당회와 회중에게 그 과정을 알리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신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 자동차 책임 보험

자동차 책임 보험은 교회 소유 차량의 소유권, 유지 보수, 사용, 하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재산 피해 청구에 대해 보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소유 차량에 대한 물리적 손상 보상은 별도로 보장된다. 많은 경우에, 목회자 및/또는 자원 봉사자는 교회 활동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에 적용되는 보험이 주 보험을 제공하지만, 교회가 비 소유 차량 책임 보험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비 소유 자동차 책임 보험은 또한 자동차 소유자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교회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다.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 렌트카 보장은 동일한 보장에 적용된다. 비소유 차량 및 임대 차량에 대한 보장은 자동차 책임 보험 가입시 요청해야 하는 별도의 보장이다. 렌터카와 관련된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차량을 렌트하기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11. 이사 및 임원

이 보험은 보험 약관 및 관련 상황에 따라 직무 수행 중 과실 또는 부당 행위가 야기한 클레임으로 인한 손해로부터 조직의 임원, 이사 및 수탁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이사 및 임원 보험은 제 3 자의 신체 상해 또는 재산 피해 청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정책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계약, 피보험자 및 제외 사항을 모두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이사 및 임원 보험은 조직 자체(법인 보험)를 보장하고 고용 배상 책임을 보장하도록 확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좋다. 이사 및 임원 보험은 대부분 보험금 청구서 양식에 보호 한도 내에서 방어 비용이 포함된 형태로 작성된다.

12. 출장 사고 보험

교회의 요청에 따라 국내 및 해외로 여행하는 개인이 있는 교회는 출장 상해 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 보험은 교회 업무로 여행하는 개인에게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신체 상해 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은 또한 유해의 송환 및 의료 대피와 같은 미국 이외의 여행에 대한 요구를 다루어야 한다. 이 보험은 다양한 범위와 옵션으로 구성할 수 있다. 출장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하라.

13. 해외 여행 보험

점점 더 많은 교회가 해외 여행을 후원함에 따라 여행에 보험을 고려해야 한다. 여행은 교육적, 영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위험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위험을 상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행 상해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보험은

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신체 상해에 대한 보험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 여행하는 동안 유해 송환 및 의료 대피도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 여행에는 여행에 따라 다른 보험이 필요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할 추가 보험으로는 해외 상업 배상책임, 해외 상업용 자동차 배상책임, 외국인 근로자 보상 및 질병 보험 등이 있다. 보험 적용 지역을 벗어나 여행하기 전에 항상 개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여행 계획을 논의하고 필요한 보험을 결정하려면 보험 전문가에게 문의하라.

14. 고용 배상 책임 보험

고용 배상 책임 보험은 직원 고용, 해고 또는 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한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 대리점에 문의하여 이사 및 임원 보험으로 이러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별도의 고용 배상 책임 보험으로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하라. 고용 소송은 법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므로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B. 교회, 노회 및 총회를 위한 재산 및 책임 보험의 최소 기준 가이드라인

이 최소 기준은 일반적인 지침으로 만 사용되어야 한다! 항상 그렇듯이 보험 전문가를 통해 각 교회와 중간 치리회의 보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한다. 보험의 필요성 뿐 아니라 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한 가지 가능한 대안은 공제액(deductible)을 높게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보험 전문가에게 이 방법과 기타 비용 절감 옵션에 대해 문의하라.

1. 자산

- a. 대체 가액(Replacement Cost) 감정을 통해서 건물 및 내용물을 보증
 - 80% 공동 보험: 합의가(agreed value)의 대안으로, 일부 보험사에서 감정가의 백분율로 제공하며, 정해진 한도까지 보장을 제공한다.
 - 특별 양식: 보험 전문가가 특별히 제외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화재, 기물 파손, 하수도 역류, 재산 도난 등을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보장을 제공한다.
- b. 추가 보장: 외부 보장, 새로 취득한 재산, 잔해 제거, 규정 요건에 따라 재건축, 건물 철거, 목회자 및 타인의 개인 재산, 스테인드 글라스, 오르간, 기타 악기, 예술 작품, 귀중한 서류, 사업 수입 손실 및 관련 추가 비용.
- c. 보일러 및 기계: 보일러 및 기계 유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관련 비용, 손상 및 이와 유사한 비용
- d. 지진은 보험약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지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기재한다.
- e. 홍수는 적절한 경우 별도로 작성된다. 그리고 주 또는 연방 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 f. 추가 비용이나 소득 보장의 손실도 고려하라.

참고: 곰팡이, 바이러스, 납 페인트, 석면 등 많은 보험 회사들이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책임(Liability)

- a. **일반 책임 보험**: 청구/발생당 \$1,000,000, 총 \$2,000,000, 제품, 신체 상해, 타인의 재산, 자원봉사자 및 체육 활동을 포함한 무과실 의료비 \$10,000, 계약상 책임, 화재 법적 책임(\$100,000 한도), 탁아소/어린이집, 목회자 전문직 책임 및 성범죄 보상(\$1,000,000 한도) 등 대부분의 위험에 대해 보상한다.
- b. **포괄 배상 책임 보험** : 일반 및 자동차 책임의 일차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당 \$ 10,000,000; 추가 한도에 대한 보험 전문가의 보장 검토.
- c. **자동차** : 무보험 및 보험을 충분하게 들지 않은 운전자 보호를 포함하여 발생 또는 총액당 \$1,000,000 보장, \$10,000 의료 보장, 해당되는 주에서 개인 상해 보장, 보험 한도까지 고용된 운전자 및 차량 비소유 운전자 보장.
- d. **근로자 보상** 각 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따라야 하며, 목사와 모든 고용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e. **이사 및 임원** : 당회, 집사, 신탁 관리자, 임원이 정규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법인체 보호를 위해 청구/발생 건당 \$ 1,000,000.
- f. **고용 배상 책임** : 고용, 복리후생, 해고 및 성희롱과 관련된 청구(claim)에 대해 청구당 \$250,000 또는 총액.
- g. **범죄 배상책임**: 직원의 부정직함,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도난 또는 분실, 예금자의 위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구 또는 발생 건당 \$50,000 보장함. 어떤 식으로든 교회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도 보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 h. **국제적 책임**: 이 보험은 교회 또는 개인이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귀하의 교회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후원하는 경우, 이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위험 노출에 대한 분석은 보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
- i. **유해의 송환** : 사망시, 이 보장은 유해를 미국으로 반환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귀하의 교회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선교 여행을 후원하는 경우, 이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

C. 손실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임대 절차 제안

1. 임차인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임대 계약의 일부로 교회에 유리한 면책 및 면책 보류 계약이 있어야 한다. 교회는 법률 고문과 함께 임대차 계약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여, 교회의 요구 사항과 필요 사항이 임차인의 임대차 의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회에 성적 비행 및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규칙서 G-3.0106에 따라 요구됨)이 있는 경우, 이를 임대 계약서에 참조하고 세입자에게 해당 정책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세입자에게 해당 정책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 사본을 수령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간단한 수령 양식을 작성하여 세입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후 수령을 확인하도록 한다.
2. 임대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일환으로, 임차인은 입주 전에 교회를 해당 보험의 추가 피보험자로 명시한 임차인의 책임 보험사의 최신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임대 계약이 다년 계약인 경우 매년 새로운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 증서에는 교회 공간 사용에 대한 일반 책임 및 부동산 보험 적용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물품도 부동산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임차인이 데이케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증명서에는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의 사본을 교회의 보험 대리인에게 보내야 한다.

3. 현재 교회 책임 보험사에 서면으로 문의하여 보험 회사가 제안된 임대료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 보장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제안된 임대료 인해 보험료 인상이나 제외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한 예외 사항에 대해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라. 임대 조건을 조정하거나 임차인에게 인상분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가분을 상쇄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신규 활동을 고려하여 자체 보험 정책 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있다. 추가 또는 특수 보험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부동산 입주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대리인에게 신규 입주자에 보험이 적용됨을 명시하는 바인더, 또는 보증서의 송부를 요청해야 한다. 보험 담당자로부터 서면 확인서를 받기 전에는 임대차 계약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보험금 청구 또는 소송이 발생하면 즉시 보험 담당자와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 연방 버스 규정

교회에 승합차나 버스가 있는 경우 이 링크에 요약된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할 지도 모른다.

<https://www.fmcsa.dot.gov/regulations/faith-based-organization-related-transportation>

차량에 대한 보험에 대해 논의할 때 해당 규정에 대해 보험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 교통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855) 368-4200으로 문의하거나 www.fmcsa.dot.gov/mission/field-offices 에서 가까운 현장 사무소를 찾으라.

E. 교회에 대한 방화 및 폭발물 설치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교회에 대한 방화와 폭탄 테러가 몇 건씩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려해야 할 사항이며, 관련 사고도 보고되고 있다. 교회는 방화범의 쉬운 표적이다. 교회는 대부분 비어 있고 활동 일정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방화는 종종 다른 범죄나 감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사후 조치이기도 하다. 방화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든, 연방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회에 대한 방화 및 폭파 공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술, 담배 및 총기국에 문의해야 한다.

주류, 담배 및 총기국 : <https://www.atf.gov/contact> (<https://www.atf.gov/>)

ATF 전국 방화 신고 : 1-888-283-3473

ATF 전국 폭발물 신고: 1-888-283-2662

- a. 기록용 (부록 N 참조)
- b. 안전 상태 및 실천 설문조사: 자체 점검 가이드(부록 O 참조)

제 11 절 -소송이 제기되어 끝날 때까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I. 서류가 도착하면

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법원 서기 사무실에 소환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이다. 해당 법원의 규칙에 따라, 법원 대리인과 같은 송달인을 통해서 혹은 우편으로 해당 서류가 여러분에게 송달될 수 있다 (여러분의 공의회 또는 개체교회가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송달받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송달인으로부터 여러분이 서류를 받았음을 알리는 간단한 메신저 영수증 외에는 서명하지 말라. 아무 것도 인정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서류에 서명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영수증에 나오는 내용을 읽고 직위와 날짜를 적어 영수증에 서명하라.
2. 종이와 도착한 봉투나 포장지를 보관하라.
3. 문서 첫 페이지에 날짜 스탬프를 찍거나, 문서를 받은 날짜와 시간, 전달된 방법(법원의 대리인 또는 프로세스 서버에 의한 직접 전달, 우편, 기타 - 구체적으로)을 기재한다.
4. 소환장이나 기타 서류에 적힌 지침을 숙지하고,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지 즉시 달력에 기재하라. 해당 날짜 일주일 전 날짜도 표기하여 답변 날짜를 상기하라. 이렇게 하여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일을 막으라.
5. 즉시 보험 중개인이나 대리인에 연락하라. 날짜가 기재된 커버 레터(커버 레터 사본도 함께 보관)와 함께 서류 사본을 중개인/대리인에게 전달하고, 이미 변호사가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변호사에게 서류 사본을 제공할 계획임을 보험 중개인에게 알린다. 보험사는 고소장의 청구 내용들이 보험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와 회사가 변호를 제공할 것인지, 즉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먼저 지불해야 할 공제액(deductible)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여러분이 변호사에게 먼저 지불하여 공제액을 지불하고 공제액이 소진되면 보험 회사가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여러분의 보험사가 여러분 공의회나 교회가 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해당 사건을 처리하도록 승인한 변호사 목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만일 보험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직접 여러분의 조직체를 변호할 변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6.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지침을 듣고, 통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라.
7. 여러분의 조직체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취해야 할 일에 대한 방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방침이 있는 경우 해당 방침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라.
8. 적절한 경우 조직체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서류 사본을 전달한다(내규에 해당 지침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는 경우 교역 장로/직원 책임자, 재무, 당회 서기에게 문서를 전달한다).
9. IT 부서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 또는 전자 시스템을 다루는 공급업체에 알리고 소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이메일 및 전자 문서를 보호하도록 지시한다. 여러분의 변호사를 그 대화에 참여시킨다.
10. 고소장에 미국장로교 또는 총회가 피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즉시 다음 연락처를 이용하여 법무 서비스 사무실로 연락하여야 한다. (마이클 커크 (888) -728-7228 ext. 5390)

다음 단계...

1. 즉시 변호사 및 소수의 리더 그룹(소송의 성격에 따라 그룹이 달라질 수 있음)과 함께 모여 주요 전략 문제를 결정하라. 여러분의 변호사가 다음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도록 하라:
 - a. 필요한 경우 미디어의 관심과 언론 보도에 대비한다. 여러분의 변호사가 연락 담당자가 될 수도 있다.
 - b. 소송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문의를 처리하고, 변호사를 돕고, 진행상황이 어떤지 추적한다. (참고: 소송에 참여할 사람은 끝까지 마무리짓는 능력이 뛰어나고, 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관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해당 사람이 어떤 말을 언제 누구에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 c. 소송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직원 및 구성원에게 연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문서를 변호사와의 주로 연락하는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요청한다.
 - d. 모든 문서의 파일 (하드 카피 및 전자)이 잘 보관되도록 한다. 누가 그 파일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결정한다.
 - e. 해당되는 경우, 회중에게 소송에 대해서 알려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중하라 - 법률 자문을 구하라).
 - f. 지역 교회의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 g. 다른 누군가에게 목회적 돌봄이 중요할지 결정한다 - 여러분 자신도 고려하라.
 - h. 소송이 교역 장로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내부 징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징계가 있었다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한다. 만일 어떤 징계도 제기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징계 행위를 취하는 것이 해당 시점에서 적절한지 결정한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중하라- 법률 자문을 구하라). 목회자의 소속 노회와 상의한다.
 - i. 만일 여러분이 교역 장로, 사역 장로, 집사, 공인 기독교 교육사이고, 혐의가 미성년자나 동의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한 성적 비행과 관련된다면, *규례서*(G-4.0302)의 의무 보고 요건을 검토하고 여러분의 의무 보고 여부를 결정한다.
2. 해당 사안과 관련된 메모, 서신 및 파일을 보존한다.
3. 변호사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소수의 리더 그룹을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당회 전체에 알려야 하는지 결정한다.
4. 원고, 그 변호사 또는 이 문제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전화도 받지 않는다.** 그들이 전화하면, 여러분의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말한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아닌 변호사가 서로 연락해야 한다.
5. 어떤 이유로든 판사에게 전화, 편지, 방문을 해서 는 안 된다.

6. 행동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II. 변호사와 만날 때...

1. 완전히 개방적이고 진실하며 솔직해야 한다. 정보를 숨기면 변호사가 도와줄 수 없다.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가 판단하도록 하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준다.
2. 소송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서, 서면 및 물건의 사본을 지참한다. 변호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원본을 보관한다.
3. 보험 보장에 대해서 변호사와 이야기 한다.
4. 변호사에게 교단으로서의 미국장로교에 대해 공부하게 한다. 변호사가 교단의 구조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한다.
5. 보험사로부터 '권리 유보' 통지서 또는 '보상 거부' 통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의 정책 하에서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보험 보상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III.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1. 위에서 언급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기억하라.
2. 소송과 관련된 추가 공식 서류를 받으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한다.
3. 여러분의 담당자가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 계속 최신의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법적 전략 및 대응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보험 적용이나 여러분 변호사 혹은 기타 사람이 소송에서 취하는 조치에 관한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 고문을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한다.
4. 인내심을 가진다: 법정 시스템은 종종 매우 느리고 사람을 애먹인다. 여러분의 사건이 해결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